노동동향

경제일반

최효미*

◈ 재고 급증, 가동률 저하

○ 2003년 5월의 경제활동은 화물수송연대 파업 등 대외수출여건이 좋지 않아 침체 지속(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섬유·의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내수 출하가 5.7% 감소한 반면, 수출 출하는 4.8% 증가
-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한 73.9%로 전월에 비해서도 2.8%포인트 감소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재 수입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하여 전월보다 0.3% 하락(표 2 참조)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에 98.4(2000=100 기준)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제조업 가동률지수, 산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3% 하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2000=100)

	2002					2003			
	3월	4월	5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p
생 산	7.1	10.6	9.2	7.2	9.5	10.2	5.0	1.9	1.9
제 조 업	7.3	10.8	9.4	6.9	9.7	10.1	4.6	1.6	-2.2
서 비 스 업	10.0	11.8	9.4	5.8	6.1	1.4	-0.2	-0.5	-0.8
출 하	7.6	10.7	9.2	7.1	9.3	7.8	3.3	1.2	-2.2
재 고	-8.4	7.1	-7.9	-1.1	0.3	7.8	11.0	11.6	12.5
평 균 가 동 률	78.0	78.1	77.0	77.1	77.0	77.9	76.9	76.7	73.9

주 : p는 잠정치임.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5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2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3. 6.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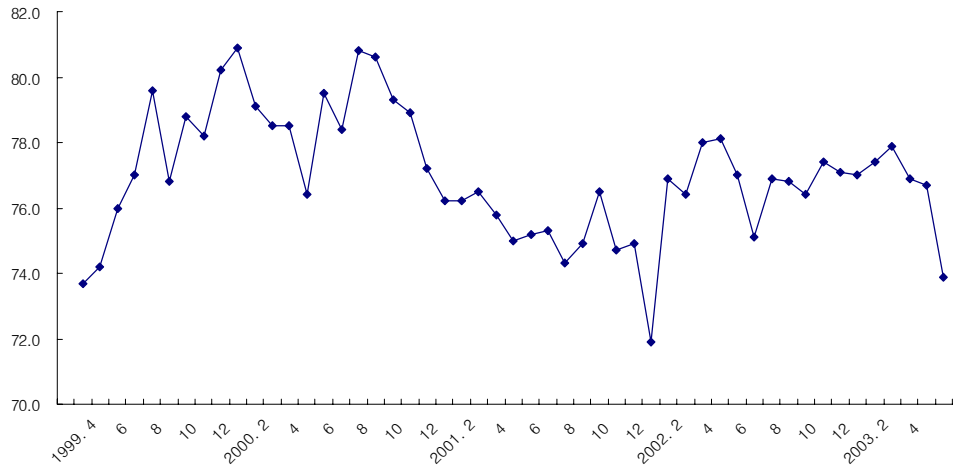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전월대비 %, 2000=100)

	2002		200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p
선행종합지수	0.6	0.4	-0.1	-0.5	-0.9	-0.7	-0.3
동행종합지수	0.5	0.8	0.8	0.0	-0.1	-0.4	-0.3
후행종합지수	0.1	0.2	1.1	0.4	0.9	-0.1	0.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2	100.6	100.9	100.5	100.0	99.1	98.4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3년 5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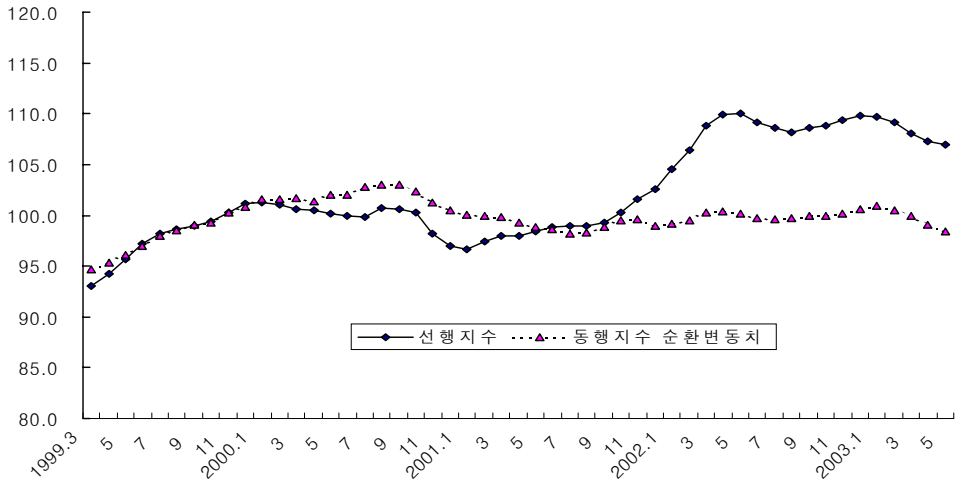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세 둔화

○ 2003년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표 3 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출하가 늘어난 농축산물과 휘발유 등 유류가격 하락으로 공업제품의 물가가 하락하여 전월대비 0.3% 하락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 6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5% 하락하여 내림세가 지속됨.

– 환율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 물가가 하락하고, 농림수산품 출하도 증가하여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2				2003					
	3월	4월	5월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0.6)	2.5 (0.6)	3.0 (0.4)	2.6 (-0.1)	3.8 (0.6)	3.9 (0.6)	4.5 (1.2)	3.7 (-0.2)	3.2 (-0.2)	3.0 (-0.3)
생활물가 상승률	2.0 (0.8)	2.2 (0.7)	3.1 (0.6)	2.3 (-0.4)	4.0 (0.8)	4.2 (0.7)	5.5 (2.1)	4.3 (-0.5)	3.1 (-0.5)	3.1 (-0.4)
생산자물가 상승률	-	-	-	-	2.8 (0.7)	2.8 (0.6)	3.3 (1.0)	1.9 (-0.6)	1.0 (-0.5)	1.1 (-0.5)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생산자물가지수 산출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됨(자세한 사항은 2003. 7. 통계청,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참조).

5) ( )안의 수치는 전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6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7.
통계청, 『2003년 6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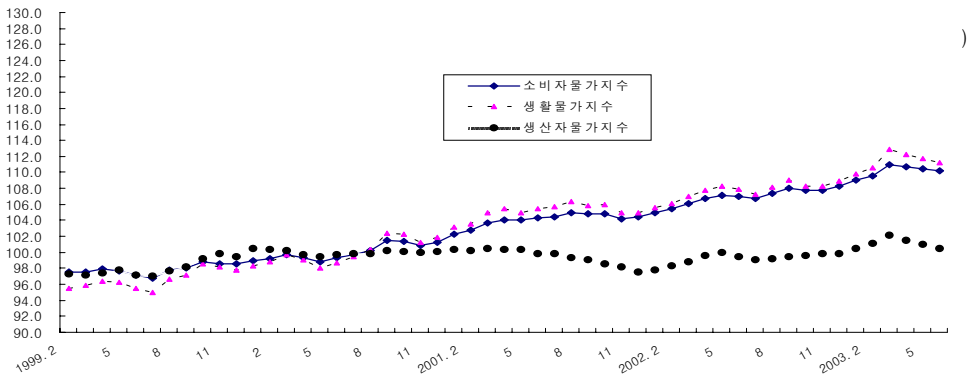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DB.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03년 6월 중 수출은 157.7억달러, 수입은 134.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3.5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지속(표 4 참조)

– 2003년 6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57.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

– 2003년 6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34.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5월	6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 상 수 지	961.5	728.5	-646.0	-417.2	-110.6	-1,193.5	-366.8	1,184.8	-
수 출 액 1)	14,173 (6.5)	12,894 (-0.3)	15,026 (26.1)	14,326 (25.9)	13,349 (21.1)	15,402 (16.2)	15,775 (19.6)	14,794 (4.4)	15,773 (22.3)
수 입 액 1)	12,698 (9.9)	11,934 (1.8)	14,452 (27.9)	14,477 (27.8)	13,843 (32.2)	15,898 (32.6)	14,832 (18.1)	13,527 (6.5)	13,421 (12.5)
평 균 환 율	1,266.1	1,223.5	1,208.9	1,179.3	1,191.2	1,232.4	1,232.8	1199.8	1194.0

주 : 1) 통관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년 6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7.
한국은행, 『2003년 5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6.
_____,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노동시장

최효미·강승복*

Ⅰ. 고용동향

◈ 고용사정 악화 지속

○ 2003년 6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112천명 증가한 755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132천명) 감소한 22,383천명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23,13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4,192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 62.7%에 비해 0.7%포인트 하락

○ 2003년 2/4분기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62천명 증가한 751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0.5%(-120천명) 감소한 22,303천명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23,055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4,243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 62.6%에 비해 0.8%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11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13천명 증가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 6월 중 실업률의 증가 및 실업자수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 등에서의 고용감소와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
– 2/4분기 중 전분기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55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670천명 증가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6월	2/4 분기	1/4 분기	4월	5월	6월	2/4 분기
경제활동인구	23,157 (2.0)	23,112 (2.0)	22,439 (0.4)	22,912 (-0.5)	23,114 (-0.1)	23,138 (-0.1	23,055 (-0.2)
참가율	62.7	62.6	60.3	61.5	62.0	62.0	61.8
취업자	22,515 (2.6)	22,423 (2.7)	21,633 (0.6)	22,156 (-0.7)	22,370 (-0.4)	22,383 (-0.6)	22,303 (-0.5)
실업자	643	689	806	756	744	755	751
실업률	2.8	3.0	3.6	3.3	3.2	3.3	3.3
비경제활동인구	13,794 (-0.5)	13,807 (-0.5)	14,755 (1.9)	14,350 (3.6)	14,187 (3.0)	14,192 (2.9)	14,243 (3.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실업자수 증가세 지속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20~29세와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다소 증가
– 20~2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0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1천명 감소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전 체	643(2.8)	744(3.2)	755(3.3)	11	112
15~19세	32(10.0)	24(9.0)	43(14.9)	19	11
20~29세	273(5.7)	334(7.1)	323(6.9)	-11	50
30~39세	170(2.6)	177(2.8)	178(2.8)	1	8
40~49세	102(1.7)	125(2.0)	127(2.0)	2	25
50~59세	48(1.5)	66(2.0)	68(2.1)	2	20
60세 이상	18(0.8)	18(0.8)	16(0.7)	-2	-2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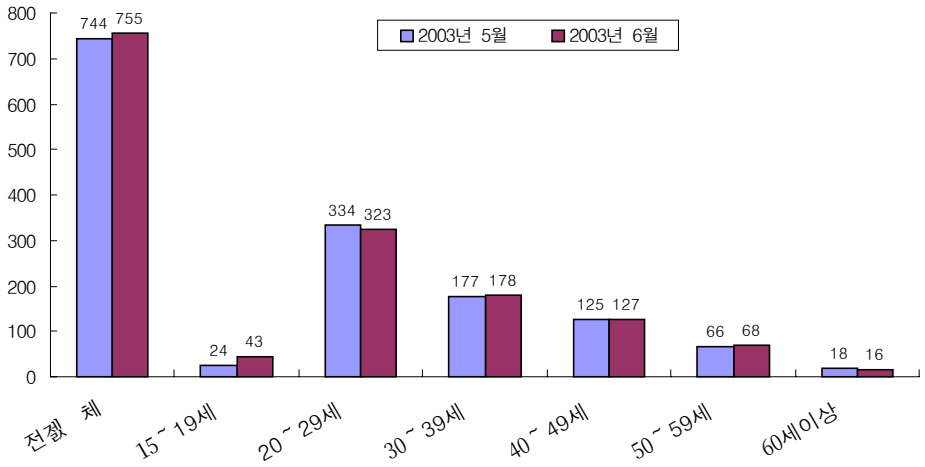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2003년 6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상승

– 전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오히려 18천명 감소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전 체	643(2.8)	744(3.2)	755(3.3)	11	112
중졸 이하	124(1.8)	105(1.7)	113(1.8)	8	-11
고 졸	320(3.1)	377(3.8)	399(4.0)	22	79
대졸 이상	198(3.2)	261(3.7)	243(3.5)	-18	45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132천명(-0.6%) 감소한 22,383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5천명)과 농림어업(-137천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5천명)과 건설업(53천명) 등에서는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171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67천명이 감소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성별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13,101천명으로 40천명(0.3%)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172천명(-1.8%) 감소한 9,282천명[1)]

– 2003년 6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52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217천명(1.5%)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330천명 감소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13천명(0.1%) 증가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41천명(0.7%), 건설업에서 12천명(0.65) 증가하였으나, 제조업(-27천명, -0.6%)이나 전기・운수・창고・금융업(-9천명, -0.4%) 등은 감소

1)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참조.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전 산 업	22,515	22,370	22,383	13	-132(-0.6)
농림어업	2,289	2,154	2,152	-2	-137(-6.0)
광 업	17	16	18	2	1(5.9)
제조업	4,241	4,252	4,225	-27	-16(-0.4)
건설업	1,811	1,852	1,864	12	53(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14	5,845	5,839	-6	-175(-2.9)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95	6,069	6,110	41	115(1.9)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47	2,183	2,174	-9	27(1.3)

주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신규실업자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2003년 6월의 실업자를 구직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0천명(15.8%) 증가한 585천명, 1년 이상 전직실업자는 1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15.0%) 증가

- 신규실업자는 5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8천명(48.6%) 증가, 성별로는 남성이 1천명 감소한데 반해 여성의 신규실업은 18천명 증가
- 전월에 비해서 신규실업자는 2천명(3.8%) 증가, 전직실업자도 9천명(1.3%) 증가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신 규 실 업 자	37	53	55	2	18
전 직 실 업 자	605	691	700	9	95
1 년 이 상	100	114	115	1	15
1 년 미 만	505	577	585	8	80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근로시간 다소 감소

○ 2003년 6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정도 증가, 전월대비 0.4%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의 근로시간은 각각 1.2%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1.6%, 1.2% 감소
- 반면 전월대비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1.0%와 0.7% 감소

<표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2002. 6	2003. 4	2003. 5	2003. 6
전 체	49.1	49.3	49.4	49.2
상용직	50.0	50.7	50.6	50.6
임시직	50.9	50.5	50.6	50.1
일용직	43.0	42.1	42.8	4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취업 다소 악화

○ 통계청이 2003년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2] 결과를 보면, 졸업/중퇴자의 실업률이 7.6%를 기록

- 청년층 인구 중 졸업, 중퇴자는 5,690천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54.7%를 차지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3,969천명, 실업자는 325천명, 비경활인구가 1,396천명으로 나타남.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5%

○ 2002년 6월 실시된 「청년층부가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 청년층 전체수가 258천명 감소했으며, 졸업/중퇴자도 174천명 감소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1.5%포인트 상승함.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조사로, 이전 청년층 부가조사는 2002년 6월에 실시한 것임. 단 2002년 6월 실시된 조사는 「2000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에 따라 2003년 1월 가중치가 변경됨.

<표 7> 청년층 구성

(단위 : 천명, %)

	청년층 전체인구	졸업/중퇴자	재학	휴학	기타
2002. 6.	10,663(100.0)	5,864(55.0)	4,258(39.9)	533(5.0)	7(0.1)
2003. 5.	10,405(100.0)	5,690(54.7)	4,165(40.0)	546(5.2)	4(0.0)

주 : (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표 8> 청년층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졸업/중퇴자	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인구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2. 6.	5,864(100.0)	4,398(75.0)	4,128(70.4)	270(4.6)	1,467(25.0)	6.1
2003. 5.	5,690(100.0)	4,294(75.5)	3,969(69.8)	325(5.7)	1,396(24.5)	7.6

주 : (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졸업/중퇴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2002년 6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한 36.2%(1,437천명)으로 가장 높음.

<표 9>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졸업/중퇴자 중 취업자	4,128 (100.0)	3,969(100.0)
농림어업	43 (1.0)	42 (1.1)
광 업	3 (0.1)	3 (0.1)
제조업	857 (20.8)	841 (21.2)
건설업	242 (5.9)	208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50 (27.9)	1,050 (26.5)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1,431 (34.7)	1,437 (36.2)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402 (9.7)	389 (9.8)

주 : (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졸업/중퇴 청년층 인구 중 91.0%(5,179천명)가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8.0%(455천명)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임.
- 졸업/중퇴 후 1년 이내에 취업자의 비중은 73.2%로 2002년 6월에 74.5%에 비해 1.3%포인트 감소
- 첫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개월로 2002년 6월에 비해 1개월 늘어남.

<표 10> 청년층 구직 동향

(단위 : 천명, %)

	2002. 6	2003. 5
취업무경험자	425 (7.2)	455 (8.0)
취업유경험자	5,439 (92.8)	5,179 (91.0)
임금근로자	5,008 (100.0)	4,968 (100.0)
3개월미만	2,666 (53.2)	2,678 (53.9)
3개월～6개월 미만	644 (12.9)	547 (11.0)
6개월～1년 미만	418 (8.4)	412 (8.3)
1년～2년 미만	552 (11.0)	556 (11.2)
2년 이상	728 (14.5)	775 (15.6)
평균 구직기간	11개월	12개월

주 : 1) 취업유경험자는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하며, 현재 취업자가 포함됨.
2) (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Ⅱ. 임금동향

◈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둔화세 지속

○ 2003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2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1%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12.7%보다 4.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임.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110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4월까지 누계평균 임금총액은 2,08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
- 2003년 4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 특별급여 상승

률의 둔화,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등으로 요약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5.7%포인트 하락

- 2003년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4.2%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 상승률 9.9%보다 5.7%포인트 낮은 것
- 올 들어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3.9%포인트 낮게 나타남.
- 4월까지 누계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7.4% 상승

[그림 2]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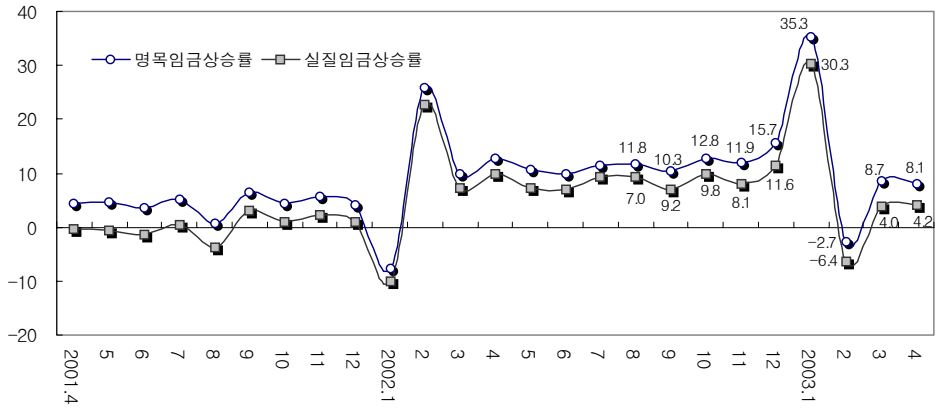

<표 1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 천원, %)

	2001. 4		2002. 4		2003. 4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임 금 총 액	1,653 (4.4)	1,718 (5.0)	1,862 (12.7)	1,950 (13.5)	2,012 (8.1)	2,110 (8.2)
정 액 급 여	1,236 (7.6)	1,251 (8.1)	1,384 (12.0)	1,410 (12.7)	1,503 (8.6)	1,536 (8.9)
초 과 급 여	130 (-1.1)	148 (1.9)	126 (-3.3)	144 (-2.6)	131 (4.1)	147 (2.6)
특 별 급 여	287 (-5.2)	320 (-4.2)	352 (22.8)	396 (24.1)	379 (7.5)	427 (7.7)
실 질 임 금	1,588 (-0.4)	1,650 (0.2)	1,745 (9.9)	1,828 (10.8)	1,818 (4.2)	1,906 (4.3)
소비자 물가	104.1 (4.8)		106.7 (2.5)		110.7 (3.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1월 이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전월에 이어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2003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03천원으로 전년동월(1,384천원)에 비해 8.6%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0%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정액임금 상승률은 올 들어 한 자리수를 유지
- 초과급여 상승률은 4.1%로 전년의 -3.3%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상승폭은 2월 이후 둔화세
-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10.7%), 도매 및 소매업(31.0%), 운수·창고 및 통신업(15.6%) 등의 높은 상승에 기인
- 4월까지 누계평균으로는 정액급여 8.9%, 초과급여 7.9%, 특별급여 23.5%의 상승률 기록

[그림 3]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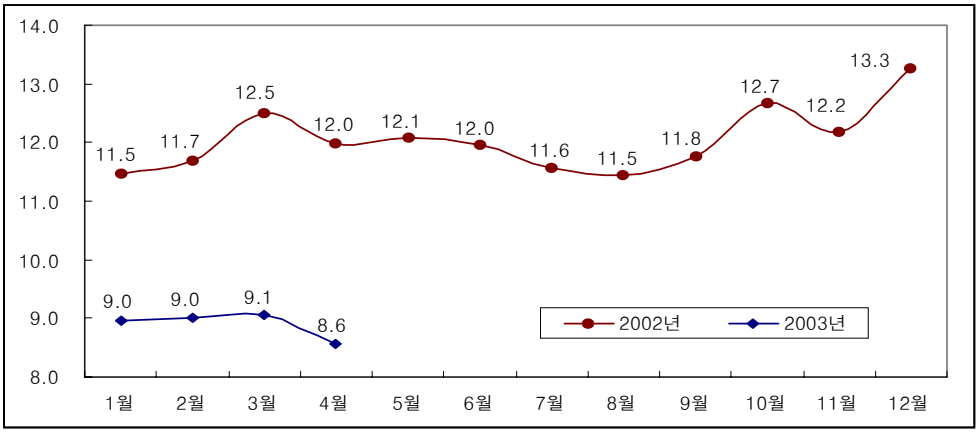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4월 임금총액 상승률 8.1%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9.0%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3)]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3.4%,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17.6%를 기록

---

3)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triangle TWG}{TWG} = \frac{\triangle RWG}{RWG}\frac{RWG}{TWG} + \frac{\triangle OWG}{OWG}\frac{OWG}{TWG} + \frac{\triangle SWG}{SWG}\frac{SWG}{TWG}$$

◈ 시간당 임금은 8.5% 상승

○ 2003년 4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9,512원, 8,328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8.5%, 8.4%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4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에 따라 임금총액 상승률(8.1%)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4월까지 누계평균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10,085원, 8,92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10.7% 상승

<표 12>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원, %)

		2001. 4	2002. 4	2003. 4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653 (4.4)	1,862 (12.7)	2,012 (8.1)
	시간당 임금(원)	7,845 (4.1)	8,765 (11.7)	9,512 (8.5)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585 (5.4)	1,742 (9.9)	1,882 (8.0)
	시간당 임금(원)	7,087 (5.2)	7,685 (8.4)	8,328 (8.4)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4]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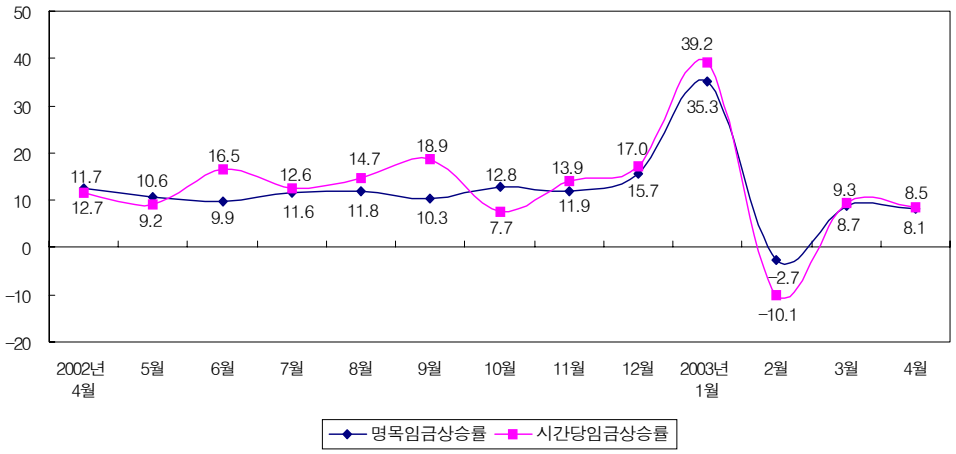

◈ 저임금 산업의 임금상승률 둔화 폭이 고임금 산업보다 높아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저임금 산업의 임금상승률 저조
- 2003년 4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및 3.4%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각각 1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표 13>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1. 4		2002. 4		2003. 4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 업	1,653 (4.4)	1,718 (5.0)	1,862 (12.7)	1,950 (13.5)	2,012 (8.1)	2,110 (8.2)
제조업	1,585 (5.4)	1,626 (5.9)	1,742 (9.9)	1,790 (10.1)	1,882 (8.0)	1,933 (8.0)
건설업	1,529 (0.2)	1,640 (0.7)	1,790 (17.1)	1,994 (21.6)	1,925 (7.6)	2,134 (7.0)
도매 및 소매업	1,569 (10.4)	1,631 (13.1)	1,800 (14.7)	1,891 (15.9)	2,012 (11.8)	2,146 (13.5)
숙박 및 음식점업	1,151 (6.1)	1,316 (8.7)	1,366 (18.7)	1,542 (17.2)	1,440 (5.4)	1,613 (4.6)
운수창고통신업	1,870 (1.7)	1,904 (1.4)	2,008 (7.4)	2,046 (7.5)	2,245 (11.8)	2,289 (11.9)
금융 및 보험업	2,265 (1.6)	2,297 (0.5)	2,783 (22.9)	2,892 (25.9)	2,932 (5.3)	3,022 (4.5)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434 (3.4)	1,468 (6.0)	1,725 (20.3)	1,808 (23.2)	1,784 (3.4)	1,860 (2.9)
사회개인서비스업	1,707 (3.9)	1,833 (3.8)	1,940 (13.6)	2,104 (14.8)	2,097 (8.1)	2,293 (9.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5~9인 사업체의 1.9배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9.8%로 가장 높고, 5~9인 규모는 4.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3.7 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를 보임.

<표 1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

	2001. 4	500인 이상=100	2002. 4	500인 이상=100	2003. 4	500인 이상=100
전 규 모	1,653 (4.4)	76.3	1,862 (12.7)	73.0	2,012 (8.1)	71.8
5 ~ 9인	1,282 (4.0)	59.2	1,383 (7.8)	54.2	1,450 (4.9)	51.8
10 ~29인	1,503 (6.2)	69.4	1,605 (6.8)	62.9	1,695 (5.6)	60.5
30 ~99인	1,568 (7.5)	72.4	1,792 (14.3)	70.3	1,880 (4.9)	67.1
100~299인	1,729 (4.8)	79.9	2,032 (17.5)	79.6	2,204 (8.5)	78.7
300~499인	2,017 (12.6)	93.2	2,325 (15.2)	91.1	2,448 (5.3)	87.4
500인 이상	2,165 (2.4)	100.0	2,551 (17.8)	100.0	2,802 (9.8)	100.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성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3년 4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여성의 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3로 전년동월(63.5)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15> 성별 임금상승률

(단위 : 천원,%)

	2001. 4		2002. 4		2003. 4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체	1,653	4.4	1,862	12.7	2,012	8.1
남 성	1,868 (100.0)	4.4	2,096 (100.0)	12.2	2,278 (100.0)	8.6
여 성	1,176 (62.9)	5.3	1,331 (63.5)	13.2	1,418 (62.3)	6.5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
3) ( )안은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3년 6월 협약임금 상승률 6.7%를 기록

○ 2003년 6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7%과 동일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 업체의 비중은 86.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9.1%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및 하향 조정업체의 비중은 각각 13.7%와 0.2%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8%, 0.1%보다 증가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7%로 전년동기의 6.9%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0%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중

- 2003년 6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1,856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32.3%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38.9%에 비해 더디게 진행중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32.9%로 5,575개소 중 1,835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21개소가 타결되어 11.9%의 진도율을 기록

<표 16>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개소, %)

	지도대상업체 (A)	타결업체 (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5,401)	1,856(2,103)	32.3(38.9)	6.7(6.7)
민간부문	5,575(5,236)	1,835(1,414)	32.9(39.5)	6.7(6.9)
공공부문	176(165)	21(37)	11.9(22.4)	6.7(4.0)

주 :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5]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2,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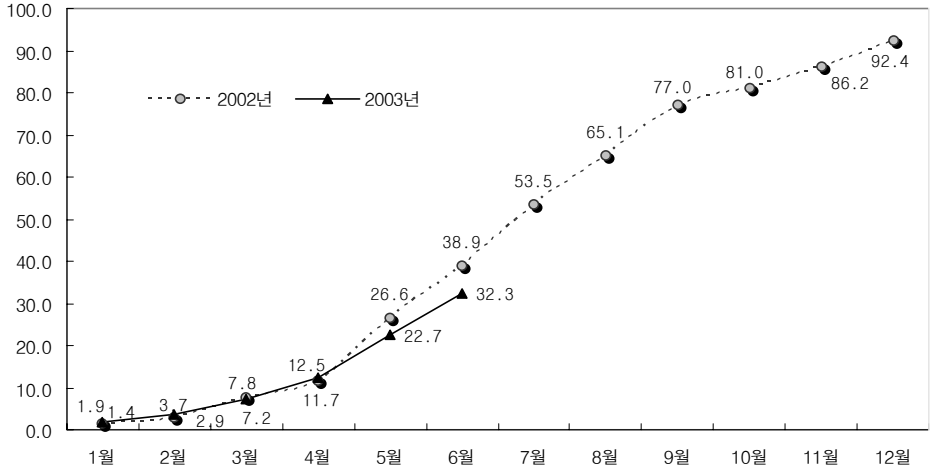

노동동향

노사관계

윤문희*

Ⅰ.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분규참가자수 증가, 근로손실일수 감소

○ 2003년 7월 16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와 참가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하며,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표 2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4건과 비슷한 수준
- 분규참가자수는 79,19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6,183명으로 비슷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97.5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96.4천명에 비해 감소
- 임·단투의 본격화 및 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사업장 분규의 발생으로 노사분규의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늘어남. 그러나 파업일수가 대체로 짧아 근로손실일수는 작년에 비해 감소함.
-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대폭 늘어남. 이것은 작년에 비해 임·단협 투쟁이 늦게 시작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그림 2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표 2>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 건, 명, 천일)

	2001. 7. 15	2002. 7. 15	2003. 7. 15
노사분규발생건수	135	224	237<10>
분규참가자수(명)	54,829	76,183<732>	79,195<714>
근로손실일수(천일)	441.8	996.4	497.5

주 : < >안은 전년 이월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해결 부분임.
자료 : 노동부.

[그림 2]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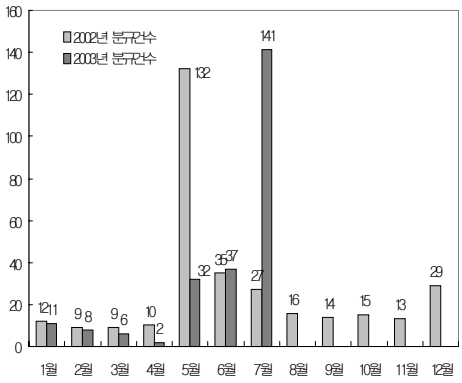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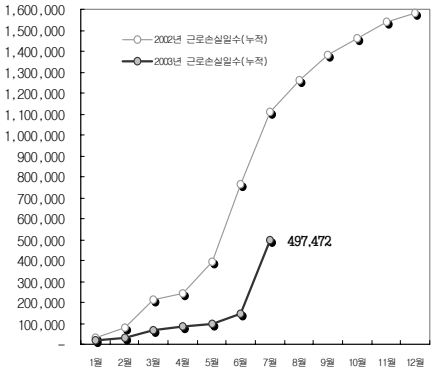

Ⅱ. 노동정책 동향

◈ 최저임금 시간급 2,510원으로 심의·의결

○ 최저임금위원회는 6. 27.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510원, 8시간 기준 일급 20,080원(월환산액 567,260원, 226시간 기준)으로 심의 · 의결

– 금번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2002년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이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액은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700,600원, 36.6% 인

상)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안(553,700원, 1.07% 인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 공익위원은 7~15%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에 대하여 반대한 노동자 위원 전원(9명)과 공익위원 2명이 6. 26. 사퇴함. 6. 27. 개최된 회의는 노동자 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만으로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최종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 5.까지 결정·고시하여 금년도 9. 1.부터 시행됨.

○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 민주노총은 7. 7. 의결된 최저임금이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라 지적하고,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각 노사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요구

– 한편 한국노총은 7. 11. 최저임금결정의 법적 절차상 하자, 최저임금 목적의 위배, 최저임금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요구

◈ 2003년 7월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개정배경

– 산재법의 적용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불합리한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근로자 보호

–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신종 직업병 출현, 그동안 의학계 연구성과 및 변화된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현실화

○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건설공사와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건설공사 및 농임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시행령 제24조 제1항)

–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되, 기지급한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이 발생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산식 개정(시행령 제30조의 2)

- 전문간병인과 무자격자를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병인에게 보다 많은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간병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간병인 자격요건 신설(시행규칙 제25조)
-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입(시행령 제82조의 2 및 시행규칙 제87조의 2 신설)
- 심사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수가 고정(본회의 9인, 소위원회 5인)되어 있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상임위원이 없어 본회의는 8인,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시행령 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 2, 시행규칙 제89조의 2 신설)
- 동일한 흉터 장해에 대해 남·여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남·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200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현재 진폐증 관련 장해등급에 대해 제11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가 있으나,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모흉터장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진폐장해등급 추가 및 합병증 범위 확대(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
- 간병료 지급대상 항목 중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등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령 별표2의 2)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임금·단체협약 교섭 본격화

○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 및 임·단협 타결지연 파업 돌입
-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 및 임·단협 타결지연 등에 반발 6. 25.부터 지부별 집회참가 등의 형태로 부분파업 돌입
-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2003년 10월부터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40시간 실시 등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만도지부 등 전국 35개사 노조원이 작업거부·지부별 집회참가 등의 형태로 전면 및 부분파업 계속
- 금속노조와 100개의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들이 15일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13차 교섭을 갖고 △ 기본협약 자동연장 △ 올해 10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 노조 활동시간 보장 등에 합의
- 7. 22. 전국 9개 지부 26개사 작업거부형태로 전면 및 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8. 6.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등 재논의 예정 결정

○ 한국노총은 6. 30. 임·단투 승리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 이날 전국택시노련 등도 시한부 파업 실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임·단협 협상 돌입
- 6. 24.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 11. 지방공사의료원 파업, 7. 16. 국·사립대병원 파업 결의
- 6. 25.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일괄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6. 30. 서울대병원 등 국·사립대병원 10개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일괄제출
- 7. 16. 파업예정이던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지부와 고대의료원, 원광의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3개 사립대병원지부 교섭타결

○ 화물연대 부분파업

- 5. 15. 노정합의 이행, 구속동지 석방 등을 촉구하는 7. 7. 파업찬반투표를 유보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
- 7. 8. 1차교섭에서 화물연대와 운수업체는 성실교섭과 화물연대 탄압 중지 등에 합의하였으나 7. 11. 2차 교섭에서 운임비 등의 사항에 합의하지 못함.
- 7. 14. 화물연대 BCT(Bulk Cement Trailer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완제품을 탱크에 담아 생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며 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 가운데 2,500여명이 화물연대에 가입)지부(준)는 (주)성신양회 물량운반을 전면 거부하였으나 7. 16. 성신양회(주)와 '향후 운송물량 배정시 화물연대임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 7. 17.부터 운송재개
- 화물연대는 7. 1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7. 21.~7. 31.까지 파업찬반투표 진행 결정

◈ 철도노조 파업-철회

○ 6. 28.부터 철도노조는 전노조원 사복투쟁 및 철야농성 도입

-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의 단체협약안의 정부파기와 철도구조 개혁 입법추진에 반발하여 6. 28.부터 지부별 파업돌입
- 정부는 6. 28. 새벽 철도노조의 농성장 전국 5개소에 공권력 투입. 파업참가자 중 1,519명 연행 전국 경찰서에서 분산조사 후 454명 훈방조치
- 철도관련법의 국회통과와 여론악화로 7월 1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자 4,070명 중 2,655명 파업철회 찬성(65%)으로 파업철회

정책과제도

한국 노동권 문제에 관한 제287차 ILO 이사회 권고안*

주요 권고사항

1.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권 보장 2.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3.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4. 제3자 신고조항, 실직자·해고자 노조가입,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개정

Ⅰ. 조사경과

○ 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노동권 문제에 대하여 1996년 5월, 1997년 6월, 1998년 3월과 11월,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회의에서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 후 잠정보고서 형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음.

○ 2002년 3월에 이사회는「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잠정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였음.

– 법률적 측면

① 공공부문 근로자도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함.

② 단결권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할 것

③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 절차를 가속화할 것

* 본 권고안은 2003년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제287차 이사회 중「결사의 자유위원회(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제출하여 채택된 것(의제#1865)으로서 한국 이외에 러시아, 일본, 인도 등 15개국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번역은 Ⅰ, Ⅱ-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Ⅲ-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실이 맡아 하였음.

④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법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않아야 함.
⑤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서만 파업권이 금지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를 개정
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의 제3자 지원시 신고 조항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지원금지와 관련한 동법 제89(1)조 처벌 조항의 철폐
⑦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및 노조 임원직 유지금지 조항을 개정
⑧ 업무방해와 관련된 형법 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좀더 부합되도록 개정
⑨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위 사안들을 그 안에서 논의할 것
⑩ 위 사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 노력과 그 경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줄 것

– 사실적 측면
① 한국 정부가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통보해 줄 것
② 오므론전장에서 해고된 6명의 동해전자 근로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통보해 줄 것. 또한 정부가 노사양측에 대해 중재노력을 기울여 줄 것

– 민주노총이 2001년 6월 8일 제기한 사안에 대해
① 전공련 활동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또한 전공련 활동과 관련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하며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② 한국 정부가 2001년 중 노조활동으로 구속 또는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이들의 석방이나 고소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함.

Ⅱ. 한국 정부의 응답

○ 2003년 2월 18일 한국 정부는 본 위원회의 권고안에 입각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관련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보고함. 또한 ILO의 조언을 경청하고 있고 2002년 11월 ILO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바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국내 노동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중이라고 밝힘.

○ 2003년 2월 25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모색할 것임을 밝힘.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운용에 관한 법안이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에 두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안, 조직결성과 단체교섭 권리를 인정하는「공무원노조에대한설립과운용에관한법(안)」임.

○ 한국 정부는 노조법의 제71조항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을 줄이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업이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고 보고함. 그 예로 2002년 11월 노동위원회는 62개의 조정건수 중에 22건만 중재에 회부하였다고 밝힘.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노동관련법과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노조원의 체포와 구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던 권영길씨가 2001년 현재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고발은 항소중이어서 철회될 수 없었다고 밝힘. 오므론전장에서 해고된 동해전자 근로자 6명과 관련된 항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2002년 3월 29일에 사측에 의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희영 외 5인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결하였으며 2002년 7월 22일에 그 중 5명은 복직, 1명은 그 복직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밝힘.

○ 전공련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2003년 1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허가없이 작업장을 벗어난 불법적 집회와 가두행진의 선동, 계획, 참가와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12인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지적함.

○ 마지막으로 2001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노조원수와 관련하여 2003년 1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21명이 체포되고 4명이 투옥되었다고 밝힘. 2002년 1월과 4월 사이에는 63명의 노조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2명만이 투옥되었으며, 공무원노조 관련으로 8명의 공무원들이 2002년에 체포되었고 그들의 재판이나 항고는 진행중이라고 보고함.

○ 2003년 4월 30일 제출된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는 2003년 2월에 출범한 새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사정을 조화롭게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고 있음을 밝힘.

○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뿐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를 위해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며 동 기획단은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2004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함. 2005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완전개정 시점까지 한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보고함. 또한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 개선관련 법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ILO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희망함.

○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미 노동부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법 준비를 지시하였다고 보고함. 이는 공무원들에게 교직원과 같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2002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보강하는 것이며 늦어도 2004년까지 새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새 법안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노동조합 명칭 및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등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2007년에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할 예정이며 복수노조 허용시 예견되는 노-노간, 노-사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보고함.

○ 한국 정부는 직권중재에 해당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한국 정부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3자 개입시 신고, 해고근로자에 대한 노조원 지위 박탈, 비노조원의 노조간부 출마제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고안중이라고 보고함.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위반한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립시킬 것을 강조함. 이밖에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이 2003년 4월 3일 만기출소하였음을 통보함.

○ 2003년 5월 16일, 한국 정부는 노조관련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였음. 2003년 4월 30일, 한국 정부는 노동법 위반관련자 568명을 포함한 1,424명에 대해서 사면조치하였으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관용과 화해에 근거한 노사정책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함. 그러나 2000년 이래 사면을 한 번 이상 받은 자 또는 재범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본 위원회는 주목함.

○ 이번 사면의 결과로 2003년 1월 보고서에서 현재 수감중이라고 밝힌 모든 노조 지도부들이 석방되었는데, 민주노총 집행부인 강성철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단병

호 민주노총 위원장, 태광산업 노조간부 김병학, 금속연맹 조직실장 한석호 등은 만기출소하였음. 이밖에 3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중이었던 구재보, 4년형을 선고받고 3년간 복역중이었던 이해남 등은 사면되었으며, 금융노련 위원장 이용득,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이경수,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김철홍 등은 복권되었음.

Ⅲ. ILO 이사회의 결론

○ 1996년부터 본 사안을 조사해 온 본 위원회는 그간 한국의 국내법 및 관행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개선하였던 노력을 인지함. 특히 국가단위 복수노조 인정 및 교사의 단결권 인정 등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결사의 자유 원칙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음. 이런 과제들은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사실적 측면에서도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는 아니라도 대부분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수감된 노조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냈음에 주목함. 본 위원회는 이런 노력들이 본 사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위원회 권고와 관련하여 더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함.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이 마련하게 될 법안과 관련하여 ILO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한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임을 밝힘.

◈ 법률적 측면

○ 법률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사안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서만 금지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개정, 동법 제40조의 제3자 지원시 신고조항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지원금지와 관련한 동법 제89(1)조 처벌 조

항의 철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및 노조 임원직 유지금지 조항 개정, 업무방해와 관련한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좀더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지적함.

○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 설립 및 가입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권리를 가능한 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기존 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최근 답변 중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음을 위원회는 주목함. 한국 정부의 계획은 공무원들에게 예산 및 법률적 부분을 제외한 사안에 대한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목함.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가 새 법안의 2004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확신함.

○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07년에 허용될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준비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기타 관련분야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목함.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지만,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노조 설립 및 가입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이라 확신함.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전임 노조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또한 위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본 위원회는 동 사안은 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원회의 기존 결론을 재차 강조함.

○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1(2)조에 규정된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직권중재에 해당하는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계획에 주목함.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철도, 지하철 및 석유 분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업무 중단으로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는 이전의 결론을 상기함.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들 분야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의 기본요구 충족을 위해서 노사정 협상에 따라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검토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숙지할 것을 요청함.

○ 본 위원회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3자 개입시 신고, 해고근로자에 대한 노조원

지위 박탈, 비노조원의 노조간부 출마 제한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을 주목함. 이와 관련된 이전 결론을 상기하며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0조의 신고요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개입할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는 동법 제89(1)조, 해고근로자의 노조원 지위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에게 노조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동 법 제2(4)(라)조 및 제23(1)조를 철폐할 것을 요청함.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실제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을 불법노동행위 및 동법 위반 죄로 체포한 적이 있음을 상기함.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최근 답변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폭력 및 파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에 주목함. 본 위원회는 특히 현재 한국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사간 자발적인 협상만이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위 선언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 “업무 방해”의 법적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쟁의와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속하며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매우 과하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점을 상기하면서, 본 위원회는 이런 상황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함.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밝힌 대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이 구속되지 않기를 희망함.

◈ 사실적 측면

○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와 구속, 2001년 수백명의 노조원 체포와 구속, 오므로전장의 동해전자 근로자 6명 해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지도부 및 회원 해고, 전공련 활동에 대한 제약 등의 사실을 본 위원회는 상기함.

○ 본 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통해 전해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한편 단 위원장의 만기출소에 유감을 표명함. 본 위원회는 2001년 한 해 동안 221명의 노조원이 구속 또는 수감되었으며, 그 중 4명은 현재까지 수감중이고, 2002년 초에 구속되었던 63명(그 중 2명은 현재 수감되어 있음)과 공무원 8명이 현재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함.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권영길 민주노총 전위원장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함.

○ 노조원들이 구속 및 수감의 대상이 되는 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조화로운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이전의 결론을 상기하면서, 본 위원회는 일부 수감 노조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특별사면을 환영함. 또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위반한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함. 본 위원회는 현재 노조활동으로 수감되어 있거나 공판이 진행중인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를 독려함. 또한 폭력 및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보장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재차 촉구하며 항소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전공련 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해서 불법 단체행동으로 2003년 1월 현재 12명이 해고되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함.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원의 이익을 증대하고 보호키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공무원의 권리와 관련해 이미 언급한 결론을 상기하면서, 본 위원회는 기존의 권고를 유지하는 한편, 상기 언급된 공무원들이 임금손실 없이 즉각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마지막으로, 오므론전장에서 해고된 6명의 동해전자 근로자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들이 부당해고 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 중 5명이 2002년 7월 복직되었고 나머지 1명은 복직을 택하지 않았음을 주목함.

◈ 위원회 권고

○ 앞서 명시한 잠정 결론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채택하기를 요청함.

- 본 사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주목하며,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모든 사안들에 대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희망함.
- 본 사안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①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보장

②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수노조 합법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③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④「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하여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금지되도록 개정

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에 규정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제3자 개입시 신고 조항과 동 법 제89(1)조에 규정된 위반시 처벌 규정을 삭제

⑥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유지 및 비노조원의 임원출마 자격제한에 관한 조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라) 및 제23조(1))을 삭제

⑦ 형법 제314조의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합치되도록 할 것

⑧ 상기 언급된 사항과 관련된 진전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이 준비할 법안과 관련된 ILO 전문가의 조언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지함.

– 사실적 측면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① 본 위원회는 수감중인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사면을 환영함.

② 정부의 2003년 4월 보고서에 나타난 데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위반한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관행을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노조활동으로 인해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공판이 진행중인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를 독려함. 폭력 및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그 사건들을 가능한 빨리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함.

③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권 위원장의 항소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함.

④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포함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2003년 1월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들이 임금손실 없이 즉각 복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이슈분석

2003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이성희*

◈ 2003년 상반기 노사관계의 개관

○ 신정부 출범 초부터 6월 말까지 노동계 정책요구와 노정갈등 구도 형성

- 올 상반기 노사분쟁은 5월까지는 임단협 교섭보다, 노동계의 대정부 정책요구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많이 제기됨. 철도노조의 1인승무제 도입반대 및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투쟁, 화물연대 교통세 인하 등 정책요구, 궤도연대의 1인 승무폐지 투쟁, 조흥은행의 매각반대투쟁, 전교조의 NEIS 도입반대투쟁 등은 대정부 정책요구의 성격이 강했고, 이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전개됨.
- 노정갈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강도 높게 제기. 이는 신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정책기조를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남.

○ 임단협 교섭은 예년보다 한 달 늦은 6월 말 이후에 집중

- 2003년도 임단협 교섭은 예년보다 한 달 늦게 본격화되었음. 신정부 출범 이후 노사 모두 신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탐색전을 펼치면서 임단협 교섭을 뒤로 미룬 데다, 초반에 철도, 화물연대, 조흥은행, NEIS 등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노동계는 임단협 교섭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음.
- 금속, 병원, 증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조합이 산별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샅바싸움이 진행되면서 임단협 교섭이 뒤로 미뤄지는 모습도 나타났음. 교섭방식에 대해 논의가 길어지면서 임단협 교섭은 6월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임단협과 관련된 쟁의조정 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음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musedori@kli.re.kr).

<표 1> 2003년 노사관계 주요 노사분쟁 일지

	주요 노사분쟁
1. 9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으로 노조파업
4. 20	철도 1인승무제 도입철회 및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투쟁
5. 2	화물연대 파업
6. 18	조흥은행노조 파업
6. 21	전교조 NEIS 반발 연가투쟁
6. 24	궤도연대 1인승무제 폐지요구 연대파업
6. 25	민주노총 경제특구법안 반대 시한부 부분파업
6. 28	철도노조 파업
6. 30	한국노총 임단협 집중투쟁
7. 9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 집중
7. 15	금속노조 부분 및 전면파업
7.18~진행	현대차노조 전면·부분파업

<표 2> 노사분쟁 관련통계 비교(7월 22일 기준)

	조정신청건수	파업발생	분규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2002	683	228	79,913	1,057,260
2003	546	239	95,061	602,774

자료 : 노동부.

○ 노사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기록

- 노사분쟁관련 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파업건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많은 239건을 기록하고 있고, 분규참가자수도 지난해보다 약간 많은 95,061일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신청건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적은 546건을 기록하고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602,774일을 기록
-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파업발생건수나 분규참가자수 등은 큰 차이가 없고,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약간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03년도 상반기 노사관계의 특징

○ 신정부 출범과 노동계의 기대심리와 경영계의 우려심리 '반비례'

- 2003년도 노사관계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됨.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관련해 노동계는 친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

성되었고,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 신정부 출범 초기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사건을 둘러싼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내려가 중재를 하고,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1인승무제 도입을 중단하며, 인원을 증원하는 안에 합의하는 등의 처리과정에서 노동계의 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사용자측의 우려는 더 커지게 되었음.

○ 노사관계 체감 불안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체감 불안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물류대란이나 지하철 노조들이 중심이 된 궤도연대의 파업, 전교조의 NEIS 반대투쟁 등이 국민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인 불안감도 컸던 것으로 분석됨.
- 여기에 경기침체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경영계에서는 노사관계 불안이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관계 불안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5일근무제 합의로 주5일근무제 법제화 쟁점부상

-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주5일근무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음. 지난해까지 금융, 증권, 일부 대기업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이는 연월차 휴일을 줄이고, 그 대신에 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방식이었음. 이에 비해 올해 금속노조에서 노사합의한 내용은 현행 연월차제도를 그대로 두고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런 주5일근무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차라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5일근무제 법제화 논의가 재개되고 있음.
- 금속노조의 주5일근무제 도입은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합의한 것이어서 기존 정부안과 차이가 나는 만큼 향후 주5일근무제 법제화 논의에서도 새로운 논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휴일휴가일수 축소와 시행시기를 둘러싼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조정제도를 통한 노사분쟁 해결 증가추세

-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는 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함.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성립률은 지난해에 비해 올라갔고, 특히 지난해 대형 노사분쟁 다발업종이었던 병원 업종의 경우 대부분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었음.

- 병원 업종에서 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제도를 파업가능성, 중단되는 업무의 대체가능성, 업무의 공익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용자측의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정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불법파업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혀왔던 행정지도의 경우 올해는 행정지도의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음.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의 교섭해태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교섭쟁점 등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표 3> 조정성립률 비교(2/4분기 기준)

	접수	진행	조정	행정지도	조정성립	조정성립률
2002	653	49	490	64	216	44.1%
2003	485	89	365	16	179	49.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 금속노조 등 제조업에서 산별교섭제도의 가능성 실험
- 올해 상반기 임단협 교섭에서 금속, 병원노조들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음. 그동안 금융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산별교섭이 실시되어 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노동계에서 강도 높게 산별교섭을 요구하였음.
- 금속노조에서는 10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에 동의하고, 교섭권 위임을 통한 집단교섭을 하는 등 제조업에서 전국단위 산별교섭의 첫번째 사례로 꼽히고 있음.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주5일근무제, 근골격계 대책, 비정규직 문제, 노조활동 보장 등 5대 쟁점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집단교섭을 실시하고, 지역차원에서 임금 근로조건 관련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중층적인 교섭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음.
- 그러나 병원 업종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산별교섭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산별교섭제도를 둘러싼 논란만 거듭하다가 지방공사의료원과 일부 중소병원들만 집단교섭을 하는 것으로 정리됨. 이는 아직도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의 노사분쟁에 대한 정책기조의 강조점 변화
- 정부의 노사분쟁에 대한 정책기조는 크게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을 우선으로 하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런 노사자율 해결원칙과 법과 원칙의 강조는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두어짐. 신정부 출범 초반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 노사자율 해결원칙이 강조되다가 6월 말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기점으로 법과 원칙이 강조되어 옴.
- 6월 말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이후 철도노조 간무 대량 중징계, 조흥은행 파업 관련자 구속, 전교조 위원장 구속 등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이어짐.

◈ 2003년 상반기 주요 노동쟁의의 전개과정

○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사건과 노조 파업

- 두산중공업 노동자인 배달호씨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노조가 2002년도 파업시 무단결근처리 철회,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의 요구를 하며 파업에 돌입
- 두산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지역사회단체는 분식대책위를 구성하고, 두산중공업 분신현장 부근에 빈소를 차리고 두 달 넘게 농성투쟁 진행
- 신정부 들어서서 신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권기홍 장관이 창원의 두산중공업 현장으로 내려가 노사 중재를 한 끝에 △개인 손배□가압류 소급 취하 △조합비 가압류 40% 적용(60% 해제) △해고자 5명(HDS엔진 2명 포함) 복직 △지난해 47일간 파업 무단결근 처리 50% 보존 등 쟁점사항에 합의
-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깨졌다며 친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반면에 노동계는 정부의 중재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철도노조의 1인승무제 도입반대 및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투쟁

- 철도노조는 4월 초부터 1인승무제 도입철회 및 인력충원, 철도민영화 반대,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4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밝힘.
- 철도노조와 정부간의 노정협상 끝에 4월 20일 기관사 1인승무 철회 및 인원충원, 해고자 45명 신규채용, 손배 가압류 철회, 철도구조개혁 방향 등에 합의하고 파업 철회함.

○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요구 파업

-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2003년도 초부터 경유세 인하, 도로비 인하, 다단계 알선근절, 근로소득세제 개선, 과적단속 개선 등을 요구

하다 4월 초부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힘.

- 4월 하순부터 화물연대, 건교부, 노동부 관계자 등이 노정협상을 시작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난항을 겪다 5월 1일부터 파업 돌입. 이후 화물연대 부산지부 등 전국 지부로 파업이 확산되며 전국의 콘테이너 물류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등 물류대란으로 이어짐.
- 화물연대 파업 14일 만에 화물연대와 건교부,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상에서 경유가 인하와 관련해 7월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도로비 인하와 관련해 야간할인시간을 2시간 연장, 내년부터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지입제 문제는 개별등록제를 애초 예정되었던 2004년 12월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철회함.
- 노정합의 이후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버스, 레미콘 업계에서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후유증을 겪음.

○ 조흥은행노조 매각반대 파업

-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신한지주회사와 예보공사간의 매각협상이 진행되자, 조흥은행노조는 단계적 매각방침을 요구하며 5월 18일 파업 돌입
- 조흥은행노조의 전산실 직원들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은행업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
- 5월 22일 금융노조, 신한금융지주회사, 재경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3년간 독립경영 허용, CEO는 조흥출신 임명 △통합여부는 2년 후 통추위에서 결정 △통추위는 양은행 동수로 구성 △고용수준은 3년간 현수준 보장 △임금은 신한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지주회사 임원은 양은행 동수로 구성 △대등합병 원칙, 존속법인은 조흥 사용 △합병 후 은행명은 조흥은행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통추위서 결정 등의 내용에 합의
- 조흥은행 노사합의 이후 은행업무는 정상화되었고, 조흥은행노조 지부장 등 노조간부들은 사법처리됨.

○ 궤도연대 1인승무제 폐지 연대파업

-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노조 등으로 구성된 궤도연대는 기관사 1인승무제 폐지 및 지하철 안전대책 등을 요구하며 6월 24일 투쟁돌입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부결되고, 나머지 3사 지하철노조만이 가결되어 이들 노조들을 중심으로 1인승무제 폐지 투쟁 시작됨.

- 궤도연대의 1인승무제 폐지 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교섭 거부. 3개 지하철노조는 협상에 별 진전이 없자 연대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운행이 계속되면서 일부 운행에 차질을 빚는 정도에 그침.
- 궤도연대 소속 지하철노조들과 지하철공사측은 개별 협상을 통해 지하철 안전운행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파업 종료

○ 철도노조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파업

- 4월 20일 철도노조와 철도청간의 노정합의가 이뤄진 이후 정부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철도를 공사화하기 위한 제도준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함.
- 철도노조는 4.20 노정합의 때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노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시 파업돌입 계획을 밝힘.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돌입시 주동자 사법처리와 공권력 투입방침 밝힘.
- 6월 28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파업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하여 주동자 연행 및 해산. 이어 노조 집행부 등 파업참가자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초강경 대응 입장 취함.
- 철도노조는 파업 나흘만에 현장복귀를 발표하고 파업 종료함. 그러나 정부는 파업참가자 전원인 8천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법에 따른 처리방침 고수

○ 금속산업노조들의 집단교섭과 주5일근무제 합의

- 7월 초부터 금속노조, 민주화섬연맹, 자동차노조 등의 임단협 투쟁이 본격화되었음. 그러나 금속노조를 제외하면 각 사업장별로 진행이 되면서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음.
-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주5일근무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잠정합의를 했지만 사용자측에서 일부 회사가 교섭권 위임을 철회하는 등 내부진통을 겪은 후에 주5일근무제 도입에 합의를 했음.
- 금속노조의 주5일근무제 도입은 제조업에서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에 합의함으로써 노사관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금속노조와 사용자대표간의 주5일근무제가 합의되면서 전경련 등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근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등 주5일근무제 논의에 새로운 국면이 형성됨.

◈ 2003년 하반기 노사관계 예상 쟁점과 과제

○ 주5일근무제 법제화를 둘러싼 노사정 협의 재개

- 금속노조의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된 주5일근무제 법제화 논의는 전경련이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한 법개정 입장을 밝힌데 이어 노동계도 양대 노총이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한 상태임.
- 주5일근무제 법제화를 둘러싼 노사정 협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고 8월 초부터 본격 협상을 한다는 계획임.
- 주5일근무제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심 쟁점은 휴일휴가일수와 시행시기 등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이미 금속노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틀 내에서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합의를 한 만큼 노동계는 정부법안보다 휴일휴가일수를 늘리는 쪽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양대노총의 제조업 산별연맹들의 협의체인 제조연대의 경우 휴일수를 18~27일로 하고, 생리휴가 존속, 임금보전방안 명문화, 시행시기 단축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반면 경영계는 현재 정부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주5일무제 법제화는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기국회나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주5일근무제 법제화 논의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여부, 현장조합원들의 분위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통과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제시와 노사의 대응

- 정부는 8월 하순까지 노사관계 개혁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어떤 내용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노사 양측의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미 언론에서는 유럽형 모델과 영미형 모델, 혼합형 모델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이 어떤 노사관계 모델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큼.
-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경우 제도개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찬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제도개혁을 둘러

싼 노사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개혁 프로그램에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여부, 그리고 그런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노동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둘러싼 노정갈등 예상

- 노동계는 하반기에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법,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경제특구법안 개정 등의 제도개선 요구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들 제도개선 요구들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대정부 압박투쟁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들 쟁점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노동계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민주노동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들 정당들은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내에 정치적인 지지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공공부문노조 임단협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개정 요구 연계

- 민주노총의 공공, 철도, 병원 등 공공부문노조들은 공공연대를 결성하고, 하반기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공공부문 관련 법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상당수 공공부문노조들이 하반기에 임단협 교섭을 벌일 계획이어서 공공연대는 임단협과 이들 제도개선 요구투쟁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될 경우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법안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노사정위원회의 재정비와 활동 본격화

- 하반기에는 노사정위가 분과위원회 체제를 구성하는 등 조직정비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이 정리가 될 경우 제도개선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큼.
- 노사정위의 제도개선 논의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느냐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8월중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예정인 만큼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가할 경우 노사정위 논의는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반면에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노사정위의 활동폭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슈분석

최근의 임금변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종훈*

Ⅰ. 임금에 대한 새로운 관심

◈ 고용 흐림, 임금 맑음?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은 고용 문제에 집중되어 왔음. 지금도 청년실업 등 우리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노동시장 여건이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기업이 임금 걱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됨.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outsiders)'의 사정은 힘들어도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insiders)'은 임금을 충분히 높게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insiders에 대한 과보호가 있을 경우 insiders는 고용에 대한 큰 위협없이 임금인상 압력을 행사하고,
-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는 더욱 위축되어 outsiders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어 갈 수 있음.

○ 특히 2003년 임금협상이 한창인 지금, 사업장에서는 임금투쟁의 열기가 매우 높고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hee@mju.ac.kr).

이로 인해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노동자들은 1998년 경제위기시에 못받았던 임금을 아직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하고,
-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성향의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양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임금격차의 확대?

○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987년 이후 10%를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고임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신인사관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비정규직 확대, 소수정예주의와 능력주의의 인사관리, 경력직 채용 확대, 연봉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 등의 인사관리 변화가 노동시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노동수요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가격변수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구조, 즉 노동자간 임금격차의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Ⅱ. 2002년의 지나친 임금인상

◈ 임금인상과 생산성 증가의 비교

○ 2002년 현재 우리나라 명목 평균임금은 2,036천원으로 1987년의 387천원에 비해 (15년만에) 5.3배로 높아졌음.

○ 명목가격 기준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표 1 참조), 1985년 이후 우리나라 임금은 줄곧 생산성증가율을 앞질러 왔음.

- 구체적으로는 '비농전산업 1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과 '비농전산업 취업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비교한 것임.

※ 매월노동통계 조사대상이 1999년 이후 과거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1999년 이전 연도와의 통계적 일치성을 위해 10인 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비교함.

– 임금자료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수치임.

○ 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간의 격차가 1985～90년의 2.5%포인트(=14.6%-12.1%)에서 1990～95년에는 1.1%포인트로 줄어들었다가, 1995～2002년간에는 다시 2.1%포인트로 커졌음.

– 물론 1985～90년의 격차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1998년 절대임금의 수준이 감소한 기간이 포함되었는데도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임.

○ 따라서 1996～2002년간의 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1997～98년의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2.1~6.3%포인트의 큰 차이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가장 높은 수치인 1999년의 6.3%포인트의 차이는 1998년 임금삭감 이후의 복원 과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 두번째로 높은 수치인 2002년 경우의 5.7%포인트(=11.6%～5.9%)는 경제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1998년의 경우 생산성이 6.3% 증가로 나타난 것은 명목 GDP가 1.5%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더 큰 폭인 7.3%나 줄어들었기 때문임.

○ 실질임금과 불변가격 생산성과의 격차를 비교해 보더라도, 1985년 이후 줄곧 실질임금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되어 왔음.

– 1995～2002년간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불변생산성 증가율에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 이 기간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면, 역시 1997～98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는 그 폭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 그러면 최근의 (특히 2002년) 높은 임금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1998년의 임금삭감에 대한 보상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 수는 있으나, 임금삭감 시기를 포함한 1995～2002년간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넘어섰기 때문에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표 1> 연도별 임금 및 생산성 추이(비농전산업)

(단위 : 원, 10억원, %)

	명목임금	명목생산성	실질임금	불변생산성
1985	324,283	5.5707	692,912	10.9194
1986	350,966	6.3002	729,856	11.7315
1987	386,536	6.9425	780,030	12.4729
1988	446,370	7.9614	840,701	13.2901
1989	540,611	8.5529	963,278	13.5039
1990	642,309	9.8496	1,054,123	14.3158
1991	754,673	11.3041	1,132,802	14.7680
1992	869,284	12.5804	1,228,514	15.2051
1993	975,125	14.0397	1,314,964	15.9944
1994	1,098,984	15.7260	1,394,597	16.7770
1995	1,222,097	17.7996	1,484,316	17.7996
1996	1,367,501	19.1783	1,582,957	18.5519
1997	1,463,300	20.3932	1,621,852	19.2371
1998	1,426,797	21.6799	1,470,894	19.4902
1999	1,599,210	22.9443	1,635,335	21.1747
2000	1,727,339	23.5717	1,727,339	22.2209
2001	1,824,826	24.3929	1,752,955	22.4780
2002	2,036,207	25.8346	1,904,777	23.3185
연평균 증가율(%)				
1985~90	14.6	12.1	8.8	5.6
1990~95	13.7	12.6	7.1	4.5
1995~2002	7.6	5.5	3.6	3.9
전년대비 증가율(%)				
1996	11.9	7.7	6.6	4.2
1997	7.0	6.3	2.5	3.7
1998	-2.5	6.3	-9.3	1.3
1999	12.1	5.8	11.2	8.6
2000	8.0	2.7	5.6	4.9
2001	5.6	3.5	1.5	1.2
2002	11.6	5.9	8.7	3.7

주 : 명목생산성=명목 GDP/취업자수.
불변생산성=실질 GDP(1995년 가격 기준)/취업자수.
실질임금=명목임금/CPI (2000년 기준).

자료 : KLIS (http://152.99.129.57), 매월노동통계
통계청 D/B (http://www.stat.go.kr)

◈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의 국가간 비교

○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게 됨.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WL)/Y=W/(Y/L)은 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W의 증가율이 (Y/L)의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단위노동비용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임.

○ 국제경쟁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단위노동비용의 변화를 국가간에 비교하고자 함.

- <표 2>는 1996～2002년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의 연도별 변화를 국가간에 비교한 것임.

○ 자국통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997～99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해 왔으며, 이 시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높게 증가했음.

- 특히 2002년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은 모두 단위노동비율이 감소하였는데도 우리나라만 (그것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2> 국가별 · 연도별 ·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단위 : %)

	전년대비 증가율(자국통화 기준)			
	미 국	일 본	한 국	대 만
1996	0.4	-2.9	3.5	-2.4
1997	-0.5	-1.1	-7.1	-0.7
1998	-1.8	0.3	-10.2	-0.4
1999	-2.5	-5.9	-4.4	-2.4
2000	-2.7	-6.6	1.9	-2.0
2001	3.6	2.5	5.2	0.0
2002	-1.3	-4.5	5.9	-8.8

	전년대비 증가율(US $ 기준)			
	미 국	일 본	한 국	대 만
1996	0.4	-16.2	-0.8	-5.9
1997	-0.5	-11.1	-21.4	-5.2
1998	-1.8	-7.3	-39.0	-14.5
1999	-2.5	8.4	12.5	1.3
2000	-2.7	-1.5	7.3	1.3
2001	3.6	-9.1	-7.9	-7.6
2002	-1.3	-7.4	9.3	-7.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

○ 환율효과를 감안해 주기 위해 US $ 기준의 단위노동비용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1997~98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경쟁국(특히 일본)과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았으며,

– 2002년의 경우에는 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임금인상에 대한 임금항목별 기여

○ 임금총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할 때, 각 임금항목(임금내역)의 증가율이 전체 인상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표 3>을 보면, 1987~96년의 10년간 정액급여의 증가율은 임금총액 인상률과 거의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왔음. 그러다가 1997~99년간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특이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절대 임금총액이 감소한(-2.5%) 1998년의 경우에도 정액급여는 3.7% 상승하였음. 초과급여(-15.0%), 특별급여(-17.0%)의 대폭적인 감소로 임금총액의 수준이 하락한 것임.

– 둘째, 1999년의 임금회복 과정에서도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대폭적인 회복이 (각각 30.1%, 28.3% 증가) 임금총액 인상에 기여

○ 이러한 사실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임금유연성 제고에 큰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있으며, 정액급여는 다른 임금항목에 비해 매우 경직적임을 의미함.

<표 3> 임금항목별 임금수준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원,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87	386,536 (10.1)	276,761 (7.8)	48,692 (11.2)	61,083 (21.2)
1988	446,370 (15.5)	316,047 (14.2)	53,223 (9.3)	77,099 (26.2)
1989	540,611 (21.1)	374,969 (18.6)	60,184 (13.1)	105,457 (36.8)
1990	642,309 (18.8)	443,829 (18.4)	70,020 (16.3)	128,460 (21.8)
1991	754,673 (17.5)	521,992 (17.6)	78,054 (11.5)	154,627 (20.4)
1992	869,284 (15.2)	596,586 (14.3)	86,299 (10.6)	186,399 (20.5)
1993	975,125 (12.2)	670,093 (12.3)	90,662 (5.1)	214,369 (15.0)
1994	1,098,984 (12.7)	746,329 (11.4)	98,619 (8.8)	254,035 (18.5)
1995	1,222,097 (11.2)	827,944 (10.9)	111,348 (12.9)	282,804 (11.3)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6	1,367,501 (11.9)	924,987 (11.7)	116,565 (4.7)	325,948 (15.3)
1997	1,463,300 (7.0)	1,012,352 (9.4)	118,245 (1.4)	332,702 (2.1)
1998	1,426,797 (-.5)	1,050,063 (3.7)	100,480 (-5.0)	276,253 (-7.0)
1999	1,599,210 (12.1)	1,114,192 (6.1)	130,709 (30.1)	354,308 (28.3)
2000	1,727,339 (8.0)	1,195,789 (7.3)	148,679 (13.7)	382,870 (8.1)
2001	1,824,826 (5.6)	1,273,663 (6.5)	149,161 (0.3)	402,001 (5.0)
2002	2,036,207 (11.6)	1,435,643 (12.7)	144,095 (−3.4)	456,468 (13.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KLIS (http://152.99.129.57), 매월노동통계조사.

<표 4> 임금항목별 임금증가율의 분해 (연도별 추이)

(단위 :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87	10.1 (100.0)	5.7 (56.2)	1.4 (13.7)	3.0 (30.1)
1988	15.5 (100.0)	10.2 (65.7)	1.2 (7.6)	4.1 (26.8)
1989	21.1 (100.0)	13.2 (62.5)	1.6 (7.4)	6.4 (30.1)
1990	18.8 (100.0)	12.7 (67.7)	1.8 (9.7)	4.3 (22.6)
1991	17.5 (100.0)	12.2 (69.6)	1.3 (7.1)	4.1 (23.3)
1992	15.2 (100.0)	9.9 (65.1)	1.1 (7.2)	4.2 (27.7)
1993	12.2 (100.0)	8.5 (69.5)	0.5 (4.1)	3.2 (26.4)
1994	12.7 (100.0)	7.8 (61.6)	0.8 (6.4)	4.1 (32.0)
1995	11.2 (100.0)	7.4 (66.3)	1.2 (10.3)	2.6 (23.4)
1996	11.9 (100.0)	7.9 (66.7)	0.4 (3.6)	3.5 (29.7)
1997	7.0 (100.0)	6.4 (91.2)	0.1 (1.8)	0.5 (7.1)
1998	-2.5 (100.0)	2.6 (33.7)	-1.2 (-15.9)	-3.9 (-50.4)
1999	12.1 (100.0)	4.5 (37.2)	2.1 (17.5)	5.5 (45.3)
2000	8.0 (100.0)	5.1 (63.7)	1.1 (14.0)	1.8 (22.3)
2001	5.6 (100.0)	4.5 (79.9)	0.0 (0.5)	1.1 (19.6)
2002	11.6 (100.0)	8.9 (76.6)	-0.3 (-2.4)	3.0 (25.8)

주 : ( )안의 수치는 임금총액 증가에 대한 기여도의 100분비임.
자료 : KLIS (http://152.99.129.57), 매월노동통계조사.

○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2001년부터 정액급여의 인상률이 임금총액 인상률을 앞지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임금총액 인상에 대한 정액급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임.

○ <표 4>는 임금총액 인상률을 임금항목별로 분해하여 비교한 것인데,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정액급여가 전체 인상률의 79.9%와 76.6%만큼 기여하였는데,

– 과거(1997년 이전 10년간)에 70% 미만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사실로 생각됨.

※ 임금인상률 분해는 항목별 임금증가분을 임금총액 증가분으로 나누어 계산함.

○ 결국 2002년의 임금인상은 그 폭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경직성이 높은 정액급여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그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됨.

Ⅲ. 임금격차의 변화

◈ 분석방법

○ 임금격차 분석을 통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결정요인)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임금방정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

– 회귀계수를 통해 다른 변수의 임금효과가 통제된 이후의 순(純)격차를 측정하고, 이것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봄.

○ 자료는 노동부의 임금구조통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임금방정식의 종속변수는 log(정액급여+연간특별급여/12)로 정의하였음.

– 초과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근로시간을 통제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초과근로 급여를 제외하고 '정상근로 급여'의 개념에서 이같이 정의한 것임.

◈ 인적자본 변수에 의한 임금격차: 학력과 성

○ 고졸 대비 대졸 근로자의 임금프리미엄(순임금격차)을 연도별 추이로 보면 (표 5 참조), 199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대학정원 확대로 인해 1980년대 이래 줄곧 축소되어 왔던 대졸-고졸간 임금격차가 1995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을 전후하여 기업들이 신인사관리제도 등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반대로 여성 대비 남성의 임금격차의 경우는 1995년부터 23%에서 20%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이것 역시 기업의 능력주의 인사관리 도입으로 성에 의한 임금차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다른 한편으로는 1995년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한데, 당시 법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6조 제2항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조항이었음.

<표 5> 학력별 · 성별 임금격차의 연도별 추이

	대졸/고졸 임금격차	남성/여성 임금격차
1976	0.721	0.224
1978	0.731	0.271
1980	0.679	0.356
1981	0.682	0.296
1982	0.660	0.326
1983	0.674	0.324
1984	0.677	0.306
1985	0.681	0.292
1986	0.660	0.296
1987	0.653	0.280
1988	0.567	0.280
1989	0.528	0.270
1990	0.519	0.269
1991	0.483	0.259
1992	0.412	0.274
1993	0.390	0.272
1994	0.385	0.270

	대졸/고졸 임금격차	남성/여성 임금격차
1995	0.389	0.235
1996	0.401	0.215
1997	0.410	0.213
1998	0.419	0.202
1999	0.412	0.211
2000	0.445	0.208
2001	0.437	0.19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사업체 속성에 의한 임금격차: 규모와 노동조합

○ <표 6>은 임금방정식에 기본적인 인적자본 변수(학력, 성, 연령, 근속년수)에 추가로 사업장 관련 변수인 노조조직 여부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이들의 interaction term을 포함시켰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임.

- 인적자본 변수 이외의 요인, 즉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성격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며,
- 사업체 규모는 지불능력 효과, 노동조합은 교섭력 효과 측정을 위한 것임.

○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인적자본 변수의 임금효과를 통제한 후의),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95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고, 1997년 이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3.8%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 노조/비노조 사업장의 임금격차는 1997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1~2% 정도의 양(혹은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커져서 2001년에는 무려 10.2%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생산직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비농전산업/전직종 근로자의 경우 보다 규모 및 노조의 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규모와 노조의 interaction term의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는데, 이는

-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대기업의 경우 (파업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조의 위협효과(threat effect)로 노조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함.
- 이로 인해 사업체 규모 효과도 노조 사업장에서는 크게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함.

<표 6> 사업체 규모 및 노조 회귀계수의 연도별 추이

	비농 전산업/전직종			제조업/생산직		
	규 모	노 조	규모×노조	규 모	노 조	규모×노조
1991	0.022*	-0.040*	0.002*	0.023*	-0.036*	0.006*
1992	0.022*	0.017*	-0.013*	0.021*	-0.002	-0.003*
1993	0.020*	0.000	-0.012*	0.037*	-0.014*	-0.017*
1994	0.021*	-0.001	-0.008*	0.044*	-0.008*	-0.020*
1995	0.027*	0.016*	-0.017*	0.048*	0.006*	-0.018*
1996	0.027*	-0.017*	-0.009*	0.052*	0.000	-0.023*
1997	0.039*	-0.009*	-0.019*	0.063*	0.031*	-0.024*
1998	0.035*	0.024*	-0.018*	0.058*	0.072*	-0.025*
1999	0.031*	0.089*	-0.021*	0.071*	0.053*	-0.041*
2000	0.026*	0.083*	-0.019*	0.043*	0.097*	-0.030*
2001	0.038*	0.102*	-0.031*	0.072*	0.106*	-0.051*

주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이제 <표 6>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소기업・비노조' 사업장 근로자 대비 '대기업・노조', '대기업・비노조', '중소기업・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순임금격차를 계산해 본 것이 <표 7>에 요약되어 있음.

○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이후에 '중소기업・노조' 사업장의 근로자가-인적자본 변수 차이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대기업・비노조'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중소기업・비노조 사업장 대비) 순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임.
- 규모의 임금효과에 비해 노조의 임금효과가 훨씬 크고, 후자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더 크기 때문임.
- 즉, '대기업・비노조'가 갖고 있는 규모 효과를 '중소기업・노조'의 노조효과가 압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

○ 물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중소기업・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기업・비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그러나 2001년의 4그룹 근로자의 평균임금(초과급여 제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기업・노조=2,132천원
- 대기업・비노조=2,077천원
- 중소기업・노조=1,900천원
- 중소기업・비노조=1,428천원

<표 7> 노조 및 규모의 임금효과(중소기업 · 비노조 사업장 기준)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비농전산업 전직종	대기업/노조	1.1	4.1	9.8	9.0	10.9
	대기업/비노조	3.9	3.5	3.1	2.6	3.8
	중소기업/노조	-0.9	2.4	8.9	8.3	10.2
제조업 생산직	대기업/노조	7.0	10.5	8.3	11.0	12.7
	대기업/비노조	6.3	5.8	7.1	4.3	7.2
	중소기업/노조	3.1	7.2	5.3	9.7	10.6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여기서도 확인되는 사실은,
- 대기업의 경우 노조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에(55천원), 중소기업의 노조효과(472천원)는 매우 크고,
- 비노조 사업장의 규모효과(649천원)에 비해 노조 사업장의 규모효과(232천원)는 매우 작으며,
- '대기업 · 비노조'가 '중소기업 · 노조'보다 177천원(9.3%)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인적자본 변수 차이를 감안해 준다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범위임.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정규직 대 비정규직

○ 최근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측정해 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해 보았음.
- 종속변수는 log(최근 3개월치의 평균임금)이고,
- 독립변수는 학력, 성, 연령 등 기본 인적자본 변수에 비정규직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음.
-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직 ·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에서 제외함.

○ 분석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약 40%(직종더미 포함시 약 35%)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단위 : %)

	2000	2001	2002
기본임금방정식	-40.2	-40.1	-39.4
직종더미 포함시	-32.5	-35.1	-34.7

◈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결정 방식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는 대졸 근로자의 고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이러한 관점에서 '대졸이면서 상위 25%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해 보았음.

- 많은 대졸 근로자들이 하향취업되어 있어 대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분석결과를 보면(표 9 참조), 첫째, 지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의 임금프리미엄 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심지어 (2001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1999년의 경우) (－)의 효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이는 입직시 여성이 남성과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하는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여성에 대한 채용기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일단 채용된 여성 입직자의 평균 지식수준은 남성의 지식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임(소위 sorting의 문제).

○ 둘째,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근속년수의 임금효과가 훨씬 더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그 크기도 더욱 작아지고 있음.

- 지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기술(지식)의 기업특수성(firm-pecificity)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영

<표 9> 성 · 근속년수의 임금효과 비교: 전체 대 고학력/고임금

	성		근속년수	
	전 체	고학력/고임금	전 체	고학력/고임금
1993	0.316*	0.032*	0.024*	0.005*
1995	0.279*	0.038*	0.025*	0.003*
1997	0.251*	0.005*	0.024*	0.002*
1999	0.251*	-0.007*	0.023*	0.002*
2001	0.220*	-0.001	0.023*	0.0003*

주 : 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2) 기본 임금방정식에 직종 더미를 추가한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Ⅳ. 요 약

○ 최근의 임금수준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은 국민경제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해 왔고,
- 최근 이 차이는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의 임금은 시장적(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추측되며,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됨.
- 또한 정액급여 중심의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임금유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됨.

○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임금격차의 구조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 1995년을 기점으로 학력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성별 임금격차는 축소되는데, 이는 능력주의 인사관리가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성별 격차도 미미해지고 근속년수에 의한 임금차이도 미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규모 및 노조의 임금효과가 IMF 이후 최근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보다 노조 · 비노조 기업간 임금격차가 훨씬 더 커지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 노조 사업장'이 '대기업 · 비노조 사업장'보다 더 높은 임금프

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동일 학력・성・연령에서도 35~40%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 결국 최근 상황을 보면, 노사관계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 상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 노조의 영향권 밖에 있는 비정규직은 악화된 시장여건으로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역시 노사관계적보다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능력적 요소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이종훈(1992), 「임금 프리미엄의 결정요인」,『한국개발연구』, Vol. 14, No. 4, pp.79~106.

이종훈(1994),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Vol. 16, No. 1, pp.149~174.

정진호 외(2002. 12), 『2002년 임금교섭 실태와 과제』, 노동부.

Baron, J. N. & David. M. Kreps(1999), *Strategic Human Resources — Frameworks for General Managers*, John Wiley & Sons, Inc.

Kim, Yunbae & Gyeongjoon Yoo(2000), *Wages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Lazear, E.P.(1998),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John Wiley & Sons, Inc.

http://www.stat.go.kr

http://www.kli.re.kr

http://152.99.129.57(KLIS)

노동통계개선시리즈 5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003년 가중치

김기헌*

Ⅰ. 2003년 가중치 개발 배경

○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의 경우도 표본자료에 대표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1999년 가중치(이하 '구 가중치')를 개발한 바 있음(강석훈, 1999).

○ 구 가중치는 미국의 가구패널조사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중치가 부여됨. PSID는 1차 조사(웨이브)에 대해서 표본추출확률과 응답률을 토대로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2차 조사(웨이브)부터 표본 탈락(panel attrition)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산출함. KLIPS의 구 가중치 역시 표본추출확률과 응답률을 토대로 1998년 1차 조사(웨이브)의 가중치로 산출된 것임.

○ KLIPS의 구 가중치가 1999년 공개된 이후 추출확률계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추가로 발견되었음.

- KLIPS의 경우 1995년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구(ED)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표본추출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이하 '고특조사')의 조사구를 통해 이루어짐. 구 가중치에서는 ED의 가구수와 고특조사 조사구의 가구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표본추출확률을 계산하였지만, 실제로는 양자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음.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ihuns@kli.re.kr).

– 구 가중치를 계산할 당시에는 KLIPS 표본조사구가 도의 동부와 읍면부가 추출확률이 상이하다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

○ 1차년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를 개발하는 작업이 착수됨. 2003년도에 보완된 1차 조사(웨이브)의 가중치(이하 '신 가중치')는 통계청의 해당 부서의 협조하에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구 가중치를 보완한 것임(강석훈, 2003).

Ⅱ. 신 가중치 부여방법 및 결과

◈ 1차 조사(웨이브)의 가중치 부여방법 및 결과

○ 1차 조사(웨이브)의 가구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구 가중치와 동일하게 두 단계를 거쳐 계산됨.

– 가중치를 계산하는 첫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임.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됨. 먼저 표본조사구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함. 신 가중치에서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10%의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이 모든 지역에서 10%로 동일하다"는 가정을 그대로 사용함. 다만 지역별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구 가중치와는 달리 도의 동부 및 도의 시에 속한 읍면부를 구분하여 계산함. 구 가중치에서는 도 지역의 경우 동부 및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추출확률로 계산함. 반면 신 가중치는 동부 및 읍면부의 도시가구수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도 지역의 동부 추출확률과 읍면부 추출확률을 분리해서 계산함. <표 1>은 신·구 가중치의 지역별 표본추출확률 계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구 가중치의 경우 조사구 내의 총접촉시도가구수를 고특조사에 응답한 총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반면 신 가중치는 인구센서스 10% 자료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고특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특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접촉가

<표 1> 신·구 가중치의 지역별 표본추출확률 비교

	인구센서스 10% 추출확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구 가중치(1999)	0.1	광역시	(시부 표본조사구수/시부 조사구수)
		도	(도시조사구수/조사구수)× (표본조사구/도시조사구수)
신 가중치(2003)	0.1	광역시	(시부 표본조사구수/시부 조사구수)
		도의 동부	(동부 표본조사구수/동부 조사구수)
		도의 읍면부	(읍면부 표본조사구수/읍면부 조사구수)

주 : 표본조사구수는 KLIPS의 표본조사구수, 조사구수 및 도시조사구수는 10% 인구센서스의 조사구수 및 도시조사구수를 의미함.

구수를 나눈 값과 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특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함. 최종적으로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됨.

– 가중치를 계산하는 두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것임. 응답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전지역에서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응답률 조정은 무응답가구에 관한 특성 파악을 전제로 함. 이에 따라 가능한 응답률 계산은 지역정보나 조사구(ED)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임. 지역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이 같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며, ED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ED 내의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이 같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임. 구 가중치는 지역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신 가중치는 ED 정보를 활용하여 ED 내에서의 응답률을 면접확률로 이용하였음.

– 마지막 단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통해 패널자료의 가중치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 가중치는 사후층화 방법을 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음. 그 이유는 가구 자료이든, 개인 자료이든 사후층화에 사용될 적당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먼저 KLIPS의 1차 조사(웨이브)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함.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

구추계 자료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의 추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KLIPS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사후층화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함.

○ 1차 조사(웨이브)의 개인 가중치는 KLIPS의 경우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추출확률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가구 내의 가구원은 모두 동일한 가구 가중치를 부여함. 이는 PSID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것임.

○ <표 2>는 1999년도에 개발된 1차 조사(웨이브)에 대한 구 가중치와 2003년도에 보완된 1차 조사(웨이브)에 대한 신 가중치의 기초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음. 구 가중치의 가구 가중치의 평균값은 2457.5이며 개인 가중치는 2707.0인데 비해서 신 가중치는 각각 2331.7과 2332.1임. 신 가중치의 경우 가구와 개인 가중치간의 차이가 없으나 구 가중치는 가구와 개인 가중치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구 가중치의 경우 신 가중치에 비해서 편차가 2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신 가중치에서 가구 가중치의 합은 모집단의 추정 가구수에 근사하게 scale 조정을 한 값(11,276,899가구)이나 개인 가중치의 경우 가구원들의 총수에 관한 모수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scale 조정을 하지 않은 값임.

<표 2> 신 · 구 가중치의 기초통계치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 가중치(1999)	가구 가중치	10,316,198	2457.5	1040.8	551.2	5540.6
	개인 가중치	28,785,217	2707.0	1355.3	551.2	7259.8
신 가중치(2003)	가구 가중치	11,276,899	2331.7	453.5	1513.2	4514.6
	개인 가중치	30,039,371	2332.1	455.8	1513.2	4514.6

주 : 구 가중치는 표본추출확률만을 부여한 가중치(변수명: cwgt01h1)와 응답률까지 고려한 가중치(변수명: cwgt01h2)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응답률까지 고려한 가중치가 보다 개선된 가중치이므로 이것을 사용함.

자료 : 1998년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표 3> 지역별 표본가구수 및 신·구 가중치 부여 결과

	Un-weighted		구 가중치(1999)		신 가중치(2003)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서울	1,353	27.1	1,780,613	17.3	2,961,684	26.3
부산	486	9.7	831,845	8.1	1,105,238	9.8
대구	314	6.3	536,727	5.2	700,459	6.2
인천	153	3.1	309,257	3.0	372,062	3.3
광주	298	6.0	511,429	5.0	646,022	5.7
대전	158	3.2	310,040	3.0	352,060	3.1
울산	116	2.3	228,655	2.2	264,968	2.3
경기	856	17.1	1,946,958	18.9	1,976,455	17.5
강원	130	2.6	407,572	4.0	312,451	2.8
충북	113	2.3	386,406	3.8	255,802	2.3
충남	131	2.6	543,413	5.3	301,386	2.7
전북	199	4.0	513,186	5.0	451,777	4.0
전남	127	2.5	526,848	5.1	289,056	2.6
경북	274	5.5	738,764	7.2	619,352	5.5
경남	292	5.8	744,484	7.2	668.127	5.9
전 체	5,000	100.0	10,316,198	100.0	11,276,899	100.0

자료 : 1998년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 <표 3>은 지역별로 표본가구수와 신·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구 가중치의 경우 서울지역의 표본 구성비가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9.5% 포인트 낮아지고 있으나 신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경기 지역의 경우 구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의 표본 구성비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 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나 신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0.4%포인트 상회하는데 그침. 전반적으로 구 가중치에 비해서 신 가중치에 의한 지역별 표본 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2차 조사(웨이브)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 그동안 KLIPS는 2차 조사(웨이브) 이후의 가중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신 가중치가 공개되면서 1차년도 자료 가중치와 함께 2~4차년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2차 조사(웨이브) 이후부터 가중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웨이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

은 상황을 반영해야 함.

- 첫번째는 1차 조사(웨이브)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 조사(웨이브)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웨이브)간 표본 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됨.
- 두번째는 표본가구에 결혼, 동거, 입양, 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웨이브)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이 달라지게 됨.

○ KLIPS의 신 가중치는 2차 조사(웨이브) 이후에 발생할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던컨(Duncan, 199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함. 이 방법에 따른 가중치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이미 산출된 1차 조사(웨이브)의 개인 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함.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함.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 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함.
- 다음으로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웨이브)의 개인 가중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해당 조사(웨이브)의 가구 가중치를 산출함. 이 때 결혼, 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함.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됨.
- 이런 절차를 통해 산출된 개인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경우 0의 가중치를 주고 표본가구원의 경우 응답률로 조정한 추출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 것이며 가구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 분석 단위에 따른 1-4차년도 가중치 변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횡단면 분석	가구 분석	w1_h	w2_h	w3_h	w4_h
	개인 분석	w1_p	w2_pc	w3_pc	w4_pc
종단면 분석	가구 분석	w1_h	w2_h	w3_h	w4_h
	개인 분석	w1_p	w2_pl	w3_pl	w4_pl

주 : 신 가중치는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www.kli.re.kr/klips)에서 제공되고 있음. 1-4차년도 가중치는 가구번호(HHID), 개인고유번호(PID) 등 기준 변수가 포함된 엑셀 파일(.xls), SPSS 파일(.sav). SAS 파일(.sd2) 등 세 가지 형식의 데이터 파일로 제공됨.

○ 이렇게 해서 산출된 KLIPS의 신 가중치는 <표 4>에서처럼 분석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

- 먼저 개인 차원의 분석은 개인 가중치와 가구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음. 개인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의미상 '개인 종단면 가중치'로 명명), 가구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의미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명명).
-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종단면 분석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연도의 가구가 1차 조사(웨이브)의 가구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표본가구원으로 인해 가구구성이 바뀌므로 과연 동일한 가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이에 따라 영국의 가구패널조사인 BHPS나 독일의 가구패널조사인 GSEP의 경우에는 미국의 PSID와는 달리 종단면가구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지 않음.

Ⅲ. 가중치 부여에 따른 표본 대표성 비교

◈ 가구 자료의 대표성 비교

○ 1998년 1차 년도 KLIPS 자료를 중심으로 가중치 부여에 따른 표본 대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KLIPS의 가구 소득과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의 가구 소득을 비교 검토하고자 함. 두 자료간의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엄밀한 비교분석은 가능하지 않으나 도시가계연보는 가중치 부여에 따른 표본 값의 변화에 대한 준거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KLIPS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작업이 필요함.

-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단독가구 및 농·어가 등을 제외한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KLIPS의 비교 자료는 2인 이상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국한하여 계산하였음.
-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며 KLIP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

전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원천별로는 도시가계조사와 KLIPS의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KLIPS의 원천별 가구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가구 총소득과 도시가계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함.

–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도시가계조사는 1998년 당해 연도의 월평균 가구소득인데 비해서 KLIPS의 1998년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응답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소득임.

○ <표 5>는 두 자료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소득계층별 가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전반적으로 도시가계조사에 비해서 KLIPS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게 추정되었으며 소득계층별 분포에 있어서 KLIPS의 저소득 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KLIPS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도시가계조사의 월평균 근로자소득의 80.8%에 머물고 있음. 구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도시가계조사의 77.9%에 머물러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신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KLIPS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95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은 22.7%로 도시가계조사보다 9.9%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365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KLIPS가 4.2%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구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줌. 구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격차는 각각 11.7%포인트, 4.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가구 소득 및 소득계층별 분포 비교

(단위 : 천원, %)

	KLIPS			도시가계조사
	Un-weighted	구 가중치(1999)	신 가중치(2003)	
가구 월평균 소득	1,725	1,661	1,720	2,133
소득계층별 분포				
950원 미만	22.7	24.5	22.8	12.8
950~1,550원 미만	34.2	33.9	34.2	25.5
1,550~2,150원 미만	20.5	20.3	20.5	23.5
2,150~2,750원 미만	9.0	8.9	9.0	16.1
2,750~3,650원 미만	8.1	7.4	8.0	12.6
3,650원 이상	5.5	4.9	5.4	9.7

자료 : 1998년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1998년 도시가계연보 자료

◈ 개인 자료의 대표성 비교 검토

○ 이번에는 KLIPS의 개인 자료의 대표성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함. 개인 자료의 비교 대상 자료는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임. 전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검토할 때 사용했으며, 후자는 경제활동상태를 비교검토할 때 사용하였음.

○ 먼저 기본적인 인구구성과 관련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KLIPS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함. KLIPS의 경우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였음. 앞서 언급한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두 자료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장래인구추계는 1995년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추정된 것으로 KLIPS와 같이 도시지역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곧 KLIPS와는 달리 장래인구추계의 결과는 농촌지역을 포괄한 결과임.
- 다음으로 KLIPS는 군 복무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남성 인구가 적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표 6>은 두 자료의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대체로 두 자료간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남성에 비해서 여성 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략적인 인구 분포의 양상도 유사함. 다만 KLIPS의 여성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 분포에서도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먼저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래인구추계의 경우 여성 비중이 50.3%인데 비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KLIPS의 여성 비중은 51.5%로 약간 높게 나타남.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구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여성 비중은 51.7%로 약간 높아지며 신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래인구추계의 경우 30세 중반까지 10%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KLIPS는 40대 중반까지 10%대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KLIPS의 20~24세 연령층의 인구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된 것은 군입대 남성 인구가 제외된 결과로 풀이됨. 구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신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성별 구성과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표 6>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비교

(단위 : %)

	KLIPS			장래 인구추계
	Un-weighted	구 가중치(1999)	신 가중치(2003)	
성비(15세 이상)	94.35	93.54	94.36	98.96
연령별 분포				
15~19세	11.8	11.7	11.8	14.6
20~24세	9.5	9.7	9.4	13.5
25~29세	11.2	10.9	11.2	13.9
30~34세	10.7	10.5	10.8	12.7
35~39세	12.2	11.8	12.2	9.0
40~44세	10.7	10.1	10.7	7.8
45~49세	8.4	8.2	8.4	7.1
50~54세	6.7	6.8	6.6	6.4
55~59세	6.1	6.2	6.1	4.9
60~64세	4.7	5.0	4.7	3.6
65~69세	3.5	3.9	3.4	2.8
70~74세	2.4	2.6	2.4	1.8
75~79세	1.3	1.5	1.3	1.1
80세 이상	0.9	1.0	0.9	0.8

주 : 성비=남자/여자×100.
자료 : 1998년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1998년 장래인구추계 자료.

○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LIPS와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형태를 비교하고자 함. 비교가 되는 경활조사 자료는 전체 결과치와 도시지역에 국한된 결과치를 동시에 비교하고자 함(김대일 외, 2000).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 외에 비교 기준이 되는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문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상 장점이 존재함. 반면 이 역시 두 자료상의 다음과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경활조사는 매월 진행되는 조사인데 비해서 KLIPS는 1년 중 4~5개월간 진행되는 조사라는 차이가 존재함. KLIPS는 응답자마다 답변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간 변동에 따른 차이를 통제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장래인구추계와 마찬가지로 KLIPS는 군 복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경활조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표 7> 경제활동 및 취업형태 분포 비교

(단위 : %)

	KLIPS			경활조사
	Un-weighted	구 가중치(1999)	신 가중치(2003)	
경제활동				
취업 및 일시휴직	48.7	49.2	48.7	56.5(55.0)
실업	6.9	6.6	6.9	4.2(4.6)
비경제활동	44.4	44.2	44.4	39.3(40.4)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62.4	60.0	62.4	61.0(67.8)
비임금근로자	29.4	30.2	29.3	28.8(25.4)
무급가족종사자	8.2	9.8	8.3	10.1(6.8)

자료 : 1) 1998년 노동패널조사(KLIPS),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2) 경활조사의 괄호 안 수치는 도시지역 통계치로 김대일 외(2000) 참조.

○ <표 7>은 경활조사와 KLIPS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KLIPS가 경활조사에 비해서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형태별 비중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먼저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취업비중은 KLIPS가 7.8%포인트 낮게 추정되고 있으며 실업과 비경제활동 비중은 각각 2.7%포인트, 5.1%포인트 높게 추정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에 국한된 수치를 살펴보면 두 자료간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을 알 수 있음. 구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경활조사와의 차이는 약간 보정되고 있으나 신 가중치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경제활동상태의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형태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 자료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0%대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 미만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0% 미만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KLIPS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약간 높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낮은 특성을 보여줌. 경활조사를 도시지역으로 국한해 볼 때 KLIPS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비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약간 높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구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과 대비됨. 신 가중치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결 론

○ KLIPS는 대표적인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자리잡아 왔으며 이번에 자료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중치가 제공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가구패널조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도시가계조사나 경활조사 등 다른 표본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KLIPS의 표본 대표성 문제가 신 가중치를 통해 완전히 보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움. 물론 비교대상이 되는 자료간의 차이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비교대상 자료간의 표본설계 및 조사대상, 조사방법상의 차이일 수 있음. 이와 함께 패널조사는 일반 공식 통계자료와는 달리 집계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본 대표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KLIPS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에 발견된 사실들과 함께 표본 이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표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향후 전개될 것으로 보임. 신 가중치의 개발은 이러한 작업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강석훈(1999),「KLIPS 1차 웨이브에서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제1회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_____(2000),「KLIPS 2차 웨이브의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제2회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_____(2003),「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2003-04.

김대일・남재량・류근관(2000).「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 연구」,『노동경제논집』, 3.

Duncan, G. J(2003), "A Simple Methods for Weighting in Household Panel Surveys," in Wolfgang Voges eds, *Dynamic Approaches to Comparative Social Research : Rec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Ashgate Publishing Company, London.

노동판례

주요노동판례

윤문희*

1. 전직발령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349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노원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 (주)두양성산자동차운전전문원(이하'성산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2000. 10. 31. 설립신고된 노원학원노동조합에서 노조간부로 활동 중인 피고보조참가인 외 5명(최○○, 황○○, 김○○, 이○○, 이△△, 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노원학원에 2000. 4. 18.부터 2000. 7. 28.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는 2000. 11. 1.자로 위 최○○, 황○○을 노원학원에서 계열기업인 위 성산학원으로 전적[1]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2000. 11. 13.자로 참가인과 이○○를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김○○과 이○○을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보직 및 조변경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인사조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2. 2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인사조치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2] 원고가 이에 불복하

---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1) 인사발령문상으로는 '전보'로 되어 있으나, 통상 전보는 동일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지칭하고, 위와 같은 기업간 전직의 경우에는 '전적'이라고 지칭함이 타당하다.

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3]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기각결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전적이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4] 이러한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해당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들로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일련의 갈등상황 및 원고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등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립 이후 42명에 이른 조합원수가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점, 근무시간 중에 회사차량 등을 이용한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과 집단적인 노조가입에 대하여 원고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어서 참가인 등을 해고한 점, 이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등과 함께 원고는 성산학원으로부터 요청으로 2000. 10. 23. 이 사건 전적발령을 결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노조설립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에야 발령공고한 점, 전적발령대상자들과의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원고는 전적발령을 받은 노조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2) 그밖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중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전적 등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함.
3) 중노위 2001. 4. 20. 선고, 2001부노5호 재심기각 결정
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참조

2000. 11. 13. 전적발령자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들을 대신한 다른 직원들을 성산학원에 보내지는 않고, 전적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직변경 전에 참가인 등은 모두 같은 조의 도로주행강사들이었던 점, 장내기능 강사는 도로주행강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조치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설립 등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임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42조 제2항의 위반이다 - (주)N 특수화학 사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 (주)N특수화학 대표 최○○가 2001. 3. 25.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2001. 4. 26.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6]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임금의 지급이 장기에 걸쳐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불안의 야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으로 개개의 임금체불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36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42조 제2항은 유예기간이 없어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이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피고인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2002. 8. 29. 상소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강제

6)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노3777 판결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7]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3. 일정한 범위내에서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차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한밭여객자동차(주) 사례(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2누9348 판결)

사건개요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이하 '한밭노조'라 한다)는 대전의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한밭여객자동차(주)(이하 '한밭여객'이라 한다)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 197명 중 6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서진운수지부(이하 '서진노조'라 한다, 한편 위 한밭노조와 함께 이하 '원고 노조들'이라 한다)는 같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진운수(주)(이하 '서진운수'라 한다, 한편 위 한밭여객과 함께 이하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 147명 중 7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노조들은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들과 사이에 2000. 5. 15. 부터 같은 해 7. 14.까지 10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00. 7.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2000. 8. 11. 제시한 조정안을 원고 노조들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하고, 원고 노조들은 2000. 8. 16. 충남지노위와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부터 주유거부, 차량열쇠 미반납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그 후 원고 한밭노조는 회사측에 2000. 8. 24.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을 통지하고 배차된 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5명과 오후 근무자 15명이 2000. 8. 24. 오전과 오후

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1994. 3. 25. 선고, 93도2903 판결;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등 참조

총 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한편, 서진노조는 2000. 8. 21.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9명이 왕복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이에 대하여 한밭여객은 2000. 8. 25.부터, 서진운수는 2000. 8. 22.부터 조합원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고, 다만 정상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신청서와 운행 도중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차하겠다고 알린 후, 각 2000. 11. 16.까지 위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노조들은 참가인 회사들의 위 배차거부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지노위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노조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8])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3. 15. 원고 노조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일반 시민법하에서 근로자의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쟁의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사용자측에게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6호도 바로 이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나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나 대항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9])

한밭노조의 쟁의행위는 2000. 4. 4.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외의 노동조합인 원고 노조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

8) 중노위 2001. 3. 15. 선고, 2000부노161 및 2000부노162호 재심기각결정
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점[1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노조들은 그 다음 날부터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회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의 돌입은 회사에 있어서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 명예 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부담,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않아 참가인 회사들로서는 이러한 파행운행의 계속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원고 노조들이 부분파업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0. 10. 16. 회사에 공문을 통하여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없는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된 조합원들의 집회와 유죄판결을 받은 업무방해 등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 조합원의 미승무일의 임금지급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문의 내용이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또는 위 조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원고 노조들의 일방적인 배차요구에 불과할 뿐 파업철회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노조들이 파업의사 철회가 없는 이상 조합원들의 배차가 파행운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었던 점,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한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참가인 회사들의 쟁의대항행위로서의 배차거부는 여전히 수동적·방어적인 성격을 잃지 않았고, 그 범위 역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파행운행으로 인한 회사측의 중대한 타격 및 반공익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 2247 판결 참조

노동일지

주요노동일지

(2003. 6. 16～2003. 7. 15)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3. 6. 16		· 한국노총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단체협상 쟁취를 위한 파업출정식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 경제특구 폐기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	
6. 17		· 한국노총 무역정보통신노조: 7차 단체협상 ·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공부문 저임금·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6. 1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아·태지역 9개국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	· 민주노총: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확대를 위한 공청회	·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정부지분의 일괄매각 방침에 반발하여 전면파업 돌입 · 대우조선 해양노조: 2003 임금인상 잠정합의 · 경기도노조 수원시청 분회: 단협 합의타결, 정상근무 복귀
6. 19		· 한국노총 공공부문: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파업 자진철회, 정상근무 복귀 · 전북지역일반노조 SPG 현장위원회: 파업 일시중단, 정상조업 복귀
6. 1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NEIS 폐기촉구 결의대회 개최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6. 23		· 전국철도노조: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통과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쟁점사항에 합의타결하여 파업 종료 ·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노조: 임·단협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상집간부 철야 농성 돌입 · 영일케미컬노조: 임·단협 합의 · 전국농협노조 진주서부: 단협 체결지연에 반발하여 파업돌입
6. 24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구조조정중단, 공공의료 역할강화를 위한 공청회	· 부산교통공단, 대구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임·단협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파업돌입 이 날 오후 대구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단은 쟁점사항에 합의하여 파업 종료 · 흥국생명노조: 단협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점거 농성
6. 25	· 노사정위원회: 국제노사정위원회 기구연합 총회 참석	· 대한상의: 일본 기업리스크관리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	· 대전시청 상용직 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인해 파업돌입 · 태화기계노조: 임·단협 타결지연, 파업돌입
6. 26			· 성우오토모티브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파업돌입 · 근로복지공단노조: 임·단협 합의타결
6. 27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별전환투표 동시 개표 · 민주노총 공공연맹: 투쟁 문화제 개최 · 대한상의: DDA환경협상 심포지엄 개최	
6. 30			· 한국합섬노조: 임·단협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부분파업 돌입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6. 30		· 한국노총: 2003년 임·단투 승리 총파업 진군대회 개최 · 민중연대: 철도강제진압 및 농민탄압 규탄대회 개최	· 금속노조 씨멘스VOD한라지회: 임·단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 진주햄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부분파업 돌입
7. 1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시행 8주년 기념 토론회	· 대한상의: 미국 유통업의 최신동향 세미나개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제7차 상경투쟁개최	
7. 2	·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대회 · 노동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개소식	·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철회 찬반투표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 관리조합원 결의대회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총파업 · 전경련: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문 선포식 · 민주노총: 현 정권 규탄대회 개최 및 4시간 부분파업 실시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구조조정 저지 및 임·단투 승리결의대회 개최	· 정식품노조: 임·단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 한국합섬노조: 임·단협에 잠정합의하여 정성조업 복귀
7. 3		· 전력관련 9개노조: 전력관련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식 개최	· 한국철강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 전국택시노조 승리운수분회: 임금인상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전면파업 돌입 · 아남르그랑노조: 임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 롯데호텔 대전: 사업폐지에 반발하여 근로자 상경농성
7. 4		· 민주노총: 근로자파견법 철폐 집회 개최	
7. 5			· LG화학노조: 임·단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 충남지역노조 정환기계공업지부: 임·단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7. 7		·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	· 한국네슬레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7. 7			· 울산문화예술회관노조: 파업 자진철회, 정상근무 · 민주택시연맹: 창영운수 등 4개 분회, 전면파업 돌입
7. 9	· 한국노동연구원 · 한미경제학회: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동' 공동세미나 개최	· 경총: 제23회 전국 인사 · 노무관리자대회(교육)	· 전국자동차노련 청주시내버스 3개지부: 임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돌입 · 아남르그랑노조: 파업중단, 정상조업 복귀
7. 10			· 청호컴넷노조: 임 · 단협 타결지연으로 부분파업 돌입 · 증권산업노조 KGI증권지부: 임협 타결지연으로 부분파업 돌입 · 전국축협노조 부산경남우유지부: 임 · 단협 타결지연으로 부분파업 돌입 · 전국자동차노련 청주시내버스 3개지부: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정상승무 복귀 · 전국대학노조 숭의여자대학지부: 단협 합의타결하여 정상근무 복귀
7. 11	·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 자동차노련 제주시외버스 6개분회: 임 · 단협 타결지연으로 전면파업 · 한국까르프노조: 파업 중단으로 정상근무 복귀
7. 12			· LG화학노조: 임 · 단협 타결지연으로 공장별 철야농성 돌입
7. 14			· 포항지역건설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으로 파업 돌입 · 남양금속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전면파업 돌입 · 건설운송노조 동양레미콘 화성분회: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 대원개발(익산CC)노조: 임 · 단협 합의타결로 정상근무 복귀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7. 14			· 전국축협노조 부산경남우유지부: 임·단협 합의로 인해 정상조업 복귀 ·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동서다이너스티): 파업자진 철회로 정상조업 복귀
7. 15			· 현대자동차노조: 파업 일시중단, 전지부 정상조업

주 요 통 계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종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1]		
실질금액	1997	423,006.7	402,655.4	126,117.2	46,137.4	9,809.0	175,956.0	268,722.6	145,294.6
	1998	394,710.4	366,026.0	116,734.8	42,161.3	9,868.0	163,287.2	241,688.0	114,563.5
	1999	437,709.4	400,521.2	141,295.1	38,305.8	10,897.0	182,771.9	264,480.4	118,772.9
	2000	478,532.9	415,098.8	163,733.1	37,125.3	12,425.3	200,170.6	282,313.2	132,337.3
	2001	493,380.3	420,774.3	167,172.3	39,207.0	13,064.4	208,031.3	292,260.7	129,926.6
	2002	524,689.4	441,463.1	177,737.3	40,449.1	14,782.4	226,421.0	312,644.3	136,219.6
	1998. 4/4	108,963.4	101,781.3	31,169.9	12,007.9	2,445.1	42,559.0	63,193.2	31,281.4
	1999. 1/4	96,925.2	89,785.1	31,110.8	7,283.8	2,758.5	43,758.8	62,768.3	24,486.4
	2/4	107,613.4	98,305.5	35,109.7	9,916.4	2,591.2	45,065.7	64,474.1	30,364.8
	3/4	110,085.2	100,234.5	35,672.7	10,143.7	2,680.8	45,364.3	67,192.6	30,382.0
	4/4	123,085.7	112,196.2	39,401.9	10,961.9	2,866.5	48,583.0	70,045.3	33,539.7
	2000. 1/4	109,670.5	96,000.5	38,226.6	6,774.3	3,289.4	49,201.4	69,189.3	30,064.6
	2/4	118,563.0	102,552.8	41,112.4	9,545.3	2,984.0	49,873.2	69,817.7	34,383.2
	3/4	121,061.2	105,343.2	42,265.4	9,967.3	3,035.3	49,565.1	70,884.8	33,690.2
	4/4	129,238.1	111,476.2	42,128.7	10,838.4	3,116.8	51,531.0	72,421.5	34,199.3
	2001. 1/4	113,830.6	96,123.6	39,983.5	6,901.6	3,619.0	50,995.6	70,382.4	28,591.1
	2/4	122,125.5	103,950.2	42,128.9	9,679.9	3,068.8	51,805.4	72,580.0	32,599.4
	3/4	123,645.2	105,951.8	41,922.0	10,730.7	3,118.5	51,523.1	74,320.1	32,848.7
	4/4	133,778.9	114,748.6	43,138.0	11,894.8	3,258.1	53,707.4	76,978.1	35,887.4
	2002. 1/4	120,860.9	103,532.6	41,654.4	7,498.3	4,115.3	55,121.0	76,307.2	30,482.1
	2/4	130,226.6	109,729.0	44,915.1	9,977.9	3,471.4	56,566.8	77,971.3	34,370.8
	3/4	130,758.2	108,767.5	44,230.7	10,324.2	3,482.1	56,397.8	78,443.1	33,026.5
	4/4	142,843.7	119,434.0	46,937.1	12,648.6	3,713.6	58,335.3	79,922.7	38,340.2
	2003. 1/4	125,370.1	101,714.4	43,810.6	8,156.9	4,429.9	56,290.1	77,221.3	31,937.3
성장률	1997	5.0	2.1	6.6	1.4	11.5	5.4	3.2	-2.2
	1998	-6.7	-9.1	-7.4	-8.6	0.6	-7.2	-10.1	-21.2
	1999	10.9	9.4	21.0	-9.1	10.4	11.9	9.4	3.7
	2000	9.3	3.6	15.9	-3.1	14.0	9.5	6.7	11.4
	2001	3.1	1.4	2.1	5.6	5.1	3.9	4.2	-1.8
	2002	6.3	4.9	6.3	3.2	13.2	8.8	6.2	4.8
	1998. 4/4	-5.9	-7.2	-4.2	-13.4	-1.6	-5.2	-7.9	-18.3
	1999. 1/4	5.8	7.0	10.0	-13.6	6.1	8.0	6.8	-4.6
	2/4	11.2	9.6	20.9	-6.9	8.6	12.0	9.5	4.2
	3/4	13.0	10.6	26.2	-8.4	10.0	13.4	10.5	6.7
	4/4	13.0	10.2	26.4	-8.7	17.2	14.2	10.8	7.2
	2000. 1/4	13.1	6.5	22.9	-7.0	19.2	12.4	10.2	22.8
	2/4	10.2	4.3	17.1	-3.7	15.2	10.7	8.3	13.2
	3/4	10.0	5.2	18.5	-1.7	13.2	9.3	5.5	10.9
	4/4	5.0	-0.6	6.9	-1.1	8.7	6.1	3.4	2.0
	2001. 1/4	3.8	0.6	4.6	1.9	10.0	3.6	1.7	-4.9
	2/4	3.0	1.4	2.5	1.4	2.8	3.9	4.0	-5.2
	3/4	2.1	0.6	-0.8	7.7	2.7	4.0	4.8	-2.5
	4/4	3.5	2.9	2.4	9.7	4.5	4.2	6.3	4.9
	2002. 1/4	6.2	7.7	4.2	8.6	13.7	8.1	8.4	6.6
	2/4	6.6	5.6	6.6	3.1	13.1	9.2	7.4	5.4
	3/4	5.8	2.7	5.5	-3.8	11.7	9.5	5.5	0.5
	4/4	6.8	4.1	8.8	6.3	14.0	8.6	3.8	6.8
	2003. 1/4	3.7	-1.8	5.2	8.8	7.6	2.1	1.2	4.8

주 : 1995년 불변가격.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 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2> 각 기관의 2003년 거시경제전망

2003년 전망 (이 전)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경제연구원	2002. 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5.8	3.0	-7.4	-
LG 경제연구원	2002. 9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5.6	3.1	-6.0	2.9
삼성경제연구소	2002. 10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 전망	5.8	3.6	19.1	3.0
현대경제연구원	2002. 9	최근 경제동향 및 2003년도 경제전망	5.7	3.5	0~9.0	2.9
산 업 연 구 원	2002. 11	2003년 국내경제전망	5.6	3.0	-	-
한국노동연구원	2003. 1	매월노동동향 1월호	-	-	-	2.9

2003년 전망 (이 전)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4	2003년 1/4분기 KDI 경제전망	4.2	3.8	15.0	3.4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3.5	4.0	13.0	-
LG 경제연구원	2003. 4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3.8	3.8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4	현 경기국면평가와 국내외 경제전망	4.0내외	3.9	-10.0	3.5
한 국 은 행	2003. 4	향후 경제전망	4.1	3.9	-1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6	매월노동동향 6월호	-	-	-	3.3

2003년 전망 (최 근)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7	2003년 2/4분기 KDI 경제전망	3.1	3.4	18.0	3.5
LG 경제연구원	2003. 6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3	3.2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6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4.0내외	3.7	-10.0	3.5
한 국 은 행	2003. 7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1	3.5	2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6	매월노동동향 6월호	-	-	-	3.3

<표 3> 대외거래

(단위 : 십억원, 백만달러)

	국민소득계정[1]				국제수지			
	수 출	상품수출	수 입	상품수입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1997	153,930.9	129,413.1	140,905.2	116,973.5	-8,166.7	-3,179.1	138,619.1	141,798.2
1998	175,640.5	149,968.1	109,798.1	88,004.2	40,364.9	41,626.8	132,121.6	90,494.8
1999	203,443.5	178,074.5	141,443.0	116,848.9	24,476.7	28,370.9	145,136.6	116,792.7
2000	245,132.6	218,952.5	169,715.7	141,443.4	12,241.2	16,871.6	175,947.7	159,076.1
2001	246,733.3	219,608.5	164,594.4	134,989.9	8,238.9	13,491.9	151,261.6	137,769.7
2002	283,418.0	257,114.2	191,512.9	157,844.9	6,092.1	14,179.8	162,553.7	148,373.9
1998. 4/4	46,876.2	40,111.9	30,949.4	24,727.7	8,901.1	9,855.6	33,612.6	23,757.0
1999. 1/4	45,394.0	39,219.6	31,991.9	26,153.6	6,058.1	6,770.2	31,467.8	24,697.6
2/4	50,978.1	44,925.3	35,095.9	28,993.5	6,145.4	7,901.9	35,619.2	27,717.3
3/4	51,070.4	44,711.9	34,729.3	28,860.3	6,596.6	6,922.6	36,429.2	29,506.6
4/4	56,001.0	49,217.7	39,625.9	32,841.5	5,676.6	6,776.2	41,647.4	34,871.2
2000. 1/4	57,606.3	51,449.7	42,099.3	35,417.6	1,617.9	2,551.1	41,575.5	39,024.2
2/4	61,274.3	54,552.3	42,306.3	35,319.6	2,925.8	4,593.0	44,065.8	39,472.8
3/4	62,252.8	55,678.8	42,499.8	35,167.1	4,222.9	5,443.4	45,411.8	39,968.4
4/4	62,999.2	57,271.7	42,810.3	35,539.1	3,474.6	4,284.1	44,894.6	40,610.5
2001. 1/4	62,795.8	55,922.7	42,224.0	35,382.2	2,683.4	3,221.7	40,622.8	37,401.1
2/4	61,652.6	54,518.4	39,145.6	32,037.8	3,781.6	5,085.3	38,634.7	33,549.4
3/4	59,504.0	52,660.7	40,028.4	32,345.6	1,240.5	2,979.7	36,227.1	33,247.4
4/4	62,780.9	56,506.7	43,196.4	35,224.3	533.4	2,205.2	35,777.0	33,571.8
2002. 1/4	64,334.0	58,044.2	44,961.2	36,908.7	1,592.0	3,119.0	36,029.1	32,910.1
2/4	69,542.9	62,867.0	46,489.2	38,413.0	1,600.1	4,369.5	40,573.5	36,204.0
3/4	71,573.4	64,701.1	48,247.4	39,614.8	929.4	2,826.0	40,913.0	38,087.0
4/4	77,967.7	71,501.9	51,815.1	42,908.4	1,970.6	3,865.3	45,038.1	41,172.8
2003. 1/4	75,443.1	69,594.9	53,049.0	43,935.2	-1,721.3p	1,226.1p	44,501.3p	43,275.2p
2001. 5					2,183.9	2,081.3	13,326.5	11,245.2
6					1062.7	1,711.5	13,120.1	11,408.6
7					501.4	807.9	11,616.5	10,808.6
8					-230.3	581.3	11,742.1	11,160.8
9					969.4	1,590.5	12,868.5	11,278.0
10					190.1	709.5	11,846.1	11,136.6
11					511.6	877.2	12,177.5	11,300.3
12					-168.3	618.5	11,753.4	11,134.9
2002. 1					260.2	661.8	11,669.7	11,007.9
2					362.7	608.2	10,843.1	10,234.9
3					969.1	1,849.0	13,516.3	11,667.3
4					-89.9	1,121.7	13,365.7	12,244.0
5					961.5	1,503.4	13,886.1	12,382.7
6					728.5	1,744.4	13,321.7	11,577.3
7					79.2	709.2	13,435.1	12,725.9
8					324.7	1,031.7	13,572.7	12,541.0
9					525.5	1,085.1	13,905.2	12,820.1
10					1,493.9	2,115.2	15,566.0	13,450.8
11					1,122.7	1,362.8	14,995.6	13,632.8
12					-646.0	387.3	14,476.5	14,089.2
2003. 1					-417.2	789.2	14,926.8	14,137.6
2					-110.6	500.3	14,021.3	13,521.0
3					-1,193.5	-63.4	15,553.2	15,616.6
4					-366.8	1,266.8	15,805.5	14,538.7
5					1,184.8p	1,686.3p	14,878.0p	13,191.7p

주 : p는 잠정치.
1) 1995년 불변가격.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4> 기업 및 산업활동

(단위 : 개소, 2000=100, %)

	어음부도율			산업활동(원계열)				
	부도업체	신설법인[1]	어음부도율	생 산	출 하	재 고[2]	가동률[3]	평균가동률
1996	11,589	19,264	0.14	70.4	70.6	105.2	103.0	80.8
1997	17,168	21,057	0.40	73.7	75.1	110.1	101.0	79.5
1998	22,828	20,095	0.38	68.9	68.6	91.3	86.8	68.1
1999	6,718	30,701	0.33	85.9	85.8	93.2	97.7	76.5
2000	6,693	41,460	0.26	100.0	100.0	104.6	100.0	78.6
2001	5,278	39,599	0.23	101.3	101.7	105.1	95.7	75.1
2002	4,244	38,972	0.06	108.7	109.1	105.4	97.9	76.9
2000. 3/4	1,573	9,482	0.28	100.5	100.5	98.3	100.0	80.2
4/4	1,936	8,726	0.37	103.9	102.9	104.6	101.3	77.4
2001. 1/4	1,525	9,703	0.32	97.0	97.5	111.1	93.8	76.2
2/4	1,335	10,143	0.23	101.7	102.5	108.2	98.4	85.2
3/4	1,147	10,339	0.20	100.8	101.0	105.4	95.3	75.2
4/4	1,271	9,414	0.17	105.7	105.8	105.1	95.3	73.8
2002. 1/4	980	10,983	0.08	103.6	104.8	101.8	94.8	77.1
2/4	977	10,063	0.06	109.3	109.8	102.9	100.6	76.7
3/4	1,077	8,722	0.06	106.1	105.9	102.6	95.7	76.7
4/4	1,190	9,204	0.06	115.7	115.9	105.4	100.6	77.2
2003. 1/4	1,191	9,349	0.09	109.7	109.6	113.4	95.4	77.4
2001. 6	442	3,603	0.21	101.2	102.1	108.2	97.4	75.3
7	378	3,537	0.24	98.0	97.5	108.9	93.7	74.3
8	396	3,361	0.25	99.4	99.9	106.7	93.3	74.9
9	373	3,441	0.11	104.9	105.5	105.4	99.0	76.5
10	414	2,917	0.23	104.2	104.1	105.6	96.0	74.7
11	409	3,233	0.13	108.2	108.9	104.9	98.5	74.9
12	447	3,264	0.15	104.7	104.4	105.1	91.4	71.9
2002. 1	384	4,013	0.06	106.2	105.5	107.9	96.9	76.9
2	285	3,213	0.09	93.9	96.2	104.0	84.7	76.4
3	331	3,757	0.11	110.8	112.7	101.8	102.8	78.0
4	311	3,623	0.08	111.4	112.1	102.6	102.9	78.1
5	317	3,647	0.04	112.8	113.7	101.5	104.1	77.0
6	349	2,793	0.04	103.7	103.5	102.9	94.7	75.1
7	369	3,118	0.06	107.1	105.4	104.4	97.1	76.9
8	357	2,889	0.05	106.2	105.7	105.2	95.8	76.8
9	351	2,715	0.05	104.9	106.7	102.6	94.3	76.4
10	400	3,461	0.05	116.6	116.9	104.0	104.1	77.4
11	372	2,928	0.04	116.0	116.6	103.7	101.2	77.1
12	418	2,815	0.07	114.6	114.1	105.4	96.4	77.0
2003. 1	411	3,381	0.04	109.9	109.1	110.2	95.0	77.5
2	384	2,968	0.08	103.5	103.7	112.1	90.0	77.9
3	396	3,000	0.14	116.3	116.4	113.0	101.5	76.9
4	507	3,030	0.08	113.5	113.5	114.5	101.1	76.7
5	428	2,684	0.08	110.7	111.2	114.2	97.6	73.9
6	413	2,735	0.10	-	-	-	-	-

주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단, 1997년 이전은 울산을 제외한 7대 도시 기준.
2) 재고의 연평균 지수는 연말 기준.
3) 제조업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통계청, 산업활동 DB.

<표 5> 경기종합지수(원계열)

(단위 : 2000＝100)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00. 9	100.6	102.1	101.5	103.0
10	100.3	101.9	102.4	102.4
11	98.2	101.2	103.5	101.3
12	97.0	100.9	103.7	100.5
2001. 1	96.7	100.8	104.2	101.1
2	97.4	101.2	104.0	100.0
3	98.0	101.4	104.5	99.8
4	98.0	101.3	104.4	99.3
5	98.4	101.4	105.0	98.9
6	98.9	101.5	105.5	98.6
7	99.0	101.5	105.9	98.2
8	99.0	102.0	106.2	98.3
9	99.3	103.0	106.7	98.8
10	100.3	104.1	107.0	99.5
11	101.6	104.6	107.2	99.6
12	102.6	104.5	108.0	99.0
2002. 1	104.5	105.1	108.6	99.2
2	106.4	105.9	109.3	99.5
3	108.8	107.1	109.3	100.3
4	109.9	107.7	109.9	100.4
5	110.0	107.9	110.5	100.2
6	109.2	107.8	110.9	99.7
7	108.6	108.2	111.7	99.6
8	108.2	108.7	112.5	99.7
9	108.6	109.5	113.0	100.0
10	108.8	110.0	113.1	100.0
11	109.4	110.6	113.2	100.2
12	109.8	111.5	113.4	100.6
2003. 1	109.7	112.4	114.7	100.9
2	109.1	112.4	115.2	100.5
3	108.1	112.3	116.2	100.0
4	107.3	111.8	116.1	99.1
5p	107.0	111.5	116.7	98.4

주 : 1) p는 잠정치.

2) 선행종합지수 - 입이직자 비율, 재고순환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 자본재수입액, 건축허가면적, 종합주가지수, 총유동성, 순상품교역조건 포함.

3) 동행종합지수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포함.

4) 후행종합지수 - 이직자수,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 유통수익률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표 6> 주요 가격지표

(단위 : %, 1995=100, 2000=100, 원/달러)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물가지수			대미환율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기준환율	평균환율
1997	3.2	89.2	90.2	84.8	1,415.2	951.1
1998	5.0	100.1	97.0	94.3	1,207.8	1,398.9
1999	-2.0	98.0	97.8	96.5	1,145.4	1,189.5
2000	-1.1	100.0	100.0	100.0	1,259.7	1,130.6
2001	2.5	99.5	104.1	105.1	1,326.1	1,290.8
2002	1.7	99.2	106.9	107.7	1,200.4	1,251.2
1999. 1/4	-5.6	97.3	97.4	95.4	1,224.7	1,197.6
2/4	-3.5	97.5	97.6	96.1	1,155.9	1,191.9
3/4	-0.4	97.6	97.6	96.3	1,218.7	1,194.3
4/4	1.2	99.5	98.6	98.1	1,145.4	1,174.0
2000. 1/4	-0.1	100.3	99.3	98.9	1,108.3	1,125.7
2/4	-0.6	99.6	99.1	98.6	1,114.8	1,116.2
3/4	-2.3	99.9	100.5	100.7	1,115.0	1,115.3
4/4	-1.4	100.1	101.1	101.8	1,259.7	1,164.3
2001. 1/4	2.3	100.4	102.9	103.9	1,328.0	1,271.2
2/4	4.3	100.2	104.1	105.3	1,300.7	1,305.9
3/4	2.5	99.4	104.7	106.0	1,309.1	1,293.9
4/4	1.0	98.1	104.5	105.3	1,326.1	1,292.1
2002. 1/4	1.1	98.3	105.5	106.2	1,326.4	1,319.6
2/4	1.4	99.7	106.9	108.0	1,201.8	1,269.5
3/4	0.9	99.2	107.4	108.2	1,225.5	1,196.6
4/4	3.1	99.7	107.9	108.5	-	1,220.6
2003. 1/4	2.3	101.2	109.8	111.1	-	1,201.0
	-	101.0	110.5	111.7	-	1,208.9
2001. 7		99.8	104.5	105.7	1,301.4	1,302.6
8		99.3	104.9	106.3	1,283.8	1,285.4
9		99.1	104.8	105.9	1,309.1	1,293.7
10		98.6	104.8	106.0	1,296.1	1,302.6
11		98.2	104.2	104.9	1,274.0	1,284.0
12		97.6	104.4	105.0	1,326.1	1,289.7
2002. 1		97.8	105.0	105.6	1,314.8	1,317.6
2		98.3	105.5	106.1	1,327.7	1,318.7
3		98.8	106.1	107.0	1,326.4	1,322.5
4		99.6	106.7	107.7	1,292.2	1,318.9
5		100.0	107.1	108.3	1,233.3	1,266.1
6		99.4	107.0	107.9	1,201.8	1,223.5
7		99.1	106.7	107.2	1,197.0	1,185.1
8		99.2	107.4	108.2	1,200.5	1,196.3
9		99.4	108.0	109.1	1,225.5	1,208.5
10		99.6	107.7	108.3	1,233.4	1,241.1
11		99.8	107.8	108.3	1,208.0	1,211.9
12		99.8	108.3	108.9	1,200.4	1,208.9
2003. 1		100.5	109.0	109.8	1,170.5	1,179.3
2		101.1	109.6	110.6	1,186.8	1,191.2
3		102.1	110.9	112.9	1,252.9	1,232.4
4		101.5	110.7	112.3	1,213.1	1,232.8
5		101.0	110.5	111.7	1,206.6	1,199.8
6		100.5	110.2	111.2	1,193.1	1,194.0

주 : 1)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2000=100.
2) 2003. 7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이 2000=100으로 변경.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경제통계 DB.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표 7>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단위 : 2000＝100, 1995=100)

	수 출			수 입			순상품 교역 조건	소득교 역조건	교역조건 (국민소득 계정)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1998	134.1	74.0	102.0	141.4	65.1	87.4	116.7	86.4	89.0
1999	108.8	82.9	99.6	124.3	84.0	87.3	114.1	94.6	85.7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0
2001	96.2	100.7	86.9	103.5	97.7	91.0	95.5	96.2	74.3
2002	89.5	114.1	83.1	97.1	109.7	87.5	95.0	108.4	70.5
2000.1/4	100.9	90.8	100.7	98.9	97.5	99.5	101.2	91.9	75.9
2/4	98.8	101.0	99.9	98.3	101.9	97.4	102.6	103.6	74.9
3/4	101.6	102.3	101.4	99.8	100.2	100.1	101.3	103.6	74.7
4/4	98.7	106.6	97.5	102.9	100.2	103.2	94.5	100.7	71.8
2001.1/4	101.6	97.8	93.3	106.6	99.9	95.6	97.6	95.5	71.7
2/4	99.6	100.4	88.9	107.9	94.0	92.8	95.8	96.2	70.3
3/4	93.8	104.4	84.3	103.4	95.0	90.8	92.8	93.2	69.7
4/4	89.8	105.0	80.9	96.3	102.5	84.6	95.6	100.4	69.8
2002.1/4	92.8	100.6	82.9	97.5	105.6	81.1	102.2	102.8	73.1
2/4	91.0	111.8	83.9	98.8	107.6	87.4	96.0	107.3	72.3
3/4	86.4	117.0	82.7	95.1	108.2	90.4	91.5	107.1	69.1
4/4	87.8	127.8	82.6	97.1	117.5	91.1	90.7	115.9	-
2003.1/4	89.1	117.3	84.5	100.9	114.2	97.4	86.8	101.8	-
2/4	86.9	-	-	97.2	-	-	-	-	-
2001. 5	99.4	101.9	89.7	107.8	94.6	92.4	97.1	98.9	
6	96.8	104.1	86.9	106.7	96.2	92.7	93.7	97.5	
7	94.8	96.0	84.6	104.3	91.2	92.2	91.8	88.1	
8	93.0	99.3	83.9	103.2	94.2	90.3	92.9	92.2	
9	93.5	106.1	84.3	102.6	99.3	90.1	93.6	99.3	
10	92.0	102.5	82.1	99.6	97.7	89.2	92.0	94.3	
11	89.0	109.7	80.3	94.9	103.6	84.5	95.0	104.2	
12	88.4	102.8	80.4	94.4	105.0	81.4	98.8	101.6	
2002. 1	90.9	98.8	82.1	95.6	107.0	80.5	102.0	100.8	
2	92.3	92.8	82.1	96.4	98.8	80.3	102.2	94.8	
3	95.1	109.9	84.8	100.4	110.8	82.6	102.7	112.9	
4	95.2	110.4	85.1	102.1	110.7	85.9	99.1	109.4	
5	91.0	115.2	84.9	98.9	109.8	87.7	96.8	111.5	
6	87.0	109.7	81.4	95.4	102.3	88.6	91.9	100.8	
7	85.3	115.1	83.3	93.6	109.4	89.4	93.2	107.2	
8	86.3	118.4	82.2	94.8	107.3	90.4	90.9	107.6	
9	87.5	117.4	82.5	97.0	107.9	91.4	90.3	106.0	
10	89.2	132.4	82.1	99.2	114.7	91.2	90.0	119.2	
11	86.8	129.0	82.0	95.0	116.8	90.9	90.2	116.4	
12	87.4	122.0	83.6	97.1	121.0	91.2	91.7	111.9	
2003. 1	86.9	115.4	84.7	98.0	115.8	94.7	89.4	103.2	
2	89.0	109.7	84.8	101.4	107.1	98.4	86.2	94.6	
3	91.4	126.1	84.4	103.2	119.5	99.3	85.0	107.2	
4	88.4	129.1	83.9	98.5	116.5	96.2	87.2	112.6	
5	86.3	-	-	96.4	-	-	-	-	
6	86.2	-	-	96.6	-	-	-	-	

주 : 교역조건은 1995=100, 수출금액지수, 수입금액지수는 2000년 이전은 1995=100 2000년 이후는 2000=100.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입물량지수, 수입단가지수,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은 2000=1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한국은행.『국민소득동향』.

<표 8> 장래추계인구

(단위 : 천명, %)

장래추계 인 구	전 체	남 자	여 자	인구증가율	연령별			65세이상 인구비중	노령화 지 수
					0~14세	15~64 세	65세 이상		
1963	27,262	13,708	13,554	2.65	11,850	14,595	816	2.99	6.89
1970	32,241	16,309	15,932	1.99	13,709	17,540	991	3.07	7.23
1975	35,281	17,766	17,515	1.61	13,614	20,449	1,217	3.45	8.94
1980	38,124	19,236	18,888	1.57	12,951	23,717	1,456	3.82	11.24
1981	38,723	19,536	19,188	1.56	12,925	24,300	1,498	3.87	11.59
1982	39,326	19,837	19,489	1.49	12,887	24,880	1,559	3.96	12.10
1983	39,910	20,129	19,781	1.24	12,801	25,495	1,615	4.05	12.61
1984	40,406	20,375	20,031	0.99	12,592	26,141	1,674	4.14	13.29
1985	40,806	20,576	20,230	1.00	12,305	26,759	1,742	4.27	14.16
1986	41,214	20,772	20,442	0.99	12,030	27,383	1,801	4.37	14.97
1987	41,622	20,960	20,662	0.98	11,746	27,999	1,876	4.51	15.97
1988	42,031	21,155	20,876	0.99	11,487	28,582	1,962	4.67	17.08
1989	42,449	21,357	21,092	0.99	11,261	29,135	2,053	4.84	18.23
1990	42,869	21,568	21,301	0.99	10,974	29,701	2,195	5.12	20.00
1991	43,296	21,784	21,512	1.04	10,859	30,171	2,266	5.23	20.87
1992	43,748	22,014	21,734	1.02	10,791	30,611	2,346	5.36	21.74
1993	44,195	22,243	21,952	1.01	10,735	31,023	2,437	5.51	22.70
1994	44,642	22,472	22,169	1.01	10,653	31,446	2,542	5.69	23.87
1995	45,093	22,705	22,388	0.96	10,537	31,900	2,657	5.89	25.21
1996	45,525	22,925	22,600	0.94	10,403	32,327	2,795	6.14	26.87
1997	45,953	23,148	22,805	0.72	10,233	32,791	2,929	6.37	28.63
1998	46,287	23,296	22,991	0.71	10,092	33,126	3,069	6.63	30.41
1999	46,617	23,458	23,159	0.84	9,973	33,420	3,224	6.92	32.32
2000	47,008	23,667	23,341	0.71	9,911	33,702	3,395	7.22	34.25
2001	47,343	23,835	23,508	0.63	9,860	33,904	3,579	7.56	36.30
2002	47,640	23,984	23,656	0.06	9,793	34,075	3,772	7.92	38.50
2010	49,594	24,932	24,662	0.38	8,552	35,741	5,302	10.69	62.00
2020	50,650	25,377	25,273	0.04	7,034	35,948	7,667	15.14	109.00
2050	44,337	21,752	22,585	-1.04	4,650	24,417	15,271	34.44	328.43

주 : 노령화지수(Aged-child ratio)=(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KOSIS.

<표 9>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 : 천명, 천원, 시간, %)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임금 총액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 (초과)	노동 생산성
1997	21,782	62.5	21,214	568	2.6	1,463	203.0	23.4	128.5
1998	21,428	60.6	19,938	1,490	7.0	1,427	199.2	20.0	146.0
1999	21,666	60.6	20,291	1,374	6.3	1,544	206.6	22.6	91.6
2000	22,069	61.0	21,156	913	4.1	1,668	204.8	23.4	100.0
2001	22,417	61.3	21,572	845	3.8	1,752	202.4	20.4	99.3
2002	22,877	61.9	22,169	708	3.1	1,948	199.6	18.0	107.5
1999. 1/4	20,894	58.7	19,118	1,776	8.5	1,467	197.6	21.2	87.0
2/4	21,807	61.1	20,351	1,457	6.7	1,479	208.7	23.0	89.1
3/4	21,941	61.3	20,706	1,235	5.6	1,583	206.0	22.7	91.3
4/4	22,020	61.3	20,991	1,029	4.7	1,644	214.0	23.5	98.1
2000. 1/4	21,494	59.7	20,380	1,114	5.2	1,594	205.1	23.1	98.0
2/4	22,197	61.4	21,337	861	3.9	1,610	203.9	24.1	100.7
3/4	22,319	61.6	21,486	833	3.7	1,721	201.7	23.2	101.3
4/4	22,265	61.2	21,420	845	3.8	1,744	208.4	23.3	99.9
2001. 1/4	21,687	59.5	20,627	1,060	4.9	1,718	198.8	21.4	96.5
2/4	22,653	62.0	21,839	814	3.6	1,675	203.7	20.4	99.1
3/4	22,655	61.8	21,900	755	3.3	1,793	204.2	20.0	98.7
4/4	22,674	61.7	21,923	751	3.3	1,825	203.2	19.8	102.8
2002. 1/4	22,339	60.7	21,511	829	3.7	1,862	193.6	17.3	105.7
2/4	23,112	62.6	22,423	689	3.0	1,860	202.2	18.3	107.0
3/4	23,067	62.3	22,416	652	2.8	1,994	197.6	18.1	106.9
4/4	22,989	62.0	22,326	663	2.9	2,076	205.0	18.5	110.2
2003. 1/4	22,439	60.3	21,633	806	3.6	2,102	196.0	17.3	-
2/4	23,055	61.8	22,303	751	3.3	-	-	-	-
2001. 6	22,698	62.1	21,934	765	3.4	1,825	204.5	20.2	
7	22,751	62.2	21,972	780	3.4	1,738	204.4	20.3	
8	22,515	61.5	21,738	777	3.5	1,700	204.5	19.8	
9	22,698	61.9	21,991	707	3.1	1,942	203.6	19.8	
10	22,807	62.2	22,082	725	3.2	1,670	197.1	20.1	
11	22,800	62.1	22,059	740	3.2	1,590	210.2	19.8	
12	22,416	61.0	21,628	788	3.5	2,215	202.4	19.3	
2002. 1	22,189	60.3	21,342	847	3.8	1,763	206.3	17.4	
2	22,256	60.4	21,420	836	3.8	2,017	172.6	16.0	
3	22,573	61.2	21,770	803	3.6	1,805	201.7	18.5	
4	23,035	62.4	22,301	734	3.2	1,862	203.2	18.5	
5	23,144	62.7	22,455	689	3.0	1,712	210.1	18.3	
6	23,157	62.7	22,515	643	2.8	2,006	193.3	18.1	
7	23,193	62.7	22,534	659	2.8	1,939	203.4	18.4	
8	22,914	61.9	22,223	691	3.0	1,901	199.9	18.2	
9	23,095	62.4	22,490	605	2.6	2,141	189.4	17.6	
10	23,177	62.5	22,538	639	2.8	1,884	207.7	18.9	
11	23,037	62.1	22,389	648	2.8	1,778	207.0	18.2	
12	22,754	61.3	22,052	702	3.1	2,563	200.4	18.5	
2003. 1	22,352	60.1	21,562	789	3.5	2,384	200.0	17.6	
2	22,320	60.0	21,498	822	3.7	1,962	187.2	16.4	
3	22,644	60.8	21,837	807	3.6	1,962	200.8	17.9	
4	22,912	61.5	22,156	756	3.3	2,012	202.7	17.5	
5	23,114	62.0	22,370	744	3.2	-	-	-	
6	23,138	62.0	22,383	755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10> 생산가능인구(성별 · 연령대별)

(단위 : 천명)

	전 체	남 자				여 자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34,851	5,638	8,424	1,730	1,095	6,086	8,111	1,934	1,834
1998	35,346	5,604	8,588	1,776	1,155	6,046	8,292	1,970	1,915
1999	35,757	5,504	8,773	1,806	1,224	5,957	8,507	1,986	2,001
2000	36,186	5,409	8,980	1,832	1,300	5,833	8,744	1,991	2,096
2001	36,579	5,270	9,199	1,866	1,386	5,682	8,973	2,005	2,199
2002	36,963	5,128	9,403	1,913	1,478	5,523	9,173	2,040	2,305
1999. 1/4	35,597	5,544	8,693	1,796	1,197	5,996	8,422	1,982	1,967
2/4	35,697	5,512	8,744	1,803	1,214	5,972	8,476	1,985	1,989
3/4	35,814	5,494	8,799	1,810	1,232	5,946	8,534	1,988	2,012
4/4	35,918	5,464	8,856	1,816	1,251	5,915	8,594	1,988	2,035
2000. 1/4	36,011	5,440	8,893	1,822	1,270	5,884	8,654	1,989	2,059
2/4	36,125	5,414	8,952	1,828	1,290	5,853	8,716	1,989	2,083
3/4	36,252	5,403	9,011	1,835	1,310	5,818	8,775	1,991	2,108
4/4	36,358	5,379	9,066	1,844	1,331	5,779	8,832	1,994	2,133
2001. 1/4	36,434	5,325	9,118	1,852	1,352	5,741	8,890	1,997	2,159
2/4	36,527	5,282	9,173	1,860	1,374	5,703	8,949	2,000	2,185
3/4	36,633	5,217	9,227	1,870	1,397	5,663	9,003	2,006	2,212
4/4	36,723	5,255	9,278	1,882	1,419	5,622	9,051	2,016	2,238
2002. 1/4	36,824	5,187	9,329	1,894	1,442	5,582	9,102	2,025	2,264
2/4	36,919	5,146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3/4	37,012	5,109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4/4	37,097	5,070	9,473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2003. 1/4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2/4	37,297	5,009	9,565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2001. 6	36,564	5,273	9,192	1,863	1,382	5,691	8,969	2,001	2,194
7	36,602	5,266	9,210	1,866	1,389	5,677	8,987	2,003	2,203
8	36,635	5,257	9,227	1,870	1,397	5,663	9,003	2,006	2,212
9	36,661	5,241	9,223	1,874	1,404	5,649	9,019	2,009	2,220
10	36,691	5,229	9,260	1,878	1,412	5,636	9,035	2,012	2,229
11	36,725	5,219	9,277	1,882	1,419	5,622	9,052	2,016	2,238
12	36,753	5,203	9,294	1,886	1,427	5,609	9,068	2,019	2,247
2002. 1	36,791	5,198	9,312	1,890	1,435	5,595	9,085	2,022	2,255
2	36,826	5,188	9,329	1,894	1,442	5,582	9,101	2,025	2,264
3	36,856	5,174	9,346	1,898	1,450	5,568	9,118	2,028	2,273
4	36,887	5,160	9,363	1,902	1,458	5,555	9,135	2,031	2,282
5	36,917	5,145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6	36,952	5,133	9,398	1,910	1,474	5,529	9,169	2,038	2,300
7	36,985	5,123	9,414	1,914	1,482	5,517	9,185	2,041	2,309
8	37,013	5,110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9	37,038	5,094	9,443	1,924	1,497	5,491	9,213	2,048	2,327
10	37,072	5,086	9,458	1,928	1,505	5,479	9,227	2,052	2,336
11	37,094	5,068	9,472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12	37,124	5,055	9,487	1,938	1,521	5,454	9,256	2,059	2,354
2003. 1	37,161	5,048	9,503	1,942	1,529	5,442	9,270	2,063	2,363
2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3	37,226	5,026	9,534	1,952	1,546	5,418	9,299	2,070	2,381
4	37,262	5,018	9,550	1,956	1,554	5,406	9,314	2,074	2,390
5	37,300	5,011	9,566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6	37,330	4,997	9,581	1,966	1,571	5,382	9,343	2,082	2,4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1> 경제활동인구(성별 · 연령대별)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12,843	2,948	8,054	1,381	460	8,938	2,723	4,826	981	408
1998	12,852	2,868	8,176	1,342	465	8,576	2,520	4,727	950	380
1999	12,881	2,778	8,270	1,335	497	8,786	2,487	4,892	977	429
2000	13,000	2,734	8,435	1,302	528	9,069	2,546	5,077	967	478
2001	13,142	2,637	8,595	1,339	571	9,275	2,566	5,240	966	504
2002	13,411	2,577	8,793	1,410	631	9,466	2,563	5,393	979	530
1999.1/4	12,589	2,782	8,111	1,277	421	8,305	2,477	4,667	852	309
2/4	12,918	2,770	8,270	1,362	515	8,893	2,453	4,959	1,025	456
3/4	13,000	2,801	8,311	1,361	527	8,941	2,489	4,931	1,038	484
4/4	13,016	2,760	8,388	1,341	527	9,004	2,528	5,013	994	469
2000.1/4	12,786	2,775	8,283	1,255	473	8,708	2,573	4,879	883	373
2/4	13,028	2,705	8,454	1,316	553	9,170	2,524	5,113	1,017	516
3/4	13,093	2,738	8,480	1,322	554	9,226	2,550	5,116	1,018	542
4/4	13,093	2,719	8,525	1,317	532	9,172	2,538	5,201	952	481
2001.1/4	12,821	2,666	8,414	1,251	490	8,866	2,582	5,052	847	385
2/4	13,224	2,649	8,619	1,367	589	9,429	2,561	5,317	1,009	542
3/4	13,261	2,642	8,639	1,372	608	9,394	2,555	5,261	1,017	562
4/4	13,264	2,592	8,707	1,368	598	9,410	2,565	5,331	989	526
2002.1/4	13,160	2,641	8,637	1,333	549	9,179	2,600	5,243	901	436
2/4	13,473	2,589	8,812	1,418	655	9,639	2,570	5,475	1,023	571
3/4	13,506	2,561	8,830	1,445	669	9,562	2,550	5,424	1,013	573
4/4	13,507	2,516	8,893	1,445	652	9,483	2,533	5,433	979	537
2003.1/4	13,339	2,514	8,893	1,366	567	9,100	2,550	5,262	859	428
2/4	13,549	2,451	9,019	1,442	636	9,506	2,499	5,469	992	546
2001. 6	13,260	2,653	8,635	1,375	597	9,438	2,549	5,313	1,018	558
7	13,324	2,723	8,628	1,374	598	9,427	2,610	5,265	1,001	552
8	13,218	2,632	8,619	1,363	603	9,297	2,530	5,199	1,012	556
9	13,240	2,570	8,670	1,379	622	9,458	2,524	5,320	1,037	576
10	13,295	2,577	8,708	1,386	623	9,512	2,505	5,373	1,053	582
11	13,307	2,594	8,726	1,377	610	9,493	2,581	5,361	1,004	547
12	13,191	2,604	8,686	1,339	561	9,226	2,608	5,258	911	448
2002. 1	13,112	2,681	8,604	1,304	523	9,077	2,630	5,173	864	410
2	13,131	2,663	8,620	1,314	534	9,125	2,601	5,212	890	422
3	13,238	2,579	8,688	1,382	590	9,335	2,569	5,342	948	475
4	13,448	2,611	8,788	1,403	646	9,586	2,580	5,451	1,007	549
5	13,473	2,586	8,816	1,414	658	9,671	2,589	5,476	1,028	578
6	13,497	2,569	8,831	1,435	663	9,660	2,542	5,497	1,036	586
7	13,587	2,641	8,831	1,442	673	9,606	2,604	5,416	1,010	576
8	13,444	2,551	8,798	1,432	662	9,470	2,541	5,375	997	557
9	13,486	2,492	8,861	1,463	670	9,610	2,506	5,480	1,032	592
10	13,537	2,492	8,894	1,473	678	9,640	2,509	5,504	1,032	595
11	13,527	2,515	8,899	1,450	663	9,510	2,528	5,438	996	548
12	13,456	2,543	8,886	1,412	616	9,298	2,562	5,356	911	469
2003. 1	13,302	2,539	8,863	1,347	552	9,050	2,571	5,225	834	420
2	13,311	2,528	8,874	1,352	558	9,009	2,569	5,203	829	407
3	13,403	2,474	8,941	1,398	590	9,241	2,511	5,358	914	458
4	13,500	2,462	8,988	1,432	617	9,413	2,485	5,433	978	517
5	13,571	2,453	9,030	1,445	643	9,542	2,489	5,494	1,003	556
6	13,575	2,439	9,039	1,447	649	9,563	2,523	5,478	996	5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2> 경제활동참가율(성별 · 연령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76.1	52.3	95.6	79.8	42.0	49.8	44.7	59.5	50.7	22.2
1998	75.1	51.2	95.2	75.6	40.3	47.1	41.7	57.0	48.2	19.8
1999	74.4	50.5	94.3	73.9	40.6	47.6	41.7	50.5	49.2	21.4
2000	74.2	50.5	93.9	71.1	40.6	48.6	43.6	58.1	48.6	22.8
2001	74.2	50.0	93.4	71.8	41.2	49.2	45.2	58.4	48.2	22.9
2002	74.8	50.3	93.5	73.7	42.7	49.7	46.4	58.8	48.0	23.0
1999.1/4	73.1	50.2	93.3	75.5	35.2	45.2	41.3	55.4	43.0	15.7
2/4	74.8	50.3	94.6	70.8	42.4	48.3	41.1	58.5	52.3	22.9
3/4	75.0	51.0	94.5	75.2	42.8	48.4	41.9	57.8	52.2	24.1
4/4	74.9	50.5	94.7	73.8	42.1	48.6	42.7	58.3	50.0	23.0
2000.1/4	73.4	51.0	93.1	68.9	37.2	46.9	43.7	56.4	44.4	18.1
2/4	74.5	50.0	94.4	72.0	42.9	49.2	43.1	58.7	51.1	24.8
3/4	74.6	50.7	94.1	72.0	42.3	49.4	43.8	58.3	51.1	25.7
4/4	74.3	50.5	94.0	71.4	40.0	48.9	43.9	58.9	47.7	22.6
2001.1/4	72.6	50.1	92.3	67.5	36.2	47.2	45.0	56.8	42.4	17.8
2/4	74.8	50.2	94.0	73.5	42.9	50.1	44.9	59.4	50.5	24.8
3/4	74.7	50.3	93.6	73.3	43.5	49.7	45.1	58.4	50.7	25.4
4/4	74.5	49.7	93.9	72.7	42.1	49.7	45.6	58.9	49.1	23.5
2002.1/4	73.7	50.9	92.6	70.4	38.1	48.4	46.6	57.6	44.5	19.3
2/4	75.3	50.3	93.9	74.4	44.7	50.7	46.4	59.8	50.3	24.9
3/4	75.3	50.1	93.6	75.3	44.9	50.2	46.3	59.0	49.5	24.8
4/4	75.1	49.6	93.9	74.8	43.1	49.6	46.3	58.8	47.6	22.9
2003.1/4	73.9	49.9	93.4	70.2	36.9	47.5	47.0	56.7	41.6	18.0
2/4	74.9	48.9	94.3	73.5	40.7	49.5	46.3	58.6	47.7	22.8
2001. 6	75.2	50.3	93.9	73.8	43.2	50.1	44.8	59.2	50.9	25.4
7	75.1	51.7	93.7	73.6	43.1	50.0	46.0	58.6	50.0	25.1
8	74.5	50.1	93.4	72.9	43.2	49.2	44.7	57.7	50.4	25.1
9	74.3	49.0	93.8	73.6	44.3	50.0	44.7	69.0	51.6	25.9
10	74.8	49.3	94.0	73.8	44.1	50.3	44.4	59.5	52.3	26.1
11	74.8	49.7	94.1	73.2	43.0	50.2	45.9	59.2	49.8	24.4
12	74.1	50.0	93.5	71.0	39.3	48.7	46.5	58.0	45.1	19.9
2002. 1	73.5	51.6	92.4	69.0	36.4	47.9	47.0	56.9	42.7	18.2
2	73.6	51.3	92.4	69.4	37.0	48.1	46.6	57.3	44.0	18.6
3	74.1	49.8	93.0	72.8	40.7	49.2	46.1	58.6	46.7	20.9
4	75.2	50.6	93.9	73.8	44.3	50.4	46.4	59.7	49.6	24.1
5	75.3	50.3	94.0	74.2	44.9	50.8	46.7	59.8	50.5	25.2
6	75.3	50.0	94.0	75.1	45.0	50.7	46.0	60.0	50.8	25.5
7	75.8	51.6	93.8	75.3	45.4	50.4	47.2	59.0	49.5	24.9
8	74.9	49.9	93.3	74.6	44.5	49.7	46.2	58.4	48.8	24.0
9	75.1	48.9	93.8	76.0	44.8	50.4	45.6	59.5	50.4	25.4
10	75.3	49.0	94.0	76.4	45.0	50.5	45.8	59.7	50.3	25.5
11	75.2	49.6	94.0	75.0	43.8	49.8	46.2	58.8	48.4	23.4
12	74.8	50.3	93.7	72.9	40.5	48.6	47.0	57.9	44.2	19.9
2003. 1	73.8	50.3	93.3	69.4	36.1	47.3	47.2	56.4	40.4	17.8
2	73.8	50.2	93.2	69.4	36.3	47.0	47.3	56.0	40.1	17.2
3	74.2	49.2	93.8	71.6	38.2	48.2	46.3	57.6	44.2	19.2
4	74.7	49.1	94.1	73.2	39.7	49.1	46.0	58.3	47.2	21.6
5	75.0	49.0	94.4	73.7	41.2	49.7	46.1	58.9	48.3	23.2
6	74.9	48.8	94.3	73.6	41.3	49.8	46.9	58.6	47.8	2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3> 경제활동참가율(성별 · 교육수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60.6	91.7	39.8	92.7	44.7	55.4	31.7	63.9
1998	57.6	89.8	35.0	91.2	42.1	51.9	27.9	59.8
1999	57.4	88.8	39.7	89.5	42.9	51.8	31.1	59.6
2000	57.4	88.0	42.3	88.6	43.6	52.7	32.9	60.7
2001	57.0	87.8	42.6	89.0	43.4	53.9	34.0	61.4
2002	57.3	88.5	44.1	89.5	43.1	55.0	33.9	62.0
1999. 1/4	54.8	86.8	40.0	89.5	38.6	50.3	33.7	59.3
2/4	58.7	89.4	36.3	89.4	44.5	52.4	26.1	59.6
3/4	58.2	89.4	40.6	89.6	44.6	51.6	32.0	59.7
4/4	57.6	89.6	42.0	89.7	43.9	53.1	32.8	59.7
2000. 1/4	55.5	86.7	43.4	88.6	40.8	51.4	36.5	59.2
2/4	58.9	88.7	38.5	88.3	45.5	53.0	27.4	60.8
3/4	58.3	88.3	43.5	88.3	45.1	52.7	33.3	61.1
4/4	56.8	88.4	43.7	88.3	43.2	53.8	34.5	61.6
2001. 1/4	54.2	85.8	43.4	88.4	39.8	52.2	37.1	61.3
2/4	59.0	88.4	39.9	89.1	45.3	54.7	29.3	61.7
3/4	57.9	88.4	43.8	89.0	44.7	53.8	35.3	61.0
4/4	56.8	88.6	43.6	89.6	43.6	54.9	34.5	61.6
2002. 1/4	55.0	87.0	46.4	89.1	40.8	53.7	38.8	61.3
2/4	58.9	89.2	41.8	89.4	45.0	55.8	31.2	62.5
3/4	58.1	89.0	44.3	89.4	44.2	55.2	33.7	61.8
4/4	57.2	88.9	43.9	90.2	42.5	55.5	32.2	62.4
2003. 1/4	53.7	86.8	40.9	89.9	37.7	54.2	33.3	61.5
2/4	56.8	88.3	37.2	89.9	41.9	55.6	28.0	62.0
2001. 6	59.0	88.5	41.1	89.2	45.3	54.7	29.8	61.5
7	58.3	88.5	46.5	88.9	44.5	54.0	38.0	61.1
8	57.6	88.2	43.5	88.8	44.4	52.9	36.3	60.3
9	57.7	88.6	41.2	89.2	45.2	54.4	32.2	61.3
10	57.6	88.8	42.3	89.6	45.5	54.9	31.9	61.4
11	57.2	88.9	43.3	89.6	44.4	55.2	34.4	61.8
12	55.4	88.1	45.0	89.7	41.1	54.7	37.4	61.7
2002. 1	53.2	87.5	49.5	88.5	39.5	53.7	42.6	60.8
2	54.2	85.7	49.4	89.1	40.3	52.9	42.1	60.8
3	57.6	87.8	40.6	88.6	42.5	54.4	31.8	62.2
4	59.0	88.9	41.7	89.3	44.5	55.5	31.6	62.6
5	59.0	88.0	42.2	89.5	45.2	55.7	32.5	62.5
6	58.8	89.6	41.5	89.5	45.2	56.2	29.6	62.4
7	58.5	89.4	47.3	89.3	44.4	55.2	35.8	61.9
8	57.6	88.8	43.8	89.3	43.7	54.5	34.1	61.3
9	58.2	89.0	41.7	89.7	44.5	55.7	31.2	62.1
10	58.3	89.1	42.2	90.2	44.5	55.9	30.8	62.4
11	57.5	89.1	43.6	90.1	42.9	55.5	32.1	62.4
12	55.7	88.6	45.9	90.2	40.2	55.2	33.8	62.4
2003. 1	52.2	87.5	43.8	90.1	36.9	54.3	37.5	61.3
2	53.5	85.3	43.4	89.7	36.8	53.2	35.7	61.2
3	55.5	87.8	35.6	89.8	39.3	55.0	26.8	62.0
4	56.5	88.2	36.2	89.8	41.4	55.4	26.3	61.6
5	57.0	88.6	37.2	89.8	42.3	55.8	27.3	62.2
6	56.9	88.3	38.1	90.0	42.1	55.6	30.5	62.2

주 : 1) (초)대 재학 · 중퇴 · 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1. 1/4	1,709	17	4,259	61	1,416	3,849	1,922	1,090	202	765
2/4	2,373	18	4,279	62	1,603	3,900	1,937	1,102	209	772
3/4	2,379	19	4,228	56	1,642	3,958	1,955	1,124	207	752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2001. 6	2,422	18	4,249	60	1,640	3,910	1,935	1,112	209	754
7	2,377	19	4,244	56	1,637	3,964	1,985	1,122	207	761
8	2,372	18	4,164	55	1,618	3,940	1,952	1,115	208	749
9	2,389	18	4,276	56	1,671	3,969	1,928	1,136	207	746
10	2,418	18	4,285	55	1,672	3,996	1,936	1,136	210	750
11	2,193	18	4,326	55	1,699	4,033	1,951	1.145	219	750
12	1,784	19	4,296	53	1,665	4,201	1,986	1,142	216	751
2002. 1	1,627	20	4,248	53	1,550	4,010	1,995	1,132	214	751
2	1,639	19	4,233	52	1,579	4,019	1,996	1,133	223	753
3	1,915	20	4,246	54	1,674	3,958	1,998	1,112	224	748
4	2,181	20	4,293	56	1,766	3,973	2,043	1,129	223	733
5	2,282	19	4,269	58	1,796	3,966	2,016	1,130	230	729
6	2,289	17	4,241	55	1,811	4,001	2,012	1,144	236	713
7	2,249	16	4,213	52	1,817	4,043	2,036	1,148	244	726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362	1,086	694	1,203	461	384	938	194	17
375	1,150	736	1,249	483	394	977	203	15
387	1,179	684	1,243	486	398	984	204	15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385	1,174	721	1,258	483	403	982	204	15
383	1,180	686	1,248	485	410	991	203	15
388	1,178	677	1,239	482	397	977	193	15
389	1,179	688	1,241	491	389	985	216	15
399	1,174	684	1,242	495	392	990	216	15
400	1,186	692	1,255	507	394	999	222	15
397	1,179	698	1,254	514	402	1,008	228	15
407	1,189	692	1,296	506	409	1,009	219	15
405	1,198	699	1,294	504	419	1,018	221	15
402	1,229	699	1,307	519	412	1,016	221	17
396	1,247	725	1,312	539	424	1,036	219	17
408	1,249	704	1,317	553	430	1,060	222	18
410	1,273	711	1,318	562	420	1,072	213	18
416	1,284	693	1,334	561	426	1,042	214	18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표 1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1. 1/4	730	0	1,510	13	120	1,800	1,314	99	58	430
2/4	1,155	0	1,517	14	136	1,832	1,319	94	57	425
3/4	1,164	1	1,494	14	141	1,863	1,320	99	56	408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2001. 6	1,182	1	1,512	14	138	1,846	1,311	95	56	409
7	1,155	1	1,498	14	133	1,868	1,339	98	56	414
8	1,159	1	1,441	14	142	1,849	1,313	98	55	406
9	1,178	1	1,544	15	149	1,873	1,309	101	58	403
10	1,194	1	1,547	16	149	1,881	1,312	95	57	405
11	1,060	1	1,574	15	149	1,900	1,333	100	62	406
12	791	1	1,542	14	142	1,898	1,344	102	62	404
2002. 1	697	1	1,503	14	140	1,873	1,338	101	58	405
2	710	1	1,494	13	140	1,878	1,346	103	59	408
3	874	1	1,511	14	145	1,851	1,362	96	60	410
4	1,058	1	1,530	13	161	1,861	1,389	94	57	393
5	1,128	1	1,545	13	159	1,869	1,376	91	60	393
6	1,149	1	1,537	12	160	1,872	1,374	94	60	377
7	1,104	1	1,509	10	150	1,890	1,389	96	65	389
8	1,081	1	1,492	10	146	1,839	1,377	91	58	396
9	1,115	2	1,534	7	152	1,887	1,365	93	59	399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주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06	338	195	750	328	142	401	188	2
107	360	237	779	346	151	425	197	2
115	375	196	768	351	149	421	197	2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08	369	232	778	347	160	426	198	2
112	376	198	772	350	156	429	196	2
116	369	195	762	347	147	416	188	2
115	378	196	770	357	145	417	208	2
118	386	193	773	361	139	426	211	2
117	394	191	780	372	141	429	217	2
114	386	193	775	378	143	430	224	2
120	393	186	802	363	148	418	215	2
120	404	193	801	361	153	426	218	2
121	398	193	824	372	153	429	217	2
119	410	216	824	388	164	437	216	2
120	404	200	830	398	168	449	219	3
123	403	206	835	405	161	470	211	3
129	406	197	842	398	159	436	210	3
131	390	195	824	408	160	436	202	3
132	401	188	873	395	159	434	212	3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표 1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7	514	1,092	2,206	2,643	4,904		2,177	3,206	2,229	2,334
1998	494	1,099	2,155	2,481	4,712		2,284	2,539	2,104	2,069
1999	462	1,063	2,60	2,296	4,811		2,214	2,605	2,117	2,403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2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1999. 1/4	466	1,065	2,286	2,259	4,730		1,704	2,397	2,044	2,167
2/4	453	1,068	2,319	2,282	4,754		2,378	2,577	2,078	2,441
3/4	463	1,060	2,381	2,307	4,812		2,416	2,659	2,144	2,464
4/4	467	1,060	2,454	2,336	4,949		2,196	2,787	2,200	2,541
2000. 1/4	455	1,379	2,052	2,458	2,619	2,801	1,746	2,563	2,279	2,028
2/4	458	1,372	2,090	2,509	2,640	2,836	2,299	2,730	2,273	2,129
3/4	470	1,414	2,076	2,519	2,699	2,814	2,360	2,725	2,290	2,119
4/4	478	1,446	2,079	2,561	2,740	2,852	2,053	2,733	2,326	2,152
2001. 1/4	484	1,465	2,072	2,565	2,673	2,867	1,633	2,556	2,313	1,998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2001. 6	532	1,518	2,086	2,700	2,729	2,938	2,290	2,653	2,322	2,167
7	531	1,495	2,107	2,728	2,762	2,967	2,263	2,629	2,322	2,168
8	524	1,496	2,090	2,685	2,707	2,937	2,259	2,609	2,308	2,124
9	522	1,520	2,091	2,701	2,714	2,947	2,245	2,680	2,335	2,236
10	548	1,503	2,078	2,690	2,736	2,955	2,267	2,711	2,366	2,229
11	569	1,509	2,087	2,708	2,758	3,008	2,067	2,715	2,371	2,268
12	570	1,505	2,082	2,744	2,797	2,976	1,679	2,674	2,379	2,223
2002. 1	567	1,505	2,111	2,761	2,783	2,970	1,551	2,580	2,336	2,178
2	570	1,515	2,101	2,773	2,814	2,976	1,561	2,603	2,338	2,168
3	580	1,538	2,123	2,760	2,811	2,942	1,820	2,704	2,329	2,164
4	589	1,565	2,102	2,810	2,873	2,932	2,077	2,744	2,360	2,248
5	583	1,588	2,105	2,805	2,868	2,928	2,146	2,751	2,389	2,291
6	572	1,583	2,113	2,806	2,852	2,969	2,154	2,753	2,393	2,318
7	581	1,584	2,147	2,811	2,893	2,998	2,150	2,728	2,369	2,272
8	567	1,593	2,128	2,802	2,843	2,939	2,141	2,676	2,367	2,166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19	2,365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7	25	342	697	1,413	2,988		1,044	721	299	1,202
1998	26	362	691	1,183	2,806		1,083	594	277	1,068
1999	22	359	732	1,169	2,906		1,000	640	280	1,231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1999. 1/4	23	355	700	1,124	2,849		696	601	275	1,095
2/4	21	359	720	1,157	2,881		1,120	634	274	1,255
3/4	21	359	748	1,180	2,902		1,161	642	280	1,249
4/4	21	362	760	1,215	2,991		1,021	684	290	1,323
2000. 1/4	19	595	565	1,253	1,776	1,514	729	628	296	954
2/4	20	600	591	1,284	1,796	1,555	1,105	624	303	1,011
3/4	25	628	587	1,286	1,838	1,549	1,147	617	302	978
4/4	30	638	604	1,315	1,851	1,577	955	624	319	98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2001. 6	31	626	633	1,383	1,883	1,626	1,087	593	317	1,002
7	27	621	635	1,397	1,899	1,640	1,079	578	313	980
8	31	616	631	1,373	1,851	1,620	1,082	558	302	957
9	33	635	632	1,399	1,867	1,626	1,073	592	310	1,054
10	33	640	619	1,410	1,884	1,621	1,090	600	308	1,064
11	32	640	640	1,421	1,911	1,646	971	604	307	1,071
12	33	636	635	1,444	1,934	1,636	712	588	303	1,028
2002. 1	32	630	656	1,437	1,902	1,623	639	562	299	998
2	35	642	642	1,434	1,928	1,627	652	555	295	1,021
3	38	660	663	1,448	1,935	1,610	803	558	291	1,030
4	39	670	658	1,471	1,985	1,610	982	564	293	1,063
5	34	665	671	1,479	1,994	1,613	1,029	554	301	1,090
6	32	666	672	1,477	1,983	1,616	1,046	547	299	1,114
7	31	658	681	1,479	2,004	1,633	1,031	526	300	1,040
8	30	665	680	1,466	1,969	1,595	1,013	522	306	993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 체						여성의 비중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7	1,639	4,262	1,908	7,282	4,236	1,886	19.5	33.8	89.8	27.7	55.9	46.1
1998	1,392	4,225	2,025	6,534	4,043	1,720	17.5	30.9	88.8	25.3	55.8	48.8
1999	1,351	4,351	1,925	6,135	4,255	2,274	18.4	31.9	87.1	25.5	53.8	51.6
2000	1,458	4,407	1,931	6,395	4,608	2,357	18.0	32.2	87.4	26.3	54.2	51.8
2001	1,554	4,497	1,863	6,714	4,726	2,218	19.0	32.4	87.4	27.7	54.8	52.3
2002	1,617	4,574	1,797	6,862	4,886	2,433	18.8	32.4	88.0	28.7	54.9	49.6
1999.1/4	1,331	4,108	1,682	6,115	4,039	1,844	18.4	31.7	87.2	25.1	54.5	52.3
2/4	1,326	4,372	2,025	6,702	4,189	2,371	18.6	31.5	87.0	25.3	51.4	51.9
3/4	1,349	4,476	2,039	6,127	4,301	2,413	18.1	32.1	87.2	25.7	53.2	50.7
4/4	1,399	4,450	1,956	6,227	4,490	2,468	18.5	32.0	87.0	25.6	53.5	51.7
2000.1/4	1,401	4,191	1,731	6,235	4,562	2,261	17.7	32.0	86.6	25.6	53.6	52.9
2/4	1,435	4,457	2,307	6,365	4,601	2,441	17.6	32.3	87.5	26.0	54.1	52.0
3/4	1,487	4,547	2,053	6,429	4,615	2,356	18.2	32.5	87.7	26.4	54.6	51.0
4/4	1,507	4,432	1,903	6,551	4,655	2,372	18.5	32.2	87.8	26.9	54.5	51.4
2001.1/4	1,504	4,248	1,678	6,593	4,588	2,017	19.1	32.0	87.3	27.3	55.0	53.9
2/4	1,558	4,544	1,967	6,762	4,760	2,247	19.1	32.2	87.9	27.6	55.2	52.0
3/4	1,558	4,642	1,967	6,739	4,722	2,273	18.9	32.7	87.3	27.6	54.5	51.2
4/4	1,596	4,552	1,840	6,764	4,835	2,237	18.9	32.6	87.3	28.2	54.5	52.1
2002.1/4	1,613	4,387	1,646	6,759	4,821	2,283	18.8	32.7	87.2	28.3	54.4	51.4
2/4	1,631	4,662	1,876	6,855	4,908	2,492	19.2	32.6	88.6	28.9	54.9	49.6
3/4	1,630	4,669	1,892	6,878	4,889	2,459	18.9	32.2	88.3	28.7	54.9	48.9
4/4	1,593	4,576	1,775	6,957	4,927	2,498	18.4	32.1	88.0	28.8	55.3	48.6
2003.1/4	1,567	4,298	1,601	7,176	4,904	2,088	17.2	29.3	89.9	28.8	55.7	49.2
2/4	1,590	4,433	1,771	7,250	5,082	2,177	17.8	29.5	90.3	28.6	56.9	49.1
2001. 6	1,564	4,550	1,981	6,773	4,788	2,277	19.1	32.4	87.7	27.6	55.1	51.2
7	1,548	4,583	1,957	6,748	4,802	2,333	19.1	32.6	87.3	27.5	54.9	50.5
8	1,555	4,676	1,966	6,706	4,613	2,221	18.6	32.7	87.5	27.7	54.2	50.6
9	1,570	4,665	1,976	6,762	4,752	2,266	19.0	32.9	87.1	28.0	54.5	52.4
10	1,590	4,681	1,991	6,750	4,773	2,297	18.9	32.5	87.5	28.0	54.5	52.7
11	1,598	4,592	1,878	6,763	4,847	2,382	19.0	32.8	87.5	28.3	54.5	51.9
12	1,600	4,382	1,651	6,779	4,886	2,331	18.9	32.6	86.7	28.4	54.4	51.6
2002. 1	1,605	4,319	1,597	6,740	4,838	2,243	18.4	32.9	86.7	28.1	54.2	51.6
2	1,596	4,316	1,604	6,749	4,861	2,293	18.9	32.6	86.7	28.2	54.2	52.2
3	1,640	4,527	1,738	6,788	4,765	2,313	19.1	32.6	87.9	28.6	54.8	50.3
4	1,637	4,644	1,845	6,853	4,857	2,465	18.9	32.7	88.5	28.9	54.7	50.1
5	1,625	4,671	1,878	6,849	4,943	2,490	19.4	32.5	88.5	28.9	55.1	49.5
6	1,630	4,670	1,906	6,862	4,923	2,523	19.3	32.5	88.8	28.8	55.0	49.3
7	1,634	4,656	1,891	6,860	4,940	2,552	19.0	32.3	88.4	28.6	54.8	48.0
8	1,634	4,674	1,884	6,851	4,806	2,372	19.1	32.0	88.1	28.7	54.7	49.5
9	1,621	4,675	1,900	6,923	4,919	2,452	18.6	32.4	88.3	28.8	55.2	49.2
10	1,605	4,692	1,896	6,944	4,899	2,503	18.4	32.4	88.3	28.9	55.2	49.4
11	1,592	4,607	1,796	6,950	4,943	2,501	18.3	32.1	88.4	28.8	55.4	48.2
12	1,582	4,431	1,634	6,977	4,940	2,489	18.5	31.7	87.1	28.8	55.4	48.3
2003. 1	1,560	4,272	1,594	7,142	4,893	2,102	16.9	29.2	90.0	29.2	54.8	49.5
2	1,571	4,295	1,586	7,158	4,853	2,035	17.6	29.3	89.2	28.6	55.9	48.8
3	1,570	4,326	1,622	7,227	4,966	2,127	17.4	29.5	90.4	28.6	56.5	49.3
4	1,568	4,378	1,726	7,237	5,079	2,168	17.2	29.2	90.6	28.4	57.1	49.0
5	1,592	4,460	1,800	7,266	5,082	2,171	17.9	29.5	90.4	28.6	56.9	48.9
6	1,611	4,460	1,788	7,245	5,086	2,193	18.4	29.9	89.8	28.6	56.8	4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성별)

(단위 : 천명, %)

	남 자			여 자		
	상 용	임 시	일 용	상 용	임 시	일 용
1997	5,262	1,866	1,017	2,020	2,370	869
1998	4,885	1,786	881	1,650	2,257	839
1999	4,574	1,966	1,100	1,562	2,289	1,174
2000	4,716	2,112	1,135	1,679	2,496	1,222
2001	4,854	2,137	1,059	1,861	2,589	1,159
2002	4,894	2,205	1,226	1,968	2,682	1,207
1999.1/4	4,578	1,837	879	1,537	2,202	965
2/4	4,534	1,921	1,140	1,538	2,268	1,231
3/4	4,551	2,015	1,189	1,576	2,286	1,224
4/4	4,631	2,089	1,192	1,596	2,401	1,276
2000.1/4	4,636	2,116	1,064	1,598	2,446	1,197
2/4	4,710	2,111	1,171	1,655	2,490	1,270
3/4	4,730	2,105	1,155	1,698	2,510	1,201
4/4	4,787	2,115	1,152	1,764	2,539	1,220
2001.1/4	4,791	2,064	929	1,802	2,523	1,088
2/4	4,897	2,134	1,079	1,865	2,626	1,168
3/4	4,870	2,148	1,110	1,869	2,574	1,163
4/4	4,856	2,202	1,119	1,908	2,633	1,217
2002.1/4	4,846	2,199	1,110	1,913	2,623	1,173
2/4	4,876	2,213	1,255	1,979	2,695	1,237
3/4	4,901	2,205	1,257	1,977	2,684	1,202
4/4	4,952	2,202	1,283	2,005	2,725	1,215
2003.1/4	5,109	2,171	1,060	2,067	2,733	1,027
2/4	5,180	2,188	1,108	2,070	2,894	1,069
2001. 6	4,902	2,152	1,111	1,871	2,636	1,166
7	4,890	2,167	1,156	1,858	2,635	1,177
8	4,848	2,115	1,097	1,858	2,499	1,124
9	4,872	2,163	1,078	1,890	2,589	1,187
10	4,860	2,174	1,085	1,890	2,599	1,211
11	4,852	2,203	1,144	1,911	2,643	1,237
12	4,856	2,228	1,128	1,923	2,658	1,203
2002. 1	4,843	2,217	1,085	1,897	2,621	1,158
2	4,848	2,227	1,097	1,901	2,635	1,196
3	4,848	2,153	1,149	1,940	2,613	1,164
4	4,872	2,202	1,228	1,981	2,655	1,236
5	4,871	2,220	1,258	1,978	2,724	1,232
6	4,885	2,217	1,279	1,977	2,706	1,244
7	4,895	2,231	1,328	1,965	2,709	1,224
8	4,882	2,177	1,198	1,969	2,629	1,174
9	4,927	2,205	1,245	1,996	2,714	1,207
10	4,938	2,197	1,267	2,006	2,702	1,236
11	4,949	2,205	1,295	2,001	2,738	1,206
12	4,970	2,205	1,287	2,007	2,735	1,202
2003. 1	5,058	2,214	1,060	2,084	2,680	1,041
2	5,110	2,140	1,042	2,048	2,713	993
3	5,159	2,158	1,079	2,068	2,807	1,048
4	5,183	2,178	1,105	2,054	2,900	1,062
5	5,186	2,188	1,109	2,080	2,894	1,062
6	5,170	2,197	1,111	2,075	2,889	1,0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0> 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361	188	148	21	3	207	134	67	5	1
1998	1,005	404	518	74	9	486	251	213	18	4
1999	926	355	484	83	5	448	219	205	21	3
2000	613	242	320	47	4	300	160	126	13	1
2001	561	229	289	40	4	284	159	115	9	1
2002	467	207	226	30	4	241	135	97	8	1
1999.1/4	1,189	441	641	101	6	587	296	259	28	5
2/4	988	367	527	88	6	469	216	228	20	4
3/4	837	331	422	80	3	399	180	194	21	3
4/4	692	278	346	63	5	337	184	137	14	2
2000.1/4	734	302	370	56	6	380	210	149	20	2
2/4	580	223	308	44	4	280	152	116	11	1
3/4	564	219	299	43	3	269	138	121	9	1
4/4	575	226	301	45	3	269	139	119	11	1
2001.1/4	718	278	382	55	4	342	192	137	13	1
2/4	537	208	283	42	4	278	162	106	9	0
3/4	497	211	250	33	3	258	135	115	7	1
4/4	493	222	239	29	4	258	147	103	7	1
2002.1/4	531	235	256	35	5	298	175	112	8	3
2/4	455	199	222	30	4	234	128	94	10	1
3/4	435	187	214	30	4	217	118	91	8	1
4/4	449	206	213	25	5	215	118	90	6	1
2003.1/4	503	239	223	37	3	303	185	107	11	1
2/4	470	208	224	36	3	281	154	118	9	1
2001. 6	508	207	256	42	3	257	152	95	9	0
7	520	216	264	38	2	260	149	102	7	1
8	501	212	256	32	2	276	135	133	7	1
9	469	206	231	28	5	238	122	109	7	1
10	480	203	240	33	4	245	125	110	8	1
11	490	224	239	23	3	250	144	100	5	1
12	510	239	236	30	4	278	172	98	7	1
2002. 1	549	251	263	34	1	299	185	106	6	1
2	541	236	268	32	6	295	175	107	8	4
3	503	219	238	38	8	300	164	122	11	3
4	481	210	231	34	6	253	140	100	11	3
5	448	195	218	30	4	241	128	101	11	1
6	436	190	217	26	3	206	115	82	8	0
7	436	199	202	33	3	222	128	86	8	1
8	461	187	239	31	3	231	121	101	7	2
9	407	175	200	25	5	199	106	85	8	0
10	434	190	214	25	6	205	112	88	4	1
11	441	198	218	21	4	207	115	86	6	0
12	470	231	207	28	4	232	127	96	9	1
2003. 1	487	236	210	35	6	302	188	103	11	0
2	518	250	228	39	1	304	192	103	9	0
3	503	231	232	38	3	303	176	114	12	1
4	471	210	221	38	2	285	152	122	10	1
5	465	207	220	35	4	278	152	116	10	1
6	474	207	230	34	3	281	159	115	7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1>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2.8	6.4	1.8	1.5	0.7	2.3	4.9	1.4	0.5	0.2
1998	7.8	14.1	6.3	5.5	1.8	5.5	10.0	4.5	1.9	1.1
1999	7.2	12.8	5.9	6.2	1.0	5.1	8.8	4.2	2.2	0.7
2000	4.7	8.6	3.8	3.6	0.8	3.3	6.3	2.5	1.3	0.2
2001	4.3	8.7	3.4	3.0	0.7	3.1	6.2	2.2	0.9	0.2
2002	3.5	8.0	2.6	2.1	0.6	2.5	5.3	1.8	0.8	0.2
1999.1/4	9.4	15.9	7.9	7.9	1.4	7.1	11.9	5.5	3.3	1.6
2/4	7.6	13.2	6.4	6.5	1.2	5.3	8.8	4.6	2.0	0.9
3/4	6.4	11.8	5.1	5.9	0.6	4.5	7.2	3.9	2.0	0.6
4/4	5.3	10.1	4.1	4.7	0.9	3.7	7.3	2.7	1.4	0.4
2000.1/4	5.7	10.9	4.5	4.5	1.3	4.4	8.2	3.1	2.3	0.5
2/4	4.5	8.2	3.6	3.3	0.7	3.1	6.0	2.3	1.1	0.2
3/4	4.3	8.0	3.5	3.3	0.5	2.9	5.4	2.4	0.9	0.2
4/4	4.4	8.3	3.5	3.4	0.6	2.9	5.5	2.2	1.6	0.2
2001.1/4	5.6	10.4	4.5	4.4	0.8	3.9	7.4	2.7	1.5	0.3
2/4	4.1	7.9	3.3	3.1	0.7	2.9	6.3	2.0	0.9	0.0
3/4	3.7	8.0	2.9	2.4	0.5	2.7	5.3	2.2	0.7	0.2
4/4	3.7	8.6	2.7	2.1	0.7	2.7	5.7	1.9	0.7	0.2
2002.1/4	4.0	8.9	3.0	2.6	0.9	3.2	6.7	2.1	0.9	0.2
2/4	3.4	7.7	2.5	2.1	0.6	2.4	5.0	1.7	1.0	0.2
3/4	3.2	7.3	2.4	2.1	0.6	2.3	4.6	1.7	0.8	0.2
4/4	3.3	8.2	2.4	1.7	0.8	2.3	4.7	1.7	0.6	0.2
2003.1/4	3.8	9.5	2.5	2.7	0.5	3.3	7.3	2.0	1.3	0.2
2/4	3.5	8.5	2.5	2.5	0.5	3.0	6.2	2.2	0.9	0.2
2001. 6	3.8	7.8	3.0	3.1	0.5	2.7	6.0	1.8	0.9	0.0
7	3.9	7.9	3.1	2.8	0.3	2.8	5.7	1.9	0.7	0.2
8	3.8	8.0	3.0	2.3	0.3	3.0	5.3	2.6	0.7	0.2
9	3.5	8.0	2.7	2.0	0.8	2.5	4.8	2.0	0.7	0.2
10	3.6	7.9	2.8	2.3	0.6	2.6	5.0	2.0	0.8	0.2
11	3.7	8.6	2.7	1.7	0.5	2.6	5.6	1.9	0.5	0.2
12	3.9	9.2	2.7	2.2	0.7	3.0	6.6	1.9	0.8	0.2
2002. 1	4.2	9.4	3.1	2.6	0.2	3.3	7.0	2.0	0.7	0.2
2	4.1	8.9	3.1	2.4	1.1	3.2	6.7	2.1	0.9	0.9
3	3.8	8.5	2.7	2.7	1.4	3.2	6.4	2.3	1.2	0.6
4	3.6	8.0	2.6	2.4	0.9	2.6	5.4	1.8	1.1	0.5
5	3.3	7.5	2.5	2.1	0.6	2.5	4.9	1.8	1.1	0.2
6	3.2	7.4	2.5	1.8	0.4	2.1	4.5	1.5	0.8	0.0
7	3.2	7.5	2.3	2.3	0.4	2.3	4.9	1.6	0.8	0.2
8	3.4	7.3	2.7	2.2	0.5	2.4	4.8	1.9	0.7	0.4
9	3.0	7.0	2.3	1.7	0.7	2.1	4.2	1.6	0.8	0.0
10	3.2	7.6	2.4	1.7	0.9	2.1	4.5	1.6	0.4	0.2
11	3.3	7.9	2.4	1.4	0.6	2.2	4.6	1.6	0.6	0.0
12	3.5	9.1	2.3	2.0	0.6	2.5	5.0	1.8	1.0	0.2
2003. 1	3.7	9.3	2.4	2.6	1.1	3.3	7.3	2.0	1.3	0.0
2	3.9	9.9	2.6	2.9	0.2	3.4	7.5	2.0	1.1	0.0
3	3.8	9.3	2.6	2.7	0.5	3.3	7.0	2.1	1.3	0.2
4	3.5	8.5	2.5	2.7	0.3	3.0	6.1	2.2	1.0	0.2
5	3.4	8.4	2.4	2.4	0.6	2.9	6.1	2.1	1.0	0.2
6	3.5	8.5	2.5	2.3	0.5	2.9	6.3	2.1	0.7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2> 교육수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76	164	37	84	42	95	20	50
1998	262	470	68	205	141	212	40	92
1999	234	415	80	197	125	195	43	84
2000	148	256	61	149	79	124	30	67
2001	127	226	57	151	64	119	31	70
2002	89	184	54	140	50	96	24	71
1999. 1/4	321	540	104	224	168	245	68	105
2/4	245	455	74	214	125	220	31	92
3/4	206	377	73	181	116	175	31	77
4/4	164	290	70	168	93	140	42	62
2000. 1/4	174	312	73	175	98	148	43	91
2/4	133	250	48	149	70	124	17	70
3/4	145	230	57	132	76	116	24	54
4/4	140	231	65	140	73	107	37	53
2001. 1/4	187	288	73	170	85	138	42	77
2/4	121	222	39	154	59	120	22	76
3/4	100	209	50	139	58	105	28	68
4/4	100	184	67	142	54	114	31	58
2002. 1/4	105	211	69	146	60	116	41	81
2/4	88	188	42	137	47	101	13	73
3/4	83	175	48	129	46	85	21	66
4/4	78	162	59	149	45	83	21	66
2003.1/4	72	208	67	156	44	112	39	108
2/4	70	197	46	156	40	122	19	100
2001. 6	112	210	43	144	53	109	24	70
7	107	217	57	138	54	91	44	71
8	101	212	45	143	68	117	19	72
9	90	197	46	135	53	106	20	60
10	98	189	54	139	58	110	16	61
11	97	186	65	143	48	120	26	56
12	106	179	81	144	57	111	53	58
2002. 1	106	200	95	148	62	112	63	62
2	110	224	62	145	61	109	41	83
3	99	209	50	144	57	127	20	97
4	86	201	46	148	51	113	14	74
5	93	182	38	135	51	102	13	76
6	85	179	43	129	39	86	11	69
7	84	170	60	122	46	80	30	66
8	91	193	45	132	51	94	17	69
9	74	160	40	132	42	80	15	62
10	76	161	50	146	34	87	14	70
11	75	162	54	150	43	79	22	64
12	84	163	72	152	57	82	28	65
2003. 1	69	197	85	136	50	102	64	87
2	75	214	71	158	36	119	38	112
3	72	215	44	172	46	116	16	126
4	70	194	42	164	42	130	13	100
5	66	207	37	155	39	119	14	105
6	75	191	59	149	38	118	30	94

주 :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2.1	3.0	6.2	2.7	1.0	2.9	6.5	3.6
1998	8.1	8.4	13.8	5.8	3.9	6.6	14.4	6.1
1999	7.3	7.6	13.1	5.5	3.4	6.1	12.6	5.2
2000	4.7	4.7	8.7	4.1	2.1	3.8	7.8	3.8
2001	4.1	4.1	7.5	3.9	1.8	3.5	7.3	3.7
2002	2.9	3.4	6.5	3.5	1.4	2.8	5.4	3.4
1999. 1/4	10.5	10.0	17.7	6.4	5.1	7.9	19.4	6.7
2/4	7.5	8.3	13.2	6.0	3.3	6.8	10.7	5.7
3/4	6.3	6.8	11.6	5.1	3.1	5.5	8.8	4.7
4/4	5.0	5.3	10.6	4.7	2.5	4.3	11.4	3.8
2000. 1/4	5.7	5.7	10.8	4.8	2.8	4.6	10.8	5.5
2/4	4.1	4.6	7.5	4.0	1.8	3.8	5.3	4.0
3/4	4.5	4.2	7.7	3.6	2.0	3.6	6.0	3.0
4/4	4.4	4.2	8.8	3.8	2.0	3.2	8.9	3.0
2001. 1/4	6.4	5.3	9.9	4.5	2.6	4.2	9.5	4.2
2/4	3.8	4.1	5.4	4.0	1.6	3.5	5.9	3.9
3/4	3.2	3.8	6.3	3.6	1.6	3.1	6.2	3.6
4/4	3.2	3.3	8.5	3.6	1.5	3.3	7.1	3.0
2002. 1/4	3.6	3.9	8.0	3.7	1.8	3.4	8.4	4.1
2/4	2.8	3.4	5.3	3.4	1.3	2.9	3.2	3.5
3/4	2.7	3.2	5.7	3.2	1.3	2.5	4.7	3.2
4/4	2.5	3.0	7.2	3.6	1.3	2.4	5.0	3.1
2003. 1/4	2.6	3.9	9.5	3.5	1.5	3.3	9.7	4.7
2/4	2.4	3.6	6.9	3.4	1.2	3.5	5.3	4.2
2001. 6	3.6	3.8	5.7	3.7	1.4	3.2	6.3	3.6
7	3.4	4.0	6.8	3.5	1.5	2.7	9.0	3.7
8	3.3	3.9	5.6	3.7	1.9	3.6	4.1	3.8
9	2.9	3.6	6.1	3.5	1.4	3.1	4.9	3.1
10	3.1	3.4	7.1	3.6	1.5	3.2	4.0	3.2
11	3.1	3.4	8.3	3.7	1.3	3.5	6.0	2.9
12	3.5	3.3	9.9	3.7	1.7	3.6	11.1	3.0
2002. 1	3.7	3.7	10.3	3.8	1.9	3.3	11.4	3.3
2	3.8	4.1	7.1	3.7	1.9	3.2	8.1	4.3
3	3.3	3.8	6.4	3.6	1.7	3.7	4.8	4.7
4	2.8	3.6	5.8	3.7	1.4	3.2	3.4	3.5
5	3.0	3.3	4.7	3.3	1.4	2.9	3.1	3.6
6	2.7	3.2	5.4	3.2	1.1	2.5	2.8	3.3
7	2.7	3.1	6.6	3.0	1.3	2.3	6.2	3.2
8	3.0	3.5	5.4	3.2	1.4	2.8	3.7	3.3
9	2.4	2.9	5.1	3.2	1.2	2.3	3.7	2.9
10	2.4	2.9	6.3	3.5	0.9	2.5	3.5	3.3
11	2.4	2.9	6.6	3.6	1.2	2.3	5.3	3.0
12	2.8	3.0	8.4	3.7	1.7	2.4	6.4	3.0
2003. 1	2.5	3.7	11.2	3.1	1.7	3.0	13.8	3.9
2	2.8	4.0	9.9	3.5	1.2	3.5	9.2	4.9
3	2.6	4.0	7.0	3.8	1.5	3.3	4.8	5.3
4	2.5	3.6	6.5	3.6	1.3	3.7	3.9	4.2
5	2.3	3.8	5.6	3.4	1.2	3.4	4.0	4.4
6	2.4	3.6	6.9	3.4	1.2	3.5	5.3	4.2

주 :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실업자 구조

(단위 : 천명)

	신규실업자[1]	전직실업자[2]	구직기간			
			3개월미만	3~5개월	6~11개월	12개월이상
1998	127	1,364	832	439	197	22
1999	98	1,276	731	387	204	52
2000	62	851	543	240	109	21
2001	55	790	512	223	91	19
2002	44	664	412	198	81	18
1999. 2/4	99	1,358	745	423	228	60
3/4	80	1,155	653	331	202	49
4/4	68	961	582	277	139	31
2000. 1/4	95	1,019	667	298	124	25
2/4	57	804	493	243	107	18
3/4	50	783	500	207	109	15
4/4	46	799	513	211	97	24
2001. 1/4	75	985	663	275	96	26
2/4	53	761	468	230	94	22
3/4	44	711	457	194	88	16
4/4	47	704	460	192	86	13
2002. 1/4	66	763	514	215	85	14
2/4	43	646	403	196	72	17
3/4	30	622	373	184	74	21
4/4	37	626	356	197	93	17
2003. 1/4	106	700	530	216	57	2
2/4	60	692	473	207	68	3
2001. 6	52	713	441	218	90	15
7	60	720	487	195	81	16
8	38	739	489	185	87	16
9	34	673	395	202	95	16
10	29	696	427	199	87	13
11	46	694	467	176	82	15
12	66	722	486	202	88	13
2002. 1	74	773	548	200	88	12
2	66	770	496	241	84	15
3	57	746	499	205	83	15
4	50	684	466	177	75	17
5	43	646	391	207	74	17
6	37	606	352	204	68	19
7	40	619	381	190	67	20
8	28	663	404	187	79	21
9	23	582	332	174	77	22
10	24	615	363	173	85	19
11	37	611	362	184	86	16
12	49	652	344	234	107	17
2003. 1	113	676	540	206	42	1
2	120	702	538	225	55	4
3	83	724	514	217	73	2
4	71	685	496	193	66	1
5	53	691	458	218	64	4
6	55	700	465	211	75	3

주 : 1)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
2)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5> 실업자의 구조 : 성별 · 이직이유별[1)]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개인사유[2)]	작업여건 불만족[3)]	휴/폐업[4)]	비자발적 사유[5)]	개인사유	작업여건 불만족	휴/폐업	비자발적 사유
1999[7)]	181	79	98	368	121	38	38	127
2000	81	113	30	255	64	58	11	91
2001	94	95	28	218	66	61	12	76
2002	85	111	16	148	65	63	7	51
1999. 2/4	194	86	108	384	120	44	42	126
3/4	185	68	84	321	109	31	26	129
4/4	168	54	53	257	116	23	12	98
2000. 1/4	86	116	35	332	71	70	13	120
2/4	71	113	31	235	58	62	9	86
3/4	82	120	26	226	55	54	12	84
4/4	87	105	26	229	73	48	8	72
2001. 1/4	119	100	37	302	73	65	16	97
2/4	84	78	29	218	69	62	11	64
3/4	81	100	28	180	57	56	14	73
4/4	92	102	19	171	65	59	7	69
2002. 1/4	93	104	16	182	68	76	8	66
2/4	88	104	13	137	61	63	9	49
3/4	79	114	19	133	63	59	6	50
4/4	79	122	16	140	69	55	5	38
2003.1/4	72	96	23	159	59	74	11	51
2/4	71	100	23	161	67	78	15	52
2001. 6	90	81	29	196	60	61	10	58
7	90	96	29	188	53	55	14	66
8	72	106	29	189	59	66	15	81
9	81	98	25	162	59	48	13	71
10	90	97	21	173	64	53	8	69
11	96	99	16	172	64	59	7	70
12	91	111	20	169	67	65	6	67
2002. 1	93	107	21	194	75	77	5	67
2	88	102	12	197	63	76	7	66
3	97	102	14	156	66	75	13	65
4	97	104	15	139	63	69	14	49
5	87	102	11	140	68	61	11	47
6	81	106	12	133	53	60	4	50
7	90	109	16	121	63	56	4	56
8	84	125	22	143	69	66	5	53
9	63	110	19	135	58	56	7	41
10	71	119	18	145	71	53	4	35
11	77	123	16	138	63	52	6	38
12	87	126	14	138	72	59	5	41
2003. 1	64	93	21	147	56	69	10	56
2	75	98	24	159	63	71	11	46
3	76	97	22	170	59	80	13	53
4	66	94	22	162	73	71	15	50
5	72	100	21	164	63	79	16	55
6	75	106	24	158	66	85	15	50

주 : 1)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2) 개인 · 가족적 이유, 건강상 이유, 정년퇴직/연로(정년퇴직/연로는 적은 수를 차지).
3) 작업여건(시간 · 보수 등) 불만족.
4) 직장의 휴업 · 폐업.
5) 명예 · 조기퇴직 · 정리해고 /임시적 ·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없음 /사업경영 악화.
6) 1999년도 휴 · 폐업은 휴 · 폐업 및 해고를 포함, 비자발적사유에서 명예 · 조기퇴직 · 정리해고는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6> 비경제활동인구(전체)

(단위 :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활	비경활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7	13,070	34.0	8,622	1,476	5,010	4,448	1,170	276	689
1998	13,919	32.6	9,379	1,785	5,061	4,540	1,352	263	918
1999	14,092	34.9	9,167	1,854	4,925	4,474	1,380	292	1,167
2000	14,118	30.8	9,766	1,774	5,013	4,352	1,328	328	1,321
2001	14,162	29.6	9,966	1,679	5,143	4,196	1,291	374	1,478
2002	14,086	29.2	9,978	1,562	5,253	4,108	1,288	408	1,467
1999. 1/4	14,704	29.8	10,323	1,922	5,440	4,381	1,412	269	1,279
2/4	13,893	32.7	9,350	1,822	4,711	4,543	1,379	294	1,144
3/4	13,873	32.1	9,423	1,844	4,749	4,450	1,386	311	1,134
4/4	13,898	32.5	9,378	1,829	4,801	4,520	1,343	295	1,111
2000. 1/4	14,517	29.2	10,274	1,869	5,323	4,243	1,364	311	1,407
2/4	13,927	31.9	9,487	1,773	4,813	4,440	1,320	328	1,253
3/4	13,933	31.1	9,598	1,740	4,887	4,335	1,310	336	1,325
4/4	14,093	31.2	9,703	1,716	5,030	4,390	1,319	338	1,300
2001. 1/4	14,747	27.8	10,643	1,750	5,555	4,104	1,338	357	1,642
2/4	13,874	30.7	9,609	1,664	4,914	4,265	1,286	377	1,367
3/4	13,978	29.7	9,822	1,669	5,002	4,156	1,269	383	1,498
4/4	14,049	30.3	9,791	1,632	5,102	4,258	1,272	381	1,405
2002. 1/4	14,485	27.4	10,522	1,624	5,538	3,963	1,292	397	1,671
2/4	13,807	30.1	9,656	1,555	5,056	4.151	1,271	393	1,381
3/4	13,944	29.5	9,836	1,539	5,182	4,108	1,273	418	1,425
4/4	14,107	29.8	9,898	1,528	5,235	4,209	1,318	425	1,393
2003. 1/4	14,755	26.5	10,841	1,510	5,496	3,914	1,680	442	1,712
2/4	14,243	28.8	10,140	1,474	4,977	4,103	1,718	439	1,532
2001. 6	13,866	30.8	9,596	1,669	4,884	4,270	1,277	384	1,382
7	13,851	29.2	9,809	1,668	4,983	4,042	1,281	383	1,494
8	14,120	29.2	10,004	1,681	5,094	4,116	1,267	387	1,575
9	13,963	30.9	9,652	1,659	4,930	4,311	1,261	380	1,423
10	13,884	31.2	9,558	1,629	4,923	4,326	1,266	380	1,360
11	13,925	30.7	9,654	1,630	5,013	4,271	1,273	376	1,362
12	14,336	29.1	10,161	1,637	5,369	4,175	1,276	386	1,494
2002. 1	14,602	27.0	10,662	1,648	5,634	3,940	1,292	399	1,688
2	14,570	26.5	10,715	1,645	5,618	3,855	1,293	401	1,757
3	14,284	28.7	10,191	1,578	5,361	4,093	1,291	392	1,568
4	13,853	29.6	9,755	1,556	5,107	4,098	1,271	390	1,430
5	13,773	30.0	9,636	1,554	5,040	4,137	1,272	392	1,379
6	13,794	30.6	9,575	1,555	5,021	4,219	1,270	396	1,333
7	13,793	29.0	9,787	1,552	5,159	4,006	1,269	407	1,399
8	14,098	28.9	10,026	1,532	5,277	4,072	1,282	423	1,511
9	13,942	30.4	9,698	1,534	5,109	4,244	1,267	424	1,364
10	13,895	30.7	9,630	1,515	5,061	4,265	1,302	421	1,331
11	14,057	30.1	9,828	1,536	5,179	4,229	1,318	429	1,367
12	14,370	28.8	10,237	1,534	5,466	4,133	1,332	424	1,480
2003. 1	14,809	26.2	10,930	1,507	5,716	3,879	1,602	434	1,669
2	14,873	25.4	11,099	1,538	5,586	3,774	1,677	445	1,852
3	14,582	28.0	10,493	1,485	5,184	4,089	1,762	447	1,614
4	14,350	28.7	10,231	1,480	5,035	4,119	1,755	440	1,520
5	14,187	29.0	10,072	1,461	4,949	4,115	1,704	436	1,521
6	14,192	28.7	10,118	1,480	4,948	4,074	1,693	441	1,5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7> 비경제활동인구(여자)

(단위 :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활	비경활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7	9,027	22.6	6,984	1,472	4,563	2,043	663	88	197
1998	9,647	22.1	7,512	1,782	4,637	2,135	748	92	254
1999	9,665	21.9	7,545	1,850	4,535	2,120	742	101	318
2000	9,596	21.5	7,529	1,769	4,635	2,067	693	114	318
2001	9,584	20.8	7,591	1,673	4,747	1,993	683	135	353
2002	9,576	20.3	7,633	1,556	4,907	1,943	680	152	339
1999.1/4	10,062	20.6	7,985	1,918	4,876	2,077	769	91	332
2/4	9,534	22.7	7,374	1,818	4,390	2,160	746	103	318
3/4	9,538	22.1	7,428	1,839	4,424	2,110	740	108	318
4/4	9,527	22.4	7,394	1,824	4,451	2,133	714	102	302
2000.1/4	9,877	20.4	7,867	1,863	4,841	2,010	715	106	343
2/4	9,472	22.2	7,371	1,767	4,499	2,101	694	114	297
3/4	9,466	21.8	7,404	1,735	4,558	2,062	679	117	315
4/4	9,566	21.9	7,471	1,710	4,644	2,095	685	118	315
2001.1/4	9,920	19.7	7,961	1,743	5,006	1,959	700	124	388
2/4	9,408	21.6	7,375	1,659	4,564	2,033	688	134	330
3/4	9,490	20.8	7,517	1,665	4,668	1,973	676	142	367
4/4	9,517	21.1	7,511	1,626	4,751	2,006	669	138	327
2002.1/4	9,793	19.1	7,921	1,617	5,105	1,872	682	146	372
2/4	9,381	20.9	7,416	1,549	4,747	1,965	671	145	304
3/4	9,504	20.5	7,557	1,534	4,858	1,947	675	160	329
4/4	9,626	20.7	7,638	1,524	4,916	1,988	692	156	350
2003.1/4	10,053	18.6	8,184	1,506	5,341	1,869	787	147	403
2/4	9,694	20.1	7,741	1,472	4,915	1,953	841	152	361
2001. 6	9,417	21.6	7,379	1,664	4,552	2,038	687	138	338
7	9,443	20.4	7,520	1,663	4,654	1,923	681	143	379
8	9,587	20.5	7,626	1,676	4,747	1,961	676	143	384
9	9,440	21.6	7,404	1,654	4,603	2,036	670	141	338
10	9,400	21.8	7,348	1,624	4,596	2,052	669	136	323
11	9,435	21.3	7,427	1,624	4,677	2,008	671	138	317
12	9,717	20.2	7,759	1,629	4,979	1,958	668	140	342
2002. 1	9,880	18.9	8,013	1,640	5,167	1,867	681	147	378
2	9,847	18.5	8,022	1,638	5,161	1,825	683	148	392
3	9,653	19.9	7,730	1,571	4,988	1,923	684	142	345
4	9,418	20.6	7,478	1,551	4,787	1,940	671	141	328
5	9,350	20.9	7,397	1,548	4,735	1,953	673	146	296
6	9,377	21.4	7,375	1,550	4,720	2,002	668	148	290
7	9,446	20.1	7,541	1,546	4,844	1,905	677	152	322
8	9,595	20.2	7,659	1,526	4,939	1,936	681	165	349
9	9,470	21.1	7,469	1,529	4,792	2,001	669	162	317
10	9,454	21.3	7,443	1,512	4,772	2,011	684	156	320
11	9,598	20.8	7,602	1,533	4,881	1,996	692	157	340
12	9,825	19.9	7,866	1,527	5,095	1,956	699	155	390
2003. 1	10,088	18.3	8,239	1,502	5,461	1,849	734	144	399
2	10,144	17.9	8,327	1,534	5,439	1,817	779	145	431
3	9,928	19.6	7,985	1,482	5,123	1,943	849	152	379
4	9,771	20.1	7,809	1,478	4,979	1,962	853	151	349
5	9,657	20.3	7,698	1,460	4,887	1,959	838	151	363
6	9,653	20.1	7,714	1,478	4,880	1,940	832	153	3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8>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 천명, %)

	당월입직 (입직률)	신규채용 (신규채용률)	당월이직 (이직률)	퇴직및 해고 (퇴직및 해고율)
1997	121.1 (2.32)	102.3 (1.96)	138.3 (2.65)	114.6 (2.20)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1999.1/4	141.9 (2.53)	113.5 (2.02)	143.0 (2.54)	97.3 (1.73)
2/4	158.2 (2.81)	130.5 (2.31)	144.1 (2.56)	104.3 (1.85)
3/4	160.7 (2.83)	132.8 (2.34)	145.3 (2.55)	111.6 (1.96)
4/4	161.8 (2.82)	142.7 (2.49)	137.0 (2.39)	106.6 (1.86)
2000.1/4	196.1 (3.48)	167.7 (2.97)	167.4 (2.97)	131.5 (2.33)
2/4	167.9 (2.93)	147.6 (2.58)	152.7 (2.67)	117.6 (2.05)
3/4	154.4 (2.68)	136.1 (2.36)	145.1 (2.52)	115.1 (2.00)
4/4	143.9 (2.49)	125.1 (2.16)	144.7 (2.50)	117.9 (2.04)
2001.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001. 5	146.4 ((2.47)	126.1 (2.13)	140.7 (2.38)	116.8 (1.97)
6	127.2 (2.15)	117.5 (1.98)	152.9 (2.58)	127.0 (2.14)
7	137.1 (2.32)	122.5 (2.08)	152.6 (2.59)	125.4 (2.13)
8	130.7 (2.22)	120.0 (2.04)	152.2 (2.59)	128.2 (2.18)
9	133.2 (2.27)	121.4 (2.07)	138.0 (2.35)	114.2 (1.95)
10	130.0 (2.22)	118.4 (2.02)	149.4 (2.55)	128.1 (2.19)
11	130.6 (2.24)	121.2 (2.08)	141.7 (2.43)	122.9 (2.11)
12	109.7 (1.88)	100.9 (1.73)	127.5 (2.19)	104.6 (1.79)
2002. 1	126.3 (2.10)	114.8 (1.91)	126.0 (2.09)	101.1 (1.68)
2	142.0 (2.36)	120.5 (2.00)	152.1 (2.52)	126.5 (2.10)
3	215.7 (3.59)	192.1 (3.19)	197.1 (3.28)	164.6 (2.74)
4	175.0 (2.90)	154.0 (2.55)	166.8 (2.76)	132.7 (2.20)
5	151.4 (2.51)	136.5 (2.26)	159.2 (2.64)	124.7 (2.06)
6	142.0 (2.35)	130.5 (2.16)	149.0 (2.47)	114.2 (1.89)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9>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7	-	-	36.7	40.3	35.6	40.6	24.8	27.9	6.6	8.1	17.4	21.4
1998	-	-	26.7	36.3	26.6	37.4	18.0	26.3	4.1	8.3	10,9	21.5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1999. 1/4	25.2	21.3	35.1	34.7	35.3	34.4	23.4	24.6	4.8	6.1	18.3	21.7
2/4	26.9	24.8	43.4	40.8	41.0	35.5	23.0	23.2	4.9	5.3	19.1	14.5
3/4	27.0	24.7	40.8	40.3	42.9	35.6	27.2	22.5	6.5	5.2	16.3	17.0
4/4	25.8	22.6	44.7	36.7	40.8	31.9	26.6	22.2	5.9	4.7	18.0	18.9
2000. 1/4	27.7	24.4	50.7	44.3	51.0	44.4	33.6	28.7	7.3	6.4	25.8	19.2
2/4	25.5	21.7	42.0	41.8	42.6	37.9	29.8	29.5	6.1	6.9	21.9	14.9
3/4	22.8	20.7	40.4	39.2	40.3	39.6	28.7	25.3	5.3	5.0	16.9	15.2
4/4	21.4	19.1	38.9	38.8	38.9	37.6	24.2	24.2	4.3	5.5	16.3	19.4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001. 4	25.5	24.8	45.5	38.3	33.3	42.6	21.5	25.0	3.6	5.1	10.2	16.8
5	25.8	22.0	39.6	42.1	37.2	36.5	18.7	23.6	3.6	5.2	21.5	11.3
6	24.9	25.0	36.5	48.0	32.9	38.2	19.6	25.7	3.6	4.5	9.7	11.6
7	26.6	26.4	34.9	43.0	34.7	37.8	23.6	26.9	3.8	5.4	13.6	13.1
8	21.2	23.3	38.5	44.0	35.5	41.3	21.2	24.6	4.6	5.0	9.6	14.0
9	23.3	21.7	34.8	36.7	36.0	35.7	21.7	26.6	4.6	5.0	12.8	12.2
10	22.0	22.8	36.0	38.8	34.3	37.2	22.1	28.4	3.4	4.3	12.2	17.8
11	24.4	24.8	37.0	38.2	32.2	39.0	22.8	22.1	3.8	3.7	10.4	13.9
12	19.8	20.4	32.5	33.2	28.2	37.6	16.6	19.8	3.0	3.5	9.6	12.9
2002. 1	17.7	19.5	35.1	33.4	37.2	32.6	20.9	21.4	5.0	5.6	10.4	13.6
2	27.8	27.4	39.2	39.7	38.5	42.6	20.5	22.5	5.2	6.9	10.9	13.0
3	41.0	34.6	55.5	55.4	55.6	51.3	34.1	29.5	8.2	8.4	21.2	17.8
4	31.2	31.2	53.7	52.2	42.8	38.5	26.6	26.5	6.6	6.1	13.9	12.3
5	25.4	29.6	45.1	47.5	41.5	40.6	21.5	24.7	5.0	6.1	12.9	10.7
6	25.1	24.1	44.6	47.0	35.7	40.1	20.2	21.4	5.2	5.9	11.2	10.4
7	29.0	28.0	45.7	42.5	43.5	38.7	23.9	21.6	6.0	5.2	12.3	12.1
8	26.1	23.8	40.6	47.9	43.0	43.2	21.4	23.3	5.4	5.3	9.2	9.9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0>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1]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2]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7	2.45	2.93	2.63	3.03	2.84	3.21	2.48	3.08	2.04	2.23	1.38	1.69	2.89	2.93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1999.1/4	2.26	2.25	2.90	2.86	2.98	3.01	3.72	3.13	2.00	2.08	2.45	2.16	3.19	3.62
2/4	2.82	2.45	4.90	3.13	3.03	3.29	3.32	2.89	2.13	2.01	2.11	2.57	3.26	3.38
3/4	2.77	2.63	2.85	2.91	3.65	2.96	3.83	3.69	3.06	2.12	2.24	1.99	3.17	2.94
4/4	3.13	2.55	2.89	2.56	3.21	2.97	3.63	3.40	2.11	1.86	2.03	1.52	3.15	2.87
2000.1/4	3.53	2.81	3.89	3.53	3.61	3.47	3.32	3.44	2.91	2.04	2.51	2.42	4.49	3.67
2/4	2.81	2.64	3.72	3.36	3.29	3.26	2.95	2.92	2.86	2.19	2.11	1.93	3.88	3.65
3/4	2.66	2.35	3.25	3.08	3.29	3.05	3.34	3.54	2.39	2.23	1.92	1.89	3.71	3.43
4/4	2.54	2.55	2.92	3.47	2.96	2.93	3.04	2.81	2.40	2.07	1.57	1.95	3.20	2.98
2001.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001. 6	2.09	2.71	3.16	3.51	2.40	2.77	2.89	2.79	1.98	2.24	1.16	1.74	2.86	3.34
7	2.10	2.39	2.75	3.84	3.09	3.13	2.43	3.45	2.26	2.48	1.85	2.12	3.58	3.34
8	2.09	2.41	3.16	2.67	2.47	2.97	2.11	3.32	2.15	2.44	1.73	1.55	3.12	3.11
9	2.03	2.26	2.54	2.77	2.49	2.53	2.45	2.34	2.16	2.58	1.87	2.28	3.27	3.19
10	2.10	2.53	2.46	2.43	2.65	2.97	3.18	2.81	2.24	2.55	1.59	1.90	3.22	3.38
11	2.20	2.35	3.17	2.87	2.70	3.26	3.34	3.51	2.32	2.33	0.95	1.80	3.03	3.12
12	1.70	2.46	2.61	2.35	2.19	2.14	2.59	2.39	1.94	2.27	1.22	1.27	3.18	2.65
2002. 1	1.90	2.03	2.90	3.11	2.40	2.20	3.44	2.02	2.14	1.91	1.58	1.49	3.28	3.14
2	2.11	2.53	3.56	3.06	2.17	2.37	2.23	3.21	2.70	2.25	1.83	1.54	3.39	2.74
3	3.15	3.21	3.55	3.69	3.37	3.30	4.45	3.85	2.75	2.47	2.95	3.04	4.19	3.83
4	2.99	2.80	3.53	3.20	2.64	3.42	4.37	3.69	2.50	2.27	2.76	2.41	3.57	3.26
5	2.72	2.77	3.21	3.33	2.73	3.29	3.33	3.29	2.13	2.33	1.81	1.39	2.97	3.24
6	2.48	2.60	2.58	2.66	2.39	2.53	4.17	3.08	1.96	2.46	1.37	1.60	3.38	3.41
7	2.84	2.44	3.00	3.13	2.94	2.75	3.32	3.81	2.26	2.57	2.26	1.91	3.15	3.22
8	2.47	2.54	2.41	2.78	2.69	2.50	3.06	3.76	2.14	2.13	2.51	2.52	3.25	3.35
9	2.41	2.29	2.19	2.05	2.49	2.53	3.81	3.73	2.31	2.22	1.56	1.13	3.22	3.70
10	2.67	2.61	2.85	2.64	2.74	3.01	3.99	4.07	2.08	1.98	1.36	2.05	3.29	3.38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주1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주2:1999-2001년 6차산업분류, 2002년 8차산업분류.

1999-2001 도소매->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 2002 -> 도소매 및 소매

주3: 1)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 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 업					제 조 업				
	임금총액				실질임금	임금총액				실질임금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7	1,463	1,012	118	333	1,622	1,326	893	155	278	1,470
1998	1,427	1,050	100	276	1,471	1,284	920	130	234	1,324
1999	1,544	1,102	117	325	1,578	1,443	963	179	301	1,476
2000	1,668	1,182	133	352	1,668	1,568	1,024	205	338	1,568
2001	1,752	1,257	131	365	1,683	1,659	1,095	204	361	1,594
2002	1,948	1,408	126	413	1,822	1,857	1,266	197	395	1,737
2000. 1/4	1,594	1,140	121	333	1,605	1,470	989	183	298	1,481
2/4	1,610	1,170	135	304	1,624	1,505	1,012	206	287	1,518
3/4	1,721	1,199	139	383	1,712	1,637	1,046	219	371	1,628
4/4	1,744	1,217	138	389	1,725	1,655	1,050	212	394	1,637
2001. 1/4	1,718	1,225	127	365	1,669	1,625	1,064	197	364	1,579
2/4	1,675	1,246	130	299	1,609	1,579	1,081	203	295	1,517
3/4	1,793	1,268	132	394	1,713	1,706	1,110	205	391	1,630
4/4	1,825	1,289	135	401	1,746	1,728	1,125	210	393	1,654
2002. 1/4	1,862	1,371	117	374	1,765	1,744	1,218	183	342	1,653
2/4	1,860	1,396	127	338	1,740	1,747	1,250	200	297	1,634
3/4	1,994	1,415	127	452	1,856	1,909	1,273	199	437	1,778
4/4	2,076	1,453	133	490	1,924	2,028	1,321	206	501	1,879
2003. 1/4	2,102	1,494	128	481	1,915	1,984	1,336	195	452	1,807
2001. 4	1,653	1,236	130	287	1,588	1,585	1,079	205	301	1,523
5	1,548	1,249	128	171	1,489	1,418	1,084	196	138	1,363
6	1,825	1,253	133	439	1,750	1,734	1,080	207	447	1,663
7	1,738	1,267	132	340	1,663	1,628	1,100	202	326	1,558
8	1,700	1,265	131	304	1,621	1,663	1,114	205	344	1,585
9	1,942	1,272	132	537	1,853	1,829	1,118	205	503	1,745
10	1,670	1,267	139	264	1,594	1,592	1,110	218	263	1,519
11	1,590	1,270	134	186	1,526	1,447	1,113	210	123	1,388
12	2,215	1,329	132	754	2,122	2,148	1,153	201	795	2,057
2002. 1	1,763	1,379	116	268	1,679	1,638	1,224	179	235	1,560
2	2,017	1,345	111	560	1,912	1,939	1,187	170	582	1,838
3	1,805	1,388	124	294	1,701	1,655	1,244	200	211	1,560
4	1,862	1,384	126	352	1,745	1,742	1,236	199	307	1,633
5	1,712	1,400	127	184	1,599	1,602	1,256	203	143	1,496
6	2,006	1,403	127	476	1,874	1,897	1,257	198	442	1,773
7	1,939	1,413	128	398	1,817	1,875	1,267	200	408	1,757
8	1,901	1,410	128	364	1,770	1,826	1,268	201	356	1,700
9	2,141	1,421	127	593	1,983	2,026	1,284	195	547	1,876
10	1,884	1,428	134	322	1,750	1,837	1,303	210	324	1,706
11	1,778	1,425	130	223	1,650	1,607	1,282	202	123	1,491
12	2,563	1,505	135	923	2,367	2,637	1,377	205	1,055	2,435
2003. 1	2,384	1,502	128	754	2,187	2,315	1,348	198	769	2,124
2	1,962	1,467	124	371	1,790	1,831	1,294	187	351	1,671
3	1,962	1,514	131	317	1,769	1,808	1,369	201	237	1,630
4	2,012	1,503	131	379	1,818	1,882	1,341	201	340	1,700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6～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전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7	1,463	333	1,535	310	1,326	278	2,079	638	1,624	275	1,427	300	1,202	251
1998	1,427	276	1,525	266	1,284	234	2,022	483	1,502	166	1,397	254	1,178	223
1999	1,544	325	1,563	274	1,443	301	2,304	565	1,576	245	1,426	260	1,052	123
2000	1,668	352	1,679	313	1,568	338	2,458	536	1,701	274	1,548	284	1,106	121
2001	1,752	365	1,745	309	1,659	361	2,835	715	1,687	221	1,725	331	1,174	129
2002	1,948	413	1,938	371	1,857	395	3,206	822	1,859	251	1,888	356	1,364	224
1999. 1/4	1,467	282	1,407	173	1,342	245	2,221	458	1,520	229	1,354	225	1,030	110
2/4	1,479	264	1,525	250	1,385	242	2,318	570	1,484	167	1,359	186	996	97
3/4	1,583	368	1,665	352	1,474	334	2,101	414	1,666	337	1,464	294	1,110	159
4/4	1,644	383	1,658	320	1,567	380	2,595	834	1,627	245	1,528	332	1,072	125
2000. 1/4	1,594	333	1,542	246	1,470	298	2,290	421	1,670	293	1,429	229	1,068	126
2/4	1,610	304	1,624	265	1,505	287	2,348	477	1,579	164	1,475	214	1,094	102
3/4	1,721	383	1,790	408	1,637	371	2,579	649	1,791	349	1,630	343	1,135	137
4/4	1,744	389	1,765	333	1,655	394	2,615	598	1,764	288	1,657	350	1,129	119
2001. 1/4	1,718	365	1,587	204	1,625	364	2,744	676	1,632	206	1,644	288	1,138	134
2/4	1,675	299	1,747	325	1,579	295	2,660	624	1,632	174	1,644	247	1,148	107
3/4	1,793	394	1,837	375	1,706	391	2,709	612	1,772	281	1,751	343	1,212	153
4/4	1,825	401	1,812	334	1,728	393	3,230	951	1,716	224	1,863	447	1,200	124
2002. 1/4	1,862	374	1,825	309	1,744	342	2,938	646	1,794	239	1,826	323	1,299	188
2/4	1,860	338	1,883	321	1,747	297	2,845	535	1,772	182	1,819	290	1,337	205
3/4	1,994	452	1,990	421	1,909	437	3,401	1,032	1,932	310	1,925	386	1,385	237
4/4	2,076	490	2,057	437	2,028	501	3,636	1,074	1,937	274	1,983	427	1,436	266
2003. 1/4	2,102	481	2,112	446	1,984	452	3,527	814	2,058	340	2,064	417	1,409	197
2001. 4	1,653	287	1,615	227	1,585	301	2,575	569	1,529	94	1,569	184	1,151	120
5	1,548	171	1,568	145	1,418	138	2,126	98	1,627	162	1,579	168	1,117	67
6	1,825	439	2,058	605	1,734	447	3,281	1,207	1,740	267	1,785	390	1,177	134
7	1,738	340	1,580	119	1,628	326	2,230	128	1,741	251	1,731	321	1,212	146
8	1,700	304	1,830	365	1,663	344	2,304	193	1,581	86	1,602	193	1,164	112
9	1,942	537	2,105	643	1,829	503	3,594	1,515	1,994	506	1,921	515	1,260	200
10	1,607	264	1,617	164	1,592	264	2,369	229	1,555	74	1,644	238	1,213	144
11	1,590	186	1,631	157	1,447	123	2,774	533	1,633	149	1,569	174	1,136	65
12	2,215	754	2,188	683	2,148	795	4,548	2,090	1,958	448	2,377	931	1,250	161
2002. 1	1,763	268	1,628	85	1,638	235	2,479	148	1,762	195	1,686	181	1,264	141
2	2,017	560	1,841	416	1,939	582	2,946	629	1,877	356	1,983	493	1,381	284
3	1,805	294	2,006	428	1,655	211	3,388	1,162	1,743	165	1,810	296	1,253	140
4	1,862	352	1,689	133	1,742	307	2,696	418	1,790	207	1,800	280	1,366	239
5	1,712	184	1,761	161	1,602	143	2,473	169	1,675	88	1,666	131	1,236	103
6	2,006	476	2,203	672	1,897	442	3,364	1,018	1,852	252	1,993	460	1,409	273
7	1,939	398	1,779	211	1,875	408	2,915	574	1,867	258	1,842	299	1,355	215
8	1,901	364	1,928	349	1,826	356	2,669	341	1,796	177	1,826	297	1,399	253
9	2,141	593	2,264	704	2,026	547	4,615	2,176	2,133	496	2,106	562	1,400	243
10	1,884	322	1,822	205	1,837	324	2,846	396	1,760	112	1,838	300	1,414	253
11	1,778	223	1,771	173	1,607	123	2,718	211	1,768	125	1,690	148	1,345	173
12	2,563	923	2,578	934	2,637	1,055	5,348	2,618	2,282	585	2,418	830	1,548	373
2003. 1	2,384	754	2,159	473	2,315	769	3,312	650	2,312	591	2,247	571	1,458	230
2	1,962	371	1,957	348	1,831	351	3,307	539	1,947	264	1,989	373	1,448	242
3	1,962	317	2,212	517	1,808	237	3,956	1,250	1,918	166	1,960	309	1,312	118
4	2,012	379	1,896	218	1,882	340	3,155	432	1,925	174	2,012	367	1,440	222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7	1,398	292	2,054	678	1,362	298	2,202	665	1,462	347	1,820	452
1998	1,351	222	1,967	550	1,329	240	2,190	607	1,484	316	1,765	364
1999	1,555	309	2,185	713	1,404	238	1,831	373	1,531	278	1,575	314
2000	1,744	352	2,396	777	1,495	247	1,932	381	1,581	258	1,756	380
2001	1,777	319	2,592	851	1,550	238	1,948	364	1,708	310	1,772	338
2002	1,926	389	2,941	1,022	1,753	249	2,393	540	1,824	390	1,869	383
1999. 1/4	1,485	259	2,112	677	1,325	174	1,830	416	1,550	298	1,493	231
2/4	1,556	320	2,010	552	1,324	186	1,759	298	1,523	258	1,549	277
3/4	1,537	304	2,264	845	1,464	282	1,931	453	1,536	286	1,609	365
4/4	1,641	352	2,350	776	1,504	310	1,803	328	1,514	272	1,650	385
2000. 1/4	1,632	294	2,491	937	1,421	222	1,887	379	1,543	239	1,653	329
2/4	1,781	398	2,215	634	1,453	205	1,905	365	1,611	249	1,732	384
3/4	1,759	351	2,428	804	1,528	272	1,970	393	1,573	273	1,768	356
4/4	1,799	363	2,452	734	1,575	287	1,967	386	1,596	273	1,868	452
2001. 1/4	1,686	265	2,694	971	1,532	249	1,929	390	1,664	292	1,718	319
2/4	1,781	338	2,336	630	1,495	184	1,902	318	1,666	263	1,722	294
3/4	1,794	337	2,649	905	1,568	249	1,995	400	1,795	396	1,783	346
4/4	1,851	338	2,691	898	1,606	269	1,965	349	1,706	287	1,867	391
2002. 1/4	1,764	305	3,026	1,132	1,699	226	2,309	472	1,766	346	1,760	310
2/4	1,930	412	2,720	827	1,727	219	2,312	467	1,766	359	1,786	315
3/4	1,959	402	2,936	1,045	1,764	256	2,527	663	1,874	421	1,918	428
4/4	2,051	438	3,080	1,087	1,823	295	2,421	557	1,891	436	2,011	479
2003. 1/4	2,040	426	3,520	1,391	1,817	259	2,539	651	1,888	379	1,977	398
2001. 4	1,870	438	2,265	585	1,434	128	1,836	304	1,586	243	1,680	236
5	1,571	128	2,148	430	1,430	115	1,884	316	1,624	226	1,598	170
6	1,904	448	2,598	876	1,621	309	1,985	334	1,788	319	1,888	477
7	1,646	163	2,776	1,071	1,530	213	1,986	395	1,707	281	1,726	294
8	1,846	407	2,258	522	1,470	151	1,881	305	1,740	381	1,674	246
9	1,887	441	2,913	1,176	1,704	382	2,118	500	1,939	527	1,949	499
10	1,756	283	2,382	666	1,429	120	1,881	292	1,671	189	1,717	272
11	1,700	221	2,234	496	1,423	108	1,985	384	1,587	207	1,693	230
12	2,096	511	3,461	1,537	1,964	579	2,030	370	1,860	466	2,191	670
2002. 1	1,667	231	2,894	924	1,619	148	2,368	502	1,650	212	1,637	185
2	1,943	490	3,335	1,479	1,763	297	2,200	438	1,943	538	1,920	485
3	1,682	195	2,850	991	1,716	232	2,358	476	1,706	288	1,724	260
4	2,008	511	2,783	918	1,725	223	2,287	440	1,732	334	1,760	294
5	1,654	136	2,465	559	1,650	142	2,304	459	1,624	219	1,637	167
6	2,128	589	2,913	1,005	1,806	292	2,346	504	1,943	524	1,961	485
7	1,745	189	2,990	1,092	1,702	193	2,557	670	1,789	341	1,913	420
8	2,088	533	2,583	700	1,722	215	2,315	466	1,831	390	1,768	287
9	2,045	486	3,236	1,341	1,868	360	2,707	853	2,003	531	2,075	578
10	1,844	275	2,586	701	1,685	174	2,320	471	1,796	340	1,831	327
11	2,014	449	2,672	732	1,639	124	2,416	547	1,674	227	1,705	214
12	2,295	590	3,983	1,830	2,144	588	2,527	655	2,204	742	2,499	896
2003. 1	2,093	507	4,529	2,366	1,904	350	2,961	1,077	1,989	470	2,172	593
2	2,144	540	2,882	783	1,723	172	2,191	315	1,889	393	1,915	345
3	1,882	229	3,155	1,025	1,831	255	2,434	554	1,771	270	1,850	257
4	2,245	591	2,932	835	1,784	213	2,424	505	1,861	338	1,919	332

<표 33>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7	1,344	260	-	-	1,283	209	1,342	262
1998	1,310	209	-	-	1,255	174	1,307	207
1999	1,401	244	1,192	138	1,376	241	1,439	253
2000	1,530	274	1,274	152	1,497	266	1,567	267
2001	1,615	281	1,344	153	1,606	278	1,680	294
2002	1,775	325	1,466	178	1,705	290	1,856	356
1999. 1/4	1,351	221	1,183	131	1,333	224	1,389	238
2/4	1,330	183	1,140	94	1,313	172	1,340	176
3/4	1,453	298	1,228	180	1,430	304	1,500	309
4/4	1,467	274	1,216	146	1,425	264	1,522	286
2000. 1/4	1,472	268	1,243	151	1,480	289	1,498	260
2/4	1,481	233	1,242	113	1,422	201	1,516	231
3/4	1,582	310	1,317	194	1,560	318	1,624	296
4/4	1,582	285	1,292	149	1,524	256	1,630	282
2001. 1/4	1,577	280	1,321	158	1,600	309	1,622	277
2/4	1,545	223	1,294	109	1,510	195	1,605	232
3/4	1,662	314	1,391	191	1,667	319	1,737	331
4/4	1,677	308	1,370	156	1,648	289	1,757	338
2002. 1/4	1,711	301	1,437	173	1,679	293	1,794	335
2/4	1,709	282	1,421	149	1,654	258	1,789	310
3/4	1,826	368	1,519	227	1,745	325	1,919	410
4/4	1,855	367	1,503	187	1,767	321	1,925	394
2003. 1/4	1,865	351	1,509	175	1,787	311	1,965	409
2001. 4	1,527	216	1,282	102	1,503	193	1,568	217
5	1,453	130	1,258	73	1,431	113	1,504	134
6	1,654	323	1,341	151	1,596	279	1,744	345
7	1,630	282	1,375	176	1,650	304	1,708	301
8	1,558	211	1,289	92	1,533	182	1,606	204
9	1,799	449	1,507	305	1,820	423	1,896	488
10	1,554	205	1,290	89	1,530	186	1,600	202
11	1,497	145	1,278	71	1,503	156	1,540	141
12	1,981	573	1,542	308	1,912	525	2,133	675
2002. 1	1,649	229	1,406	142	1,583	184	1,771	302
2	1,811	426	1,488	236	1,807	440	1,856	431
3	1,674	249	1,418	140	1,646	255	1,755	272
4	1,702	270	1,383	113	1,605	207	1,792	301
5	1,602	153	1,365	83	1,540	132	1,668	162
6	1,815	364	1,468	180	1,741	331	1,890	390
7	1,792	329	1,491	198	1,717	297	1,881	360
8	1,714	261	1,419	134	1,613	196	1,802	301
9	1,974	516	1,645	349	1,905	482	2,073	569
10	1,695	228	1,411	111	1,615	191	1,739	225
11	1,670	202	1,389	79	1,604	171	1,739	231
12	2,198	671	1,709	369	2,082	602	2,297	724
2003. 1	2,067	548	1,648	312	1,939	462	2,252	694
2	1,734	242	1,424	97	1,677	216	1,761	227
3	1,793	263	1,455	116	1,748	255	1,884	307
4	1,813	277	1,450	103	1,695	199	1,880	299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7	1,418	317	1,739	500	1,619	419	1,774	524
1998	1,382	252	1,720	446	1,570	338	1,765	480
1999	1,561	327	1,973	567	1,794	456	2,019	595
2000	1,713	385	2,147	624	1,973	516	2,195	655
2001	1,785	384	2,276	683	2,135	564	2,313	714
2002	2,067	476	2,629	761	2,357	597	2,718	815
1999. 1/4	1,464	271	1,813	464	1,668	378	1,850	486
2/4	1,503	282	1,921	506	1,742	417	1,966	529
3/4	1,610	375	1,974	578	1,837	494	2,008	599
4/4	1,662	379	2,185	719	1,927	533	2,251	767
2000. 1/4	1,598	340	2,018	558	1,877	477	2,059	581
2/4	1,689	367	2,057	551	1,879	446	2,107	581
3/4	1,751	405	2,202	636	2,007	542	2,255	663
4/4	1,812	428	2,306	750	2,130	600	2,354	791
2001. 1/4	1,711	353	2,253	689	2,069	561	2,301	722
2/4	1,739	356	2,176	591	2,068	505	2,205	613
3/4	1,800	395	2,291	697	2,164	583	2,324	727
4/4	1,893	433	2,387	756	2,243	607	2,424	794
2002. 1/4	1,908	390	2,454	661	2,194	502	2,538	713
2/4	1,958	407	2,460	647	2,233	521	2,534	688
3/4	2,119	513	2,652	780	2,384	608	2,739	835
4/4	2,233	578	2,946	971	2,577	739	3,065	1,047
2003. 1/4	2,150	483	2,936	936	2,394	564	3,123	1,063
2001. 4	1,729	352	2,135	560	2,017	459	2,165	586
5	1,591	199	1,913	331	1,913	344	1,913	328
6	1,898	518	2,481	880	2,274	713	2,534	923
7	1,724	319	2,150	562	1,979	408	2,194	601
8	1,775	374	2,240	658	2,108	528	2,274	692
9	1,902	493	2,483	872	2,406	814	2,503	887
10	1,769	346	2,112	488	1,980	372	2,146	518
11	1,631	205	1,945	340	2,055	456	1,916	310
12	2,279	749	3,107	1,444	2,695	995	3,213	1,560
2002. 1	1,810	277	2,210	423	2,080	359	2,253	445
2	2,066	583	2,828	1,088	2,434	793	2,957	1,185
3	1,849	310	2,322	472	2,069	356	2,405	510
4	2,032	474	2,496	679	2,325	613	2,551	701
5	1,834	243	2,145	307	2,019	209	2,186	312
6	2,157	559	2,757	914	2,469	718	2,850	978
7	2,072	460	2,518	672	2,280	519	2,594	722
8	2,029	427	2,638	768	2,365	585	2,726	828
9	2,257	652	2,802	898	2,507	721	2,897	956
10	2,034	406	2,629	691	2,355	554	2,718	735
11	1,949	330	2,205	307	2,200	393	2,206	279
12	2,715	999	4,004	1,917	3,175	1,270	4,274	2,127
2003. 1	2,363	678	3,501	1,477	2,671	785	3,786	1,715
2	2,061	427	2,753	825	2,351	577	2,892	910
3	2,027	344	2,556	506	2,161	331	2,689	566
4	2,204	510	2,714	736	2,448	619	2,802	776

<표 34> 성별 · 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7	1,635	1,124	136	375	1,015	721	73	221
1998	1,579	1,157	115	307	1,006	755	61	191
1999	1,735	1,226	136	373	1,090	808	72	210
2000	1,885	1,320	156	408	1,178	870	81	227
2001	1,976	1,400	156	420	1,257	940	75	242
2002	2,193	1,574	148	472	1,393	1,035	76	282
1999. 1/4	1,638	1,199	122	317	1,058	794	65	199
2/4	1,661	1,218	138	305	1,042	804	74	165
3/4	1,779	1,221	137	421	1,116	801	72	243
4/4	1,858	1,264	146	448	1,141	832	78	231
2000. 1/4	1,801	1,274	141	386	1,123	836	75	212
2/4	1,818	1,306	159	353	1,139	864	81	194
3/4	1,947	1,341	162	443	1,213	880	85	249
4/4	1,971	1,358	162	450	1,236	901	83	252
2001. 1/4	1,940	1,367	151	423	1,227	912	76	239
2/4	1,890	1,387	157	346	1,200	934	72	194
3/4	2,014	1,409	158	448	1,302	953	74	274
4/4	2,060	1,436	161	464	1,300	961	78	261
2002. 1/4	2,088	1,528	137	423	1,344	1,012	71	262
2/4	2,091	1,558	149	384	1,337	1,027	77	233
3/4	2,242	1,581	149	512	1,435	1,040	78	317
4/4	2,352	1,627	157	568	1,455	1,061	79	314
2003. 1/4	2,376	1,674	150	552	1,487	1,090	77	320
2001. 4	1,868	1,379	156	333	1,176	919	71	186
5	1,740	1,391	154	195	1,122	934	70	118
6	2,061	1,391	159	511	1,301	947	75	279
7	1,944	1,407	159	379	1,281	955	72	254
8	1,914	1,406	156	351	1,224	950	75	200
9	2,185	1,414	158	614	1,401	956	76	368
10	1,876	1,408	164	304	1,212	955	82	175
11	1,785	1,414	160	211	1,156	950	77	129
12	2,521	1,486	158	877	1,533	977	75	481
2002. 1	1,974	1,537	136	301	1,281	1,019	70	192
2	2,268	1,500	130	638	1,445	992	69	384
3	2,024	1,548	145	331	1,307	1,024	74	209
4	2,096	1,544	147	405	1,331	1,023	76	233
5	1,922	1,564	150	208	1,237	1,030	77	130
6	2,255	1,568	149	538	1,441	1,029	77	335
7	2,174	1,578	150	447	1,409	1,042	78	289
8	2,148	1,576	150	422	1,345	1,035	77	233
9	2,404	1,589	149	666	1,551	1,044	78	429
10	2,129	1,598	158	373	1,337	1,047	82	208
11	1,997	1,592	154	251	1,289	1,050	77	162
12	2,931	1,691	160	1,079	1,739	1,087	79	573
2003. 1	2,684	1,683	151	849	1,711	1,095	77	539
2	2,226	1,642	146	438	1,369	1,073	75	221
3	2,220	1,697	154	369	1,381	1,101	80	200
4	2,278	1,683	154	440	1,418	1,099	78	242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표 35> 최저임금제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원)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최저임금(월환산액)	인 상 률
1988	1그룹 : 462.5	3,700	111,000(240시간 기준)	-
	2그룹 : 487.5	3,900	117,000(240시간 기준)	-
1989	600	4,800	144,000(240시간 기준)	-
1990	690	5,520	165,600(240시간 기준)	15.0
1991	820	6,560	192,700(235시간 기준)	18.8
1992	925	7,400	209,050(226시간 기준)	12.8
1993	1,005	8,040	227,130(226시간 기준)	8.6
1994. 1월~1994. 8월	1,085	8,680	245,210(226시간 기준)	8.0
1994. 9월~1995. 8월	1,170	9,360	264,420(226시간 기준)	7.8
1995. 9월~1996. 8월	1,275	10,200	288,150(226시간 기준)	9.0
1996. 9월~1997. 8월	1,400	11,200	316,400(226시간 기준)	9.8
1997. 9월~1998. 8월	1,485	11,880	335,610(226시간 기준)	6.1
1998. 9월~1999. 8월	1,525	12,200	344,650(226시간 기준)	2.7
1999. 9월~2000. 8월	1,600	12,800	361,600(226시간 기준)	4.9
2000. 9월~2001. 8월	1,865	14,920	421,490(226시간 기준)	16.5
2001. 9월~2002. 8월	2,100	16,800	474,600(226시간 기준)	12.6
2002. 9월~2003. 8월	2,275	18,200	514,150(226시간 기준)	8.3

주 : 1) 1988년의 1그룹과 2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의 12업종.

2그룹 : 1그룹 외의 제조업 19업종.

2) 최초 실시연도인 1988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는 10인 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됨. 1990년부터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1999년부터는 5인 이상 전산업으로 그리고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됨.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6>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적용업종	적용대상근로자 (천명)	수혜근로자 (천명)	영향률 (%)
1988	10인 이상 제조업	2,267	94	4.2
1989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3	328	10.7
1990	10인 이상 전산업	4,386	187	4.3
1991	10인 이상 전산업	4,556	393	8.6
1992	10인 이상 전산업	4,620	392	8.5
1993	10인 이상 전산업	5,045	228	4.5
1994.1.～1994.8.	10인 이상 전산업	4,916	102	2.1
1994.9.～1995.8.	10인 이상 전산업	4,864	103	2.1
1995.9.～1996.8.	10인 이상 전산업	5,381	103	1.9
1996.9.～1997.8.	10인 이상 전산업	5,240	127	2.4
1997.9.～1998.8.	10인 이상 전산업	5,325	124	2.3
1998.9.～1999.8.	10인 이상 전산업	5,136	23	0.4
1999.9.～2000.8.	5인 이상 전산업	5,031	54	1.1
2000.9.～2001.8.	5인 이상 전산업 (～2000. 11. 23)	5,367	98	1.8
	1인 이상 전산업 (2000. 11. 24～)	6,692	141	2.1
2001.9.～2002.8.	1인 이상 전산업	7,152	201	2.8
2002.9.～2003.8.	1인 이상 전산업	상용 : 7,421 전체 : 13,216	상용 : 215 전체 : 849	상용 : 2.9 전체 : 6.4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적용대상근로자수×100
2) 2002. 8까지는 노동부기준 상용근로자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7>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단위 : 천원,%)

	소 득		근로소득		가계지출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6	2,153	12.6	1,838	11.9	1,603	13.7
1997	2,287	6.3	1,939	5.5	1,677	4.6
1998	2,133	-6.7	1,816	-6.4	1,536	-8.4
1999	2,225	4.3	1,873	3.2	1,731	12.6
2000	2,387	7.3	2,008	7.2	1,888	9.1
2001	2,625	10.0	2,211	10.1	2,058	9.0
2002	2,792	6.4	2,380	7.7	2,136	3.8
1998. 1/4	2,232	-2.8	1,921	-0.1	1,584	-7.1
2/4	2,095	-5.3	1,744	-6.8	1,465	-10.7
3/4	2,072	-14.4	1,798	-12.8	1,463	-13.9
4/4	2,134	-3.8	1,798	-5.3	1,633	-1.9
1999. 1/4	2,222	-0.5	1,816	-5.5	1,725	8.9
2/4	2,102	0.4	1,772	1.6	1,662	13.5
3/4	2,248	8.5	1,974	9.8	1,711	17.0
4/4	2,327	9.1	1,932	7.4	1,823	11.7
2000. 1/4	2,349	5.7	1,943	7.0	1,919	11.2
2/4	2,331	10.9	1,953	10.2	1,841	10.7
3/4	2,443	8.6	2,087	5.7	1,872	9.4
4/4	2,425	4.2	2,051	6.2	1,921	5.4
2001. 1/4	2,580	9.8	2,150	10.7	2,060	7.4
2/4	2,476	6.2	2,106	7.8	1,974	7.3
3/4	2,735	12.0	2,297	10.0	2,079	11.0
4/4	2,710	11.8	2,290	11.6	2,117	10.2
2002. 1/4	2,788	8.1	2,317	7.8	2,201	6.8
2/4	2,714	9.6	2,305	9.5	2,084	5.6
3/4	2,863	4.7	2,457	7.0	2,153	3.6
4/4	2,804	3.5	2,439	6.5	2,106	-0.5
2003. 1/4	2,908	4.3	2,541	9.6	2,300	4.5

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근로자가구 평균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표 38>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단위 : 천원,%)

	평균		2인		3인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7	1,677	4.6	1,293	1.6	1,574	8.1
1998	1,536	-8.4	1,177	-9.0	1,411	-10.4
1999	1,731	12.6	1,339	13.7	1,566	11.0
2000	1,888	9.1	1,437	7.3	1,684	7.5
2001	2,058	9.0	1,553	8.1	1,874	11.3
2002	2,136	3.8	1,660	6.9	2,012	7.3
1999. 1/4	1,725	8.9	1,323	9.4	1,552	9.1
2/4	1,662	13.5	1,311	12.9	1,503	11.4
3/4	1,711	17.0	1,308	16.9	1,548	13.6
4/4	1,823	11.7	1,415	15.9	1,662	10.2
2000. 1/4	1,919	11.2	1,438	8.7	1,710	10.2
2/4	1,841	10.7	1,433	9.3	1,586	5.5
3/4	1,872	9.4	1,413	8.0	1,672	8.0
4/4	1,921	5.4	1,464	3.5	1,767	6.3
2001. 1/4	2,060	7.4	1,493	3.8	1,865	9.1
2/4	1,974	7.3	1,462	2.0	1,789	12.8
3/4	2,079	11.0	1,625	15.0	1,884	12.7
4/4	2,117	10.2	1,633	11.5	1,959	10.9
2002. 1/4	2,201	6.8	1,720	15.2	2,043	9.5
2/4	2,084	5.6	1,613	10.4	1,967	9.9
3/4	2,153	3.6	1,684	3.6	2,034	8.0
4/4	2,106	-0.5	1,623	-0.6	2,004	2.3
2003. 1/4	2,300	4.5	1,674	-2.7	2,178	6.6

	4인		5인		6인 이상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7	1,762	4.0	2,013	8.4	2,046	-2.1
1998	1,617	-8.2	1,825	-9.3	2,142	4.7
1999	1,873	15.8	2,055	12.6	2,181	1.8
2000	2,080	11.0	2,304	12.1	2,458	12.7
2001	2,245	7.9	2,581	12.0	2,752	11.9
2002	2,315	3.1	2,652	2.7	2,714	-1.3
1999. 1/4	1,871	11.6	2,052	9.0	2,184	-3.7
2/4	1,797	17.8	1,969	14.8	1,979	-6.5
3/4	1,855	21.3	2,041	17.9	2,171	5.4
4/4	1,969	13.3	2,157	9.5	2,389	12.4
2000. 1/4	2,081	11.2	2,428	18.3	2,430	11.3
2/4	2,027	12.8	2,235	13.5	2,795	41.2
3/4	2,090	12.7	2,273	11.4	2,273	4.7
4/4	2,120	7.7	2,278	5.6	2,335	-2.3
2001. 1/4	2,263	8.7	2,617	7.8	2,714	11.7
2/4	2,207	8.9	2,379	6.5	2,588	-7.4
3/4	2,252	7.7	2,595	14.2	2,808	23.5
4/4	2,258	6.5	2,732	19.9	2,896	24.0
2002. 1/4	2,361	4.3	2,801	7.0	2,901	6.9
2/4	2,263	2.5	2,648	11.3	2,516	-2.8
3/4	2,329	3.4	2,678	3.2	2,713	-3.4
4/4	2,310	2.3	2,479	-9.2	2,728	-5.8
2003. 1/4	2,534	7.4	2,657	-5.1	2,716	-6.4

주 · 자료 : <표 37>과 동일.

<표 39> 노동생산성 및 노임단가지수 추이(제조업)

(단위 : 1995,2000=100)

	물적노동생산성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달러)
	전체종사원	상용근로자 기준	전체종사원 기준	상용근로자 기준	상용근로자 기준
1996	113.2	113.4	111.3	100.6	96.4
1997	127.6	128.5	125.7	94.5	76.6
1998	145.7	146.0	141.6	83.7	46.0
1999	92.3	91.6	92.8	99.2	64.3
2000	100.0	100.0	100.0	100.0	68.2
2001	97.9	99.3	99.2	108.8	65.0
2002	105.8	107.5	106.3	113.8	70.2
1996. 1/4	108.3	108.2	107.7	99.7	98.2
2/4	113.5	113.5	112.1	93.1	91.3
3/4	112.6	112.9	111.4	109.0	102.9
4/4	118.5	119.2	114.6	100.8	93.5
1997. 1/4	119.5	120.4	119.3	100.6	89.1
2/4	127.6	128.6	126.2	90.7	78.5
3/4	129.9	130.7	127.5	100.1	85.9
4/4	133.9	134.5	129.1	87.4	59.0
1998. 1/4	137.5	138.1	136.4	90.3	43.4
2/4	139.5	139.7	139.6	83.6	46.2
3/4	142.5	142.7	139.3	83.4	48.5
4/4	163.4	163.6	150.3	78.2	47.1
1999. 1/4	87.9	87.0	88.9	102.0	65.7
2/4	89.8	89.1	92.5	96.5	62.5
3/4	91.7	91.3	93.6	102.3	66.0
4/4	98.6	98.1	95.8	96.7	63.6
2000. 1/4	98.0	98.0	95.3	95.7	65.6
2/4	100.7	100.7	101.3	95.6	66.1
3/4	101.6	101.3	104.4	104.7	72.4
4/4	100.0	99.9	98.7	103.8	68.6
2001. 1/4	95.0	96.5	96.8	110.4	67.0
2/4	97.5	99.1	98.9	102.5	60.6
3/4	97.3	98.7	101.0	112.6	67.1
4/4	101.1	102.8	101.0	109.4	65.3
2002. 1/4	104.0	105.7	103.6	112.6	65.8
2/4	105.1	107.0	105.2	105.6	64.3
3/4	105.0	106.9	107.2	119.6	77.0
4/4	108.7	110.2	108.5	117.3	74.2

주 : 1)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불변GDP)}}{\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단위노동비용지수 = $\frac{\text{임금비용지수(MH)}}{\text{노동생산성지수(MH)}} \times 100$

2) 1998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의 조사결과로서 1995=100.0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5인이상, 2000=100.0기준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4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매및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7	203.0	23.4	190.8	21.6	207.6	29.3	213.5	30.5	193.4	8.1	194.3	10.3	198.7	16.6
1998	199.2	20.0	190.0	20.6	200.0	23.8	212.6	28.8	192.4	6.8	193.9	9.0	194.6	10.6
1999	206.6	22.6	192.9	21.4	216.0	33.3	195.4	8.0	198.1	9.8	203.1	12.6	203.1	12.6
2000	204.8	23.4	193.6	23.4	213.1	33.3	193.2	8.7	194.2	8.7	204.2	14.5	204.2	14.5
2001	202.4	20.4	191.4	23.2	208.7	29.8	213.2	30.5	192.9	6.2	193.7	8.8	204.3	13.5
2002	199.6	18.0	195.7	23.6	206.4	28.7	207.2	26.2	190.5	5.4	191.7	8.1	200.0	10.3
1999. 1/4	197.6	21.2	180.4	17.4	205.7	30.4	201.0	25.6	186.5	7.9	190.7	10.3	197.8	12.9
2/4	208.7	23.0	195.6	22.7	218.9	33.9	213.7	24.4	198.1	7.7	200.5	10.4	204.3	12.9
3/4	206.0	22.7	193.2	21.8	214.6	33.5	214.9	25.3	194.3	8.4	197.5	9.7	201.6	11.8
4/4	214.0	23.5	202.6	23.5	224.5	35.2	216.2	28.4	202.4	8.0	203.5	8.9	208.5	12.8
2000. 1/4	205.1	23.1	188.8	19.3	213.1	33.0	209.2	27.1	192.9	8.4	194.4	8.5	204.8	15.1
2/4	203.9	24.1	194.4	24.2	212.5	33.9	208.1	29.0	190.7	8.5	193.2	9.2	203.9	14.5
3/4	201.7	23.2	191.8	24.2	209.7	33.3	207.3	27.0	191.2	8.9	191.8	8.7	202.4	14.6
4/4	208.4	23.3	199.7	26.1	217.2	33.0	214.0	27.3	198.0	9.1	197.7	8.6	205.7	13.7
2001. 1/4	198.8	21.4	186.5	21.9	206.0	30.1	204.0	26.5	186.5	5.7	189.3	8.6	198.6	13.0
2/4	203.7	20.4	194.2	23.5	211.2	30.1	213.8	29.5	193.6	6.4	194.9	9.1	206.0	13.7
3/4	204.2	20.0	191.9	23.9	208.8	29.5	219.9	33.0	196.7	6.5	196.5	9.3	207.7	15.6
4/4	203.3	19.8	193.0	23.7	208.9	29.6	215.5	33.3	195.0	6.5	194.3	8.4	205.3	13.8
2002. 1/4	193.6	17.3	186.3	19.9	199.2	27.1	195.9	22.9	184.7	6.1	187.0	8.2	194.3	9.8
2/4	202.2	18.3	203.0	29.3	210.3	29.5	206.6	25.7	192.4	5.0	193.2	8.0	202.3	10.2
3/4	197.6	18.1	191.1	21.5	203.0	28.7	208.3	25.7	189.3	5.1	190.6	8.4	200.0	10.8
4/4	205.0	18.5	202.4	23.7	213.1	29.5	217.8	30.3	195.6	5.2	195.9	7.9	203.4	10.5
2003. 1/4	196.0	17.3	191.6	22.8	203.5	27.6	206.6	26.4	185.4	4.6	187.0	7.5	192.6	8.7
2001. 4	200.0	21.2	190.1	22.6	208.5	30.3	207.6	27.6	188.1	6.3	190.1	8.8	202.0	13.2
5	206.4	19.8	198.5	24.2	212.9	29.2	213.8	28.2	197.1	6.2	198.6	9.4	209.0	14.5
6	204.5	20.2	193.9	23.6	212.0	30.6	220.0	32.8	195.4	6.7	195.8	9.1	206.9	13.3
7	204.4	20.3	189.9	24.1	209.9	29.7	217.5	33.8	196.7	7.1	196.7	10.0	207.8	13.8
8	204.5	19.8	191.0	24.4	206.0	29.0	222.4	33.4	199.6	6.2	197.7	8.9	210.7	13.6
9	203.6	19.8	194.9	23.1	210.2	29.9	219.8	31.7	193.6	6.0	195.0	8.9	204.5	13.3
10	197.1	20.1	182.2	22.2	202.7	30.1	206.0	33.7	187.1	6.0	187.9	8.8	199.7	13.8
11	210.2	19.8	201.8	24.6	216.7	30.2	221.5	31.3	202.6	6.5	201.2	8.2	209.0	13.0
12	202.4	19.3	194.7	24.2	207.2	28.4	218.8	34.7	195.3	6.9	193.7	8.2	207.0	14.6
2002. 1	206.3	17.4	197.3	17.3	211.5	26.4	207.7	24.3	199.8	6.6	200.0	8.3	207.5	10.5
2	172.6	16.0	165.1	18.8	177.4	24.7	179.6	20.4	162.0	5.4	166.9	7.9	172.9	8.6
3	201.7	18.5	196.5	23.6	208.6	30.1	200.5	24.1	192.5	6.2	194.1	8.6	202.5	10.2
4	203.2	18.5	215.7	39.3	211.8	30.0	204.9	28.0	193.6	5.5	193.9	7.8	201.6	10.0
5	210.1	18.3	206.7	24.4	217.5	29.6	212.2	24.4	200.8	4.6	201.2	8.1	208.3	10.6
6	193.3	18.1	186.6	24.1	201.7	28.8	202.8	24.8	182.9	4.9	184.4	8.1	197.0	10.1
7	203.4	18.4	197.3	21.2	209.8	29.3	209.0	24.8	196.4	5.0	196.7	8.5	203.8	10.5
8	199.9	18.2	192.6	22.1	203.9	29.0	211.8	25.3	193.6	5.2	193.5	8.4	203.3	11.0
9	189.4	17.6	183.3	21.2	195.3	27.8	204.0	27.2	177.8	5.2	181.6	8.4	192.9	10.8
10	207.7	18.9	203.4	23.1	214.8	30.3	211.8	26.5	198.3	5.8	198.5	8.4	205.8	10.8
11	207.0	18.2	206.3	23.5	215.7	29.1	224.5	30.0	198.2	4.8	197.8	7.6	205.1	10.3
12	200.4	18.5	197.6	24.4	208.7	29.1	217.2	34.4	190.3	5.1	191.5	7.7	199.3	10.5
2003. 1	200.0	17.6	194.6	23.2	207.3	28.0	212.9	28.0	189.6	4.4	191.6	7.9	196.3	10.1
2	187.2	16.4	182.0	21.4	194.0	26.0	203.6	27.4	176.5	4.4	178.2	7.1	183.6	7.9
3	200.8	17.9	197.5	23.8	209.5	28.8	202.8	23.8	190.1	5.0	191.4	7.4	196.6	8.1
4	202.7	17.5	201.9	24.6	211.8	28.1	209.9	25.0	192.1	5.0	194.0	7.3	198.0	7.3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7	210.0	30.5	187.1	5.3	208.1	33.3	183.6	3.5	195.5	11.9	199.5	16.0
1998	207.3	28.6	187.6	4.4	209.2	34.0	185.3	2.9	195.1	10.0	198.5	13.3
1999	215.9	30.4	188.3	6.1	206.2	26.3	192.9	10.5	195.2	9.3	196.6	9.4
2000	213.6	30.5	186.9	5.9	204.8	27.6	196.1	16.8	194.8	9.4	193.2	8.7
2001	212.0	29.7	185.5	4.7	203.7	15.8	190.9	12.5	195.4	9.2	195.8	8.9
2002	206.8	27.6	182.0	5.5	203.6	7.2	182.1	6.0	192.3	8.7	193.2	8.6
1999. 1/4	209.2	28.9	179.4	4.9	199.4	27.6	179.8	7.9	187.3	8.3	188.5	8.7
2/4	217.3	30.6	188.6	6.0	207.4	27.7	194.1	9.0	196.3	9.3	198.5	9.9
3/4	216.6	30.8	187.0	5.6	205.8	24.7	194.8	12.4	197.1	11.0	197.4	10.4
4/4	220.5	31.4	198.3	7.8	212.2	25.3	202.3	12.7	200.0	8.5	202.1	8.5
2000. 1/4	213.3	29.7	188.2	5.9	204.5	24.8	202.6	20.6	194.4	9.8	193.3	9.0
2/4	214.3	32.3	185.1	6.8	201.2	27.1	197.4	19.2	195.7	10.9	193.4	9.9
3/4	210.7	29.4	182.7	5.4	203.5	28.3	191.4	15.8	190.6	8.4	190.7	8.1
4/4	216.1	30.5	191.5	5.6	209.8	30.2	192.9	11.7	198.4	8.6	195.5	7.8
2001. 1/4	208.1	29.2	182.9	6.0	199.6	26.2	185.2	10.5	192.6	9.9	190.7	8.0
2/4	212.0	29.3	184.4	3.7	202.4	15.0	193.6	14.0	195.3	8.7	196.6	9.8
3/4	214.5	30.2	188.4	4.2	208.4	12.1	191.9	13.4	197.3	9.0	198.8	9.3
4/4	213.6	30.3	186.6	4.9	204.6	10.3	193.0	12.3	196.6	9.5	197.1	8.8
2002. 1/4	201.7	26.3	179.2	5.0	197.9	7.7	175.8	5.3	186.7	8.8	187.8	8.5
2/4	207.2	27.7	185.2	5.4	204.3	6.9	185.5	6.2	194.6	8.6	194.5	8.8
3/4	206.9	27.8	180.1	5.6	203.1	7.1	179.1	5.7	190.7	8.8	192.5	8.7
4/4	211.5	28.7	183.5	6.1	208.9	7.2	187.8	6.7	197.2	8.8	198.0	8.4
2003. 1/4	202.4	27.0	175.1	4.7	202.1	6.8	179.3	5.9	187.7	7.9	189.6	8.6
2001. 4	209.0	28.7	179.4	3.4	197.9	23.4	188.8	13.8	191.1	8.8	193.9	10.1
5	214.5	29.5	188.1	3.9	207.0	11.4	197.0	14.0	198.8	8.7	198.8	10.0
6	212.5	29.6	185.7	3.9	202.3	10.2	194.8	14.0	191.1	8.4	197.0	9.3
7	214.9	30.5	186.4	4.2	207.4	12.6	191.9	14.1	196.1	8.6	196.9	9.6
8	216.7	30.1	192.3	4.0	211.8	13.1	192.4	13.3	199.9	9.4	202.6	9.3
9	211.8	29.9	186.3	4.4	205.8	12.4	191.1	12.6	195.7	9.0	196.9	8.7
10	208.7	30.3	180.3	4.5	199.1	10.7	187.0	12.6	190.2	10.2	190.9	9.6
11	216.8	29.3	194.3	5.0	210.3	9.7	201.4	12.9	203.5	9.0	203.2	7.2
12	215.1	31.0	185.2	5.1	204.2	10.2	190.5	11.4	195.9	9.2	197.0	8.8
2002. 1	212.0	27.0	192.8	4.8	211.4	9.6	188.1	5.7	201.3	9.3	201.2	8.8
2	185.7	25.4	159.1	5.4	176.6	6.8	154.6	4.8	164.3	8.5	166.4	7.9
3	207.5	26.5	185.7	4.7	205.6	6.8	184.7	5.3	194.5	8.7	195.7	8.7
4	207.0	27.0	187.6	5.4	205.1	6.7	185.7	6.1	195.1	8.4	194.8	8.8
5	213.3	28.1	194.6	5.5	213.0	6.7	196.4	6.4	205.0	8.6	203.3	8.8
6	201.3	28.1	173.5	5.4	194.9	7.2	174.3	5.9	183.8	8.7	185.4	8.7
7	211.5	28.6	184.3	5.5	208.1	7.3	181.3	5.8	196.8	8.6	199.0	8.8
8	210.9	27.9	183.3	5.5	206.5	7.2	182.3	5.7	193.6	8.7	195.8	9.0
9	198.2	27.0	172.7	5.8	194.7	6.7	173.8	5.7	181.8	9.2	182.5	8.4
10	214.8	28.7	188.2	5.9	212.5	7.4	192.2	6.0	200.9	9.2	201.4	9.1
11	210.9	27.5	184.7	6.2	210.3	7.3	190.1	6.9	198.9	8.3	199.5	8.1
12	208.9	29.8	177.5	6.2	204.0	7.1	180.9	7.1	191.8	8.8	193.0	8.1
2003. 1	207.4	27.5	178.1	4.7	205.9	6.7	183.0	5.9	192.6	8.3	193.0	7.9
2	192.6	24.5	169.0	4.9	193.0	6.8	172.3	5.7	179.7	7.7	182.5	9.1
3	207.1	28.9	178.6	4.7	208.2	6.8	180.6	6.0	189.3	7.8	193.8	8.9
4	207.5	27.8	182.0	4.8	205.2	6.7	185.9	6.2	192.4	7.0	196.8	9.2

<표 4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7	203.4	21.5	-	-	197.3	12.7	204.5	23.8
1998	200.6	19.1	-	-	196.7	12.1	202.1	21.7
1999	206.7	20.7	196.6	8.8	202.4	15.9	209.9	24.7
2000	205.1	21.8	195.1	8.5	200.9	16.8	207.7	25.3
2001	203.1	18.6	194.5	7.0	200.0	14.2	205.1	22.1
2002	200.3	16.0	193.3	5.6	197.0	10.7	202.4	19.2
1999. 1/4	198.2	19.5	188.2	8.4	193.7	14.7	201.6	23.7
2/4	208.4	21.0	198.6	8.8	204.3	16.0	211.4	25.0
3/4	206.2	21.0	196.0	8.8	201.5	16.1	209.2	24.7
4/4	213.9	21.5	203.3	8.9	210.0	16.7	217.2	25.3
2000. 1/4	205.4	21.3	194.9	8.7	200.7	15.8	209.0	25.5
2/4	204.7	22.7	194.9	8.8	199.7	17.1	207.9	27.1
3/4	201.8	21.5	192.0	8.1	198.0	17.0	204.2	24.9
4/4	208.5	21.6	198.7	8.2	205.1	17.1	209.7	23.6
2001. 1/4	198.6	19.5	190.2	7.7	194.9	14.9	200.2	22.2
2/4	204.2	18.7	195.4	7.0	201.0	14.5	206.4	22.1
3/4	205.5	18.5	196.9	6.7	202.9	14.1	207.5	22.3
4/4	204.3	18.1	195.7	6.7	201.5	13.3	206.6	21.9
2002. 1/4	194.2	15.2	187.7	5.6	191.0	10.2	196.0	18.4
2/4	198.6	15.8	191.7	5.6	195.3	10.5	200.5	18.9
3/4	198.5	16.0	191.6	5.5	194.9	10.6	200.6	19.2
4/4	205.7	16.4	198.1	5.6	202.4	11.2	208.1	19.7
2003. 1/4	196.6	15.5	189.0	5.3	192.5	9.5	199.5	19.1
2001. 4	200.3	19.7	190.9	7.7	197.3	15.4	202.3	23.0
5	207.2	18.3	198.3	6.6	204.0	14.5	209.5	21.3
6	205.0	18.2	196.7	6.5	201.5	13.7	207.4	22.0
7	205.6	18.8	196.7	6.7	202.5	14.5	207.5	22.6
8	206.4	18.2	197.9	6.3	204.3	13.9	186.5	22.1
9	204.4	18.2	195.9	7.0	201.7	13.7	206.2	21.9
10	197.8	18.1	189.2	6.6	194.9	13.4	199.9	22.2
11	211.1	18.1	202.3	6.6	208.5	13.3	213.6	21.9
12	204.0	17.9	195.3	6.8	201.1	13.0	206.1	21.4
2002. 1	207.4	15.4	200.5	5.9	204.7	10.8	209.6	18.4
2	172.7	13.9	166.2	4.9	169.5	9.4	173.5	16.7
3	202.6	16.2	196.2	6.0	198.7	10.4	204.8	20.0
4	203.7	16.5	195.8	5.8	200.3	10.7	206.5	20.1
5	211.3	16.6	203.9	5.7	208.0	10.9	213.8	19.5
6	193.7	16.0	187.4	5.3	190.6	10.7	194.8	18.8
7	204.9	16.5	198.3	5.9	201.6	11.0	207.0	19.8
8	201.2	16.0	194.3	5.4	197.7	10.7	203.4	19.0
9	189.5	15.5	182.2	5.2	185.5	10.3	191.3	18.6
10	208.8	16.7	200.9	5.5	205.2	11.2	211.7	20.0
11	207.4	16.2	200.4	5.7	204.5	11.2	210.0	19.7
12	200.8	16.4	193.1	5.5	197.5	11.0	202.7	19.6
2003. 1	200.9	15.8	193.1	5.2	197.0	9.9	203.8	19.3
2	187.2	14.6	180.9	5.3	183.3	9.2	190.0	17.7
3	201.6	16.3	192.9	5.4	197.5	9.6	205.0	20.4
4	203.0	15.7	195.0	5.8	198.5	9.4	206.2	19.1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7	208.9	28.7	202.2	27.8	205.8	28.4	201.2	27.6
1998	203.4	24.1	195.6	22.5	199.6	22.7	194.4	22.4
1999	216.9	32.3	206.2	28.3	210.9	28.5	205.0	28.3
2000	214.4	33.5	203.7	29.1	208.3	29.4	202.5	29.0
2001	212.7	31.1	199.9	26.9	202.2	25.5	199.3	27.2
2002	209.3	29.8	196.7	26.1	201.5	25.0	195.2	26.4
1999. 1/4	208.1	29.9	195.8	26.2	202.0	26.4	194.3	26.2
2/4	218.4	32.8	209.5	29.3	213.9	29.5	208.3	29.2
3/4	217.3	33.0	205.4	28.1	209.4	27.9	204.3	28.1
4/4	223.6	33.6	214.2	29.7	218.3	30.4	213.1	29.5
2000. 1/4	214.2	32.2	204.0	29.1	208.5	28.3	202.7	29.4
2/4	214.1	34.5	201.3	29.0	207.0	30.7	199.7	28.6
3/4	210.7	32.8	201.5	29.2	204.9	29.9	200.6	29.0
4/4	218.4	34.6	208.2	29.1	212.7	28.6	206.9	29.2
2001. 1/4	209.3	32.7	199.6	28.7	197.1	24.9	200.3	29.7
2/4	213.8	30.9	201.8	26.8	203.4	26.2	201.4	26.9
3/4	214.5	30.4	199.3	25.9	204.1	25.2	198.1	26.0
4/4	213.5	30.4	199.1	26.3	204.7	25.8	197.7	26.4
2002. 1/4	203.2	27.7	191.0	25.5	196.5	24.9	189.2	25.7
2/4	207.5	29.3	195.2	25.7	199.9	25.0	193.6	26.0
3/4	207.8	30.1	193.9	26.1	199.6	24.5	192.1	26.6
4/4	214.5	30.5	202.5	26.8	206.4	25.5	201.3	27.2
2003. 1/4	204.8	28.1	194.0	23.5	198.1	23.9	192.6	23.3
2001. 4	210.4	32.1	199.0	27.0	199.0	25.5	199.0	27.4
5	216.5	30.5	203.6	25.5	207.3	27.2	202.7	25.1
6	214.5	30.1	202.6	27.7	203.9	25.9	202.3	28.2
7	215.4	30.9	199.9	25.8	203.6	24.6	198.9	26.1
8	214.1	30.1	197.4	25.8	204.2	24.6	195.7	26.2
9	213.8	30.1	200.6	25.9	204.5	26.4	199.6	25.8
10	207.4	30.0	194.3	27.6	197.4	25.2	193.5	28.3
11	219.7	30.6	206.5	26.2	212.0	25.5	205.1	26.4
12	213.2	30.4	196.5	24.8	204.4	26.5	194.4	24.3
2002. 1	215.0	27.4	202.1	25.0	209.7	25.3	199.6	24.9
2	182.8	25.7	172.4	24.0	175.6	23.2	171.3	24.3
3	211.7	29.8	198.4	27.4	204.0	26.3	196.5	27.8
4	212.7	30.6	201.1	26.3	204.8	25.0	199.9	26.8
5	220.0	31.9	205.4	25.2	211.5	25.0	203.4	25.2
6	203.1	30.4	191.8	26.4	194.0	25.0	191.4	26.8
7	213.3	30.8	197.5	25.6	203.6	24.5	195.5	25.9
8	210.1	30.4	195.1	26.7	203.2	25.1	192.5	27.2
9	200.1	29.2	189.2	25.9	191.9	24.0	188.3	26.6
10	217.8	31.4	203.2	27.8	209.9	26.5	201.0	28.3
11	215.1	29.3	205.4	26.0	208.4	25.1	204.4	26.4
12	210.5	30.9	199.0	26.6	201.1	25.0	198.4	27.1
2003. 1	209.3	28.6	196.9	24.0	202.0	24.0	195.1	24.0
2	195.3	26.1	186.4	22.6	189.0	22.9	185.6	22.6
3	209.9	29.5	198.7	23.8	203.3	24.9	196.9	23.4
4	211.6	28.5	202.3	23.9	205.5	23.5	201.0	24.0

<표 42> 산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및 자동차용 품수리업
1996	51.0	47.0	57.8	52.9	51.3	47.0	51.9	53.0
1997	50.1	46.0	56.3	52.4	50.1	46.0	50.3	52.0
1998	48.9	44.9	51.6	50.7	48.8	48.2	46.5	51.7
1999	49.8	44.9	47.3	49.2	50.4	47.7	47.6	52.2
2000	50.0	44.7	47.4	52.1	50.9	47.5	48.4	51.4
2001	49.7	45.2	52.0	51.5	50.5	47.1	48.7	51.0
2002	49.1	44.7	51.4	48.5	49.7	46.0	48.3	50.6
1999. 2/4	50.1	47.0	46.5	49.4	50.4	48.9	48.4	52.2
3/4	49.3	45.0	46.9	49.7	50.0	46.0	47.6	51.8
4/4	50.6	43.9	50.8	49.8	51.2	47.4	48.5	52.4
2000. 1/4	50.1	42.5	44.2	49.9	51.4	48.1	46.8	52.2
2/4	50.0	45.6	45.2	52.3	50.6	47.0	49.1	51.3
3/4	49.4	46.3	51.1	51.9	50.5	46.7	48.3	50.7
4/4	50.4	43.5	49.8	54.4	51.2	47.9	49.1	51.3
2001. 1/4	49.8	43.1	51.0	50.2	51.1	47.3	46.3	51.6
2/4	50.7	46.8	50.6	53.5	51.1	48.7	50.4	51.4
3/4	48.3	45.3	52.8	50.5	49.1	44.8	48.2	49.8
4/4	50.2	44.8	53.0	51.7	50.8	47.4	49.7	51.4
2002. 1/4	49.7	42.3	51.9	50.4	50.7	47.1	47.5	51.4
2/4	49.8	46.4	50.9	49.9	50.1	47.2	49.5	51.2
3/4	47.3	44.6	51.8	46.4	47.8	44.2	46.7	49.3
4/4	49.7	44.6	51.1	46.6	50.3	45.5	49.2	50.6
2003. 1/4	48.8	42.6	46.3	51.4	50.5	45.9	47.0	50.2
2/4	49.3	43.8	49.5	55.7	50.3	47.3	48.3	49.9
2001. 6	50.6	46.1	53.1	53.4	50.9	48.8	50.3	51.3
7	48.3	44.8	53.9	51.7	48.8	44.4	47.4	49.6
8	46.3	44.7	51.8	49.1	47.6	42.0	47.1	48.3
9	50.2	46.1	52.7	50.7	50.8	47.9	50.3	51.5
10	50.4	45.8	52.4	51.2	50.9	47.6	50.3	51.5
11	50.2	46.5	55.4	52.5	50.8	47.1	50.1	51.4
12	50.0	41.7	51.4	51.3	50.5	47.5	48.8	51.2
2002. 1	48.8	39.4	51.8	48.8	50.5	47.6	46.5	51.3
2	49.8	42.0	50.6	51.2	50.6	47.5	46.8	51.6
3	50.5	44.7	53.9	51.4	51.0	46.2	49.2	51.5
4	50.4	45.4	49.7	52.1	51.0	47.8	50.1	51.5
5	50.3	45.7	48.1	49.4	50.9	48.6	49.2	51.6
6	48.8	48.1	55.4	47.8	48.3	45.0	49.2	50.5
7	47.2	43.1	53.7	48.7	47.2	44.1	46.4	49.2
8	45.0	42.7	45.0	45.4	46.1	42.6	44.1	47.7
9	49.7	47.7	56.0	45.0	50.0	46.1	49.5	50.9
10	49.9	46.6	48.0	46.4	50.6	45.5	49.8	50.8
11	49.7	45.0	51.2	47.6	50.4	45.7	49.6	50.5
12	49.5	41.9	53.3	45.7	50.0	45.4	48.2	50.5
2003. 1	48.2	42.2	45.3	50.5	50.5	45.7	46.8	50.6
2	48.8	42.0	45.6	50.5	50.5	45.5	46.9	50.2
3	49.2	43.2	47.8	53.1	50.6	46.5	47.3	49.9
4	49.3	43.3	48.7	55.6	50.4	47.5	47.6	49.9
5	49.4	44.7	50.6	54.6	50.4	46.8	49.2	49.9
6	49.2	43.4	49.4	56.8	50.1	47.7	48.2	50.0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56.9	55.5		46.7	53.0		40.0	49.7	50.8
1997	56.1	54.7		45.9	52.0		39.6	49.4	50.1
1998	53.9	54.2		46.7	51.4		39.5	49.0	49.3
1999	54.4	55.0		47.6	52.7		39.6	50.0	50.0
2000	54.4	56.1	48.6	47.3	56.5	51.1	39.8	49.0	52.0
2001	53.5	56.1	49.6	47.1	55.8	50.8	39.3	49.1	52.0
2002	54.4	55.7	49.2	45.9	54.4	50.0	38.7	48.5	51.6
1999. 2/4	54.0	55.3		47.8	52.8		42.4	50.4	50.1
3/4	53.6	54.8		46.6	52.1		36.8	49.8	50.0
4/4	55.2	55.3		48.6	53.1		42.4	50.5	51.0
2000. 1/4	55.2	55.8	49.5	48.4	56.5	51.5	37.7	50.1	52.3
2/4	54.7	56.2	48.4	47.1	56.2	50.8	41.7	49.6	51.7
3/4	54.1	55.9	47.5	46.2	56.4	50.7	37.3	47.8	51.5
4/4	53.8	56.5	49.0	47.5	56.7	51.4	42.3	48.8	52.5
2001. 1/4	53.6	56.3	49.4	47.5	56.4	51.4	37.5	49.9	52.9
2/4	54.0	56.8	50.8	48.1	56.4	51.7	42.8	50.1	52.5
3/4	52.9	55.4	47.7	44.7	54.9	49.0	35.0	47.3	50.9
4/4	53.4	56.1	50.5	48.0	55.6	51.3	41.8	49.1	51.8
2002. 1/4	53.9	56.4	50.4	48.0	55.4	51.8	37.3	49.5	51.6
2/4	54.4	56.4	49.6	46.9	55.4	50.6	41.1	49.1	51.6
3/4	54.2	54.4	46.4	43.0	52.9	47.3	34.5	46.8	50.7
4/4	55.1	55.7	50.4	45.8	53.9	50.6	41.8	48.9	52.4
2003. 1/4	53.0	55.5	48.5	46.1	54.1	50.7	36.2	49.5	51.5
2/4	52.9	54.9	48.5	46.7	54.0	51.0	41.8	49.8	51.5
2001. 6	53.9	57.0	50.6	48.3	57.0	51.5	42.8	49.7	52.5
7	53.0	55.8	47.8	44.7	54.9	49.1	36.3	47.8	51.6
8	52.3	53.9	45.7	42.4	54.8	46.9	27.1	45.2	49.5
9	53.5	56.5	49.8	47.2	54.9	51.1	41.6	48.8	51.7
10	53.6	56.5	50.4	47.6	56.0	51.3	41.9	49.3	52.0
11	53.2	56.1	50.2	47.9	55.7	51.1	41.6	48.9	52.0
12	53.5	55.7	50.9	48.5	55.2	51.4	41.9	49.0	51.5
2002. 1	53.2	56.1	50.3	48.2	54.7	51.9	29.5	49.0	51.1
2	54.1	56.3	50.4	48.1	55.5	51.3	39.7	49.5	51.2
3	54.3	56.7	50.6	47.8	55.9	52.0	42.4	50.0	52.5
4	54.5	56.9	50.4	47.5	56.3	51.3	42.0	49.4	51.9
5	54.4	56.9	50.5	47.9	55.3	51.5	41.5	49.4	52.0
6	54.3	55.3	47.9	45.1	54.7	49.0	39.7	48.4	51.1
7	54.7	53.8	45.7	42.6	52.8	47.1	36.0	46.5	50.2
8	53.2	53.0	44.0	40.4	51.9	44.8	26.0	45.0	49.7
9	54.7	56.5	49.5	46.0	54.1	50.0	41.2	48.8	52.2
10	55.1	56.1	49.9	45.9	53.5	50.8	41.7	49.0	52.7
11	54.8	55.8	50.1	45.6	53.9	50.6	41.7	49.1	52.3
12	55.3	55.1	51.3	45.9	54.4	50.5	41.9	48.7	52.1
2003. 1	53.1	55.4	49.0	46.3	54.6	50.9	28.9	49.5	51.5
2	52.9	55.6	47.9	46.1	53.9	50.9	37.9	49.0	51.4
3	53.0	55.5	48.7	45.9	53.8	50.2	41.6	49.9	51.5
4	53.1	54.9	48.2	46.7	53.6	50.9	42.1	50.0	51.4
5	53.2	54.6	48.5	46.8	54.4	50.8	41.6	49.8	51.6
6	52.2	55.2	48.7	46.4	54.1	51.2	41.6	49.7	51.5

<표 43> 직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직종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1996	51.0	49.9	43.8	47.8	48.9	55.9	
1997	50.1	48.8	43.7	47.1	48.0	55.0	
1998	48.9	49.5	44.3	47.5	48.3	53.7	
1999	49.8	50.6	45.3	48.8	48.9	54.0	
2000	50.0	50.0	45.2	48.7	48.6	54.0	50.2
2001	49.7	49.1	45.5	48.5	48.2	53.1	50.1
2002	49.1	47.8	44.5	47.4	47.3	53.2	50.0
1999. 2/4	50.1	51.3	48.0	49.2	49.4	53.8	
3/4	49.3	49.9	42.7	48.2	48.1	53.5	
4/4	50.6	52.0	47.8	49.4	49.3	54.6	
2000. 1/4	50.1	50.9	44.1	49.6	49.4	54.5	51.1
2/4	50.0	50.4	46.3	48.4	48.4	54.2	50.0
3/4	49.4	48.6	43.1	47.9	48.0	53.4	49.8
4/4	50.4	49.9	47.4	49.1	48.7	53.8	50.2
2001. 1/4	49.8	49.4	44.5	49.3	48.8	53.5	50.5
2/4	50.7	50.4	48.2	49.6	49.1	53.7	50.3
3/4	48.3	46.7	41.7	46.6	46.3	52.2	49.1
4/4	50.2	49.9	47.4	48.6	48.7	53.1	50.4
2002. 1/4	49.7	49.2	43.8	49.0	48.6	53.0	50.7
2/4	49.8	49.3	46.8	48.2	48.1	53.4	50.3
3/4	47.3	44.6	40.4	44.7	44.8	52.7	49.1
4/4	49.7	48.0	46.8	47.6	47.8	53.9	50.0
2003. 1/4	48.8	49.2	42.5	47.6	48.0	51.9	49.8
2/4	49.3	49.9	46.9	48.0	48.2	52.5	48.9
2001. 6	50.6	50.6	48.1	49.6	49.1	53.7	50.5
7	48.3	47.1	42.6	46.7	46.4	52.6	48.9
8	46.3	43.9	35.3	44.3	44.0	51.1	47.8
9	50.2	49.0	47.1	48.7	48.6	52.9	50.5
10	50.4	49.7	47.6	48.7	48.8	53.4	50.3
11	50.2	50.0	47.4	48.6	48.6	52.9	50.5
12	50.0	50.0	47.3	48.6	48.7	53.0	50.4
2002. 1	48.8	48.5	38.5	48.7	48.5	52.1	50.5
2	49.8	49.5	45.1	48.9	48.4	53.2	51.1
3	50.5	49.7	47.6	49.4	49.0	53.6	50.6
4	50.4	50.1	47.6	49.2	48.9	53.6	50.3
5	50.3	50.2	47.8	48.7	49.0	53.5	50.9
6	48.8	47.6	44.9	46.6	46.6	53.0	49.7
7	47.2	44.9	41.3	44.4	44.5	53.1	49.1
8	45.0	41.4	33.7	42.2	42.3	51.3	47.7
9	49.7	47.4	46.2	47.5	47.5	53.7	50.5
10	49.9	48.1	46.8	47.7	48.1	53.9	50.0
11	49.7	47.8	46.9	47.5	47.6	53.7	49.9
12	49.5	48.1	46.7	47.6	47.8	54.1	50.2
2003. 1	48.2	48.8	37.4	47.5	48.1	51.5	50.2
2	48.8	48.9	43.6	47.7	47.8	51.9	50.0
3	49.2	49.9	46.6	47.8	48.1	52.3	49.2
4	49.3	50.1	46.9	48.0	48.3	52.8	49.1
5	49.4	49.7	46.6	48.1	48.3	52.7	48.8
6	49.2	49.8	47.1	47.8	48.0	52.1	48.8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1996	52.6	52.5	55.0	49.8
1997	51.7	51.2	53.8	49.0
1998	46.0	48.3	52.2	46.4
1999	45.7	49.8	54.1	46.5
2000	46.1	50.7	54.4	48.0
2001	47.3	51.0	54.0	48.0
2002	46.7	50.1	53.6	47.8
1999. 2/4	46.9	50.1	54.1	46.3
3/4	45.9	49.7	54.2	46.4
4/4	46.9	50.8	55.2	46.9
2000. 1/4	42.1	50.1	54.5	47.6
2/4	46.4	50.7	54.1	48.2
3/4	48.4	50.6	54.1	47.9
4/4	47.1	51.3	54.7	48.3
2001. 1/4	44.8	50.3	54.2	47.8
2/4	48.3	51.8	54.5	48.6
3/4	47.4	50.3	52.9	47.1
4/4	48.3	51.4	54.3	48.3
2002. 1/4	44.7	50.3	54.5	48.0
2/4	46.8	50.9	54.0	48.0
3/4	46.1	48.6	52.0	46.9
4/4	49.0	50.6	53.8	48.4
2003. 1/4	45.5	49.8	53.4	47.5
2/4	47.8	50.1	53.4	47.7
2001. 6	48.5	51.7	54.5	48.3
7	48.6	49.7	52.9	46.6
8	46.2	49.0	51.7	46.6
9	47.1	52.1	54.1	48.1
10	48.7	51.9	54.5	48.5
11	49.3	51.5	54.7	48.3
12	47.0	50.9	53.8	48.0
2002. 1	42.7	49.7	54.3	47.5
2	43.9	49.9	54.4	47.9
3	47.6	51.2	54.7	48.5
4	46.3	51.6	54.9	48.3
5	45.6	51.2	54.7	47.8
6	48.7	50.1	52.5	48.0
7	44.5	48.4	51.6	46.2
8	43.2	46.6	50.8	45.7
9	50.1	50.9	53.6	48.8
10	48.8	51.2	53.9	48.8
11	50.0	50.8	53.9	48.3
12	48.1	49.7	53.6	48.1
2003. 1	47.1	49.8	53.3	47.6
2	42.4	49.9	53.3	47.6
3	47.2	49.7	53.7	47.5
4	46.0	49.9	53.4	47.4
5	48.6	50.5	53.4	48.1
6	49.0	50.0	53.3	47.8

<표 44> 규모별, 성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주)

	전규모			10인 미만			10~299인			300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98	48.9	50.6	46.4	48.8	50.3	47.3	49.2	51.2	45.3	48.4	48.9	46.8
1999	49.8	51.8	46.7	49.4	51.3	47.6	50.2	52.6	45.7	49.5	50.2	47.2
2000	50.0	52.0	47.0	49.8	51.9	47.9	50.1	52.6	45.9	49.6	50.4	47.3
2001	49.7	51.9	46.6	49.7	52.1	47.4	50.0	52.5	45.7	48.9	49.8	46.5
2002	49.1	51.3	46.1	49.4	51.5	47.2	49.2	51.8	45.0	47.9	48.8	45.5
1999. 2/4	50.1	52.2	47.0	49.5	51.4	47.6	50.7	53.2	46.3	49.8	50.6	47.3
3/4	49.3	51.5	46.0	49.0	51.1	47.0	49.6	52.2	44.8	48.9	49.7	46.5
4/4	50.6	52.7	47.5	50.0	52.0	48.0	51.2	53.6	46.8	50.4	51.1	48.0
2000. 1/4	50.1	52.1	47.1	49.9	51.8	48.1	50.2	52.6	45.9	50.5	51.2	48.1
2/4	50.0	52.0	47.0	50.0	52.0	47.9	50.3	52.7	46.1	49.1	49.8	47.1
3/4	49.4	51.5	46.3	49.6	51.6	47.6	49.4	51.9	45.0	49.0	49.8	46.5
4/4	50.4	52.4	47.4	50.1	52.2	47.9	50.7	53.1	46.8	49.9	50.8	47.4
2001. 1/4	49.8	51.9	46.9	49.7	51.6	47.9	50.0	52.5	45.8	49.8	50.6	47.5
2/4	50.7	52.9	47.4	50.4	52.9	48.0	51.1	53.6	46.9	49.8	50.7	47.3
3/4	48.3	50.5	45.0	48.9	51.3	46.5	48.1	50.8	43.4	47.0	47.9	44.4
4/4	50.2	52.5	47.0	49.9	52.4	47.4	50.7	53.2	46.6	49.1	49.9	46.7
2002. 1/4	49.7	51.9	46.5	49.5	51.6	47.5	49.9	52.5	45.5	49.3	50.3	46.4
2/4	49.8	52.1	46.7	49.9	52.2	47.6	50.1	52.7	45.9	48.4	49.2	46.2
3/4	47.3	49.2	44.5	48.2	50.0	46.4	47.0	49.6	42.7	45.5	46.2	43.4
4/4	49.7	51.9	46.6	49.8	52.0	47.5	49.9	52.4	45.8	48.6	49.6	46.0
2003. 1/4	48.8	50.8	45.8	48.8	50.8	46.9	48.3	50.9	44.6	49.4	50.7	45.8
2/4	49.3	51.5	46.3	49.0	51.2	46.8	49.4	51.9	45.6	49.8	51.2	46.2
2001. 6	50.6	52.8	47.4	50.2	52.6	47.8	51.2	53.6	47.0	49.5	50.5	46.9
7	48.3	50.4	45.1	48.6	50.8	46.4	48.3	50.9	43.8	47.0	47.9	44.4
8	46.3	48.6	42.9	47.9	50.3	45.6	45.3	48.4	40.1	44.8	45.7	42.1
9	50.2	52.5	46.8	50.0	52.7	47.4	50.6	53.1	46.3	49.1	50.0	46.7
10	50.4	52.7	47.1	50.3	52.9	47.7	50.8	53.3	46.5	49.3	50.3	46.5
11	50.2	52.5	46.9	49.9	52.6	47.3	50.7	53.2	46.5	49.3	50.2	46.8
12	50.0	52.1	47.0	49.6	51.9	47.3	50.7	53.1	46.7	48.6	49.3	46.8
2002. 1	48.8	51.2	45.5	49.0	51.0	47.0	48.6	51.5	43.8	49.2	50.2	46.1
2	49.8	51.9	46.7	49.5	51.5	47.5	50.1	52.6	46.0	49.2	50.1	46.6
3	50.5	52.7	47.2	50.2	52.4	47.9	50.9	53.5	46.6	49.5	50.6	46.6
4	50.4	52.8	47.1	50.3	52.7	47.8	50.8	53.5	46.5	49.5	50.5	46.7
5	50.3	52.6	47.1	50.0	52.2	47.8	50.7	53.4	46.4	49.6	50.4	47.2
6	48.8	50.8	46.0	49.5	51.7	47.2	48.9	51.4	44.9	46.1	46.6	44.7
7	47.2	49.0	44.5	48.1	49.6	46.5	46.9	49.5	42.7	44.9	45.7	42.9
8	45.0	46.9	42.3	46.7	48.2	45.1	44.0	46.8	39.5	43.3	44.0	41.3
9	49.7	51.8	46.7	49.9	52.2	47.5	49.9	52.3	45.9	48.2	49.0	46.1
10	49.9	52.1	46.8	50.1	52.4	47.7	50.1	52.6	46.0	48.7	49.7	46.1
11	49.7	51.9	46.5	49.8	52.1	47.3	49.9	52.5	45.7	48.6	49.5	46.1
12	49.5	51.6	46.5	49.5	51.5	47.5	49.7	52.2	45.7	48.6	49.7	45.7
2003. 1	48.2	50.4	45.1	49.0	50.8	47.2	47.1	50.1	42.6	48.9	50.2	45.4
2	48.8	50.8	46.0	48.8	50.8	46.9	48.6	50.9	45.1	49.3	50.7	45.4
3	49.2	51.3	46.3	48.7	50.7	46.7	49.3	51.7	45.9	49.9	51.2	46.4
4	49.3	51.4	46.5	48.9	50.9	47.0	49.4	51.8	45.9	49.9	51.2	46.4
5	49.4	51.6	46.3	49.3	51.7	47.0	49.4	52.0	45.6	49.7	51.0	46.2
6	49.2	51.5	46.0	48.9	51.2	46.6	49.2	51.9	45.3	49.8	51.2	46.0

주 :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5>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노 동 조합원수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5	6,150		1,568,723

주 :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 노동부.

<표 46>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조합수	조합원수		
			계	남자	여자
전체		6,150	1,568,723	1,263,314	305,409
한국노총	계	3,940	877,827	707,226	170,601
	한국노총(직할노조)	58	4,457	3,018	1,439
	철도노조	1	25,612	24,597	1,015
	섬유·유통노련	190	32,690	14,769	17,921
	광산노련	23	6,374	6,052	322
	전력노조	3	23,664	21,842	1,822
	외기노련	44	21,211	14,749	6,462
	통신노련	46	11,171	9,334	1,837
	항운노련	61	33,103	31,600	1,503
	해상노련	58	29,516	29,408	108
	금융노련	82	79,128	55,186	23,942
	담배인삼노조	4	5,611	4,805	806
	화학노련	680	86,138	66,538	19,600
	금속노련	667	120,768	89,172	31,596
	연합노련	581	70,870	53,558	17,312
	출판노련	58	3,600	2,687	913
	자동차노련	493	69,751	68,238	1,513
	관광노련	121	12,026	7,257	4,769
	체신노조	1	21,966	16,416	5,550
	택시노련	550	118,948	117,362	1,586
	고무노련	17	8,425	7,249	1,176
	도시철도노련	6	8,657	7,689	968
	공공서비스노련	46	13,971	10,104	3,867
	아파트노련	37	3,601	3,485	116
	공공건설노련	17	5,576	4,779	797
	의료산업노련	8	4,247	1,320	2,927
	정투노련	26	18,944	17,278	1,666
	예능인노련	20	2,246	1,559	687
	한교조	1	25,060	9,960	15,100
	식품산업노련	41	10,496	7,215	3,281
민주노총	계	1,513	643,506	517,078	126,428
	민주노총(직할노조)	116	35,983	28,766	7,217
	언론노련	59	22,463	21,339	1,124
	병원노련	28	37,796	37,290	506
	전국대학노조	3	7,604	5,007	2,597
	금속산업노련	295	181,938	171,423	10,515
	화물운송노련	27	7,534	7,402	132
	시설관리노련	35	1,806	1,507	299
	민주택시노련	165	20,591	20,442	149
	사무금융노련	204	70,741	45,580	25,161
	공공노련	223	92,178	76,647	15,531
	여성노련	18	2,362	-	2,362
	건설산업노련	123	29,806	28,179	1,627
	민주화확섬유노련	144	30,045	26,652	3,393
	전교조	1	87,996	39,396	48,600
	서비스연맹	72	14,663	7,448	7,215
상급단체미가입		697	47,390	39,010	8,380

주 :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 노동부.

<표 47>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64	23.3	24.0	20.8	11.5	11.6	11.0	-
1965	22.4	23.5	19.1	11.6	11.7	11.2	-
1966	22.7	22.3	21.2	11.8	11.8	11.7	-
1967	22.2	22.1	22.5	12.4	12.4	12.5	-
1968	21.1	21.3	20.6	12.1	12.3	11.7	-
1969	21.3	21.3	20.9	12.5	12.9	11.6	-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6	22.7	14.1	15.8	19.0	10.6	17.2
1992	18.3	21.8	12.1	14.9	18.4	9.3	16.4
1993	17.2	20.5	11.3	14.1	17.4	8.8	15.6
1994	16.3	19.9	10.0	13.5	16.9	7.9	14.5
1995	15.2	18.7	9.3	12.6	15.9	7.4	13.8
1996	14.7	18.4	8.4	12.2	15.7	6.7	13.3
1997	13.5	17.5	7.0	11.2	14.9	5.6	12.2
1998	13.8	17.8	6.9	11.5	15.3	5.4	12.6
1999	14.9	18.7	8.4	11.8	15.5	6.2	11.9
2000	14.6	18.6	7.8	11.6	15.6	5.8	12.0
2001	14.5	19.0	7.4	11.8	16.0	5.6	12.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른 수치보정.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48> 주요 노사분규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88		1,873	293,455	5,400,837
1989		1,616	409,134	6,351,443
1990		322	133,916	4,487,151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1	93,709	1,579,678
2001.	1	7<16>	280<3,399>	54,344
	2	10	368<4,015>	69,469
	3	21	1,837<4,015>	92,669
	4	37	4,956	125,870
	5	54	8,986	195,636
	6	114	31,694	354.929
	7	153	59,202	511,265
	8	173	61,803	643,078
	9	194	65,543	697,699
	10	208	70,913	746,786
	11	222	72,218	799,778
	12	235	88,548	1,083,079
2002.	1	12<11>	1,272<732>	31,160
	2	21<11>	16,615<732>	80,394
	3	30<11>	17,531<732>	212,450
	4	40<11>	18,021<732>	240,565
	5	172<11>	46,148<732>	395,669
	6	207<11>	65,334<732>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1	93,709	1,579,678
2003.	1	11<10>	1,324<714>	18,445
	2	17<10>	2,382<714>	28,041
	3	25<10>	5,214<714>	67,195
	4	56<10>	9,211<714>	91,460
	5	81<10>	13,954<714>	116,564
	6	118<10>	58,478<714>	245,832

주 : 1)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2)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 노동부.

<표 49>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88	-	33	1	49	5
1996	85	1	19	-	62	3
1997	78	3	18	-	51	6
1998	129	23	28	3	57	10
1999	198	22	40	-	89	47
2000	250	7	47	2	167	27
2001	235	6	59	-	149	21
2002	322	2	44	8	249	19

자료 : 노동부.

<표 50>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1>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산 업	제 조 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9.1)	9(10.2)	5(5.7)	9(10.2)
1996	85(100.0)	56(65.9)	8(9.4)	5(5.9)	9(10.6)	7(8.2)
1997	78(100.0)	42(53.8)	14(17.9)	4(5.1)	11(14.1)	7(9.0)
1998	129(100.0)	72(55.8)	37(28.7)	8(6.2)	9(7.0)	3(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2>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체	노사 직접교섭	노조 자체종결	기 타
1996	83(100.0)	79(95.2)	2(2.4)	2(2.4)
1997	77(100.0)	55(71.4)	20(26.0)	2(2.6)
1998	121(100.0)	81(66.9)	37(30.6)	3(2.5)
1999	194(100.0)	147(75.8)	46(23.7)	1(0.5)
2000	250(100.0)	189(75.6)	37(14.8)	24(9.6)
2001	235(100.0)	154(65.5)	57(24.3)	24(10.2)
2002	322(100.0)	235(73.0)	66(20.5)	21(6.5)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3>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7	5,116	3,276	64.0	7.9	7.7
8	5,116	3,677	71.9	7.9	7.3
9	5,116	3,985	77.9	7.8	7.3
10	5,116	4,232	82.7	7.7	7.3
11	5,116	4,410	86.2	7.7	7.3
12	5,116	4,798	93.8	7.6	7.2
2001. 1	5,218	21	0.4	5.8	3.9
2	5,218	129	2.5	5.8	4.8
3	5,218	286	5.5	5.4	5.0
4	5,218	628	12.0	5.4	5.2
5	5,218	1,262	24.2	5.7	5.4
6	5,218	1,803	34.6	5.7	5.5
7	5,218	2,589	49.6	6.1	6.1
8	5,218	3,187	61.1	6.1	6.0
9	5,218	3,720	71.3	6.0	5.9
10	5,218	4,072	78.0	6.0	5.9
11	5,218	4,588	87.9	6.0	5.9
12	5,218	4,857	93.1	6.0	6.0
2002. 1	5,401	74	1.4	7.4	
2	5,401	154	2.9	7.0	
3	5,401	420	7.8	5.5	
4	5,401	630	11.7	6.1	
5	5,401	1,435	26.6	6.6	
6	5,401	2,103	38.9	6.7	
7	5,401	2,887	53.5	6.9	
8	5,401	3,517	65.1	6.9	
9	5,401	4,161	77.0	6.9	
10	5,401	4,377	81.0	6.9	
11	5,401	4,655	86.2	6.8	
12	5,401	4,991	92.4	6.7	
2003. 1	5,751	107	1.9	5.0	
2	5,751	214	3.7	5.9	
3	5,751	413	7.2	6.0	
4	5,751	718	12.5	6.5	
5	5,751	1,306	22.7	6.7	
6	5,751	1,856	32.3	6.7	

자료 : 노동부.

<표 54>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4	64	81,798	1,489	-	-	-	-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주 :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5> 산업별 천인율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